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865-000018-1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24. 6.



최저임금위원회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865-000018-1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24. 6.

한국노동경제학회

연구책임자 : 최 강 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 장 기 표(지속가능기업연구회 상임이사)

이 지 안(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제 출 문

최저임금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6월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김 승 택

〈목 차〉

요 약	i
I. 서 론	1
II. 표본조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4
1. 조사대상	4
2. 표본설계	4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6
4. 자료 분석	7
5. 유의사항	14
III.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7
1. 응답 사업체 특성과 사업체 경영 사정	17
2. 고용 현황	24
3.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26
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변화	34
5. 최저임금 상승 영향	37
6.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상황	45
7.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의 생산성	48
8.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51
9.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60
10. 복리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65
11.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69
IV.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72
1. 응답 근로자 특성	72
2. 소속된 직장의 특성	103
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109

4.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113
5.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132
6.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137
참고문헌	149
부록1 : 사업주 대상 설문지	152
부록2 : 근로자 대상 설문지	163

〈표 차례〉

<표 2-1>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 추정(업종 및 규모별)	5
<표 2-2>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8
<표 2-3>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수	9
<표 2-4>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22, 2023년)	10
<표 2-5>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22년, 2023년)	11
<표 2-6>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22년, 2023년)	12
<표 2-7>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22년, 2023년)	12
<표 2-8> 사업주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15
<표 2-9> 근로자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16
<표 3-1a> 응답 사업체 구성(사업체 규모별)	18
<표 3-1b> 응답 사업체 구성(업종별)	18
<표 3-2a> 사업체 노조 유무(사업체 규모별)	19
<표 3-2b> 사업체 노조 유무(업종별)	20
<표 3-3a>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사업체 규모별)	21
<표 3-3b>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업종별)	22
<표 3-4>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 호전 사유	23
<표 3-5>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 악화 사유	23
<표 3-6a>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고용형태별)	24
<표 3-6b>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규모별)	25
<표 3-6c>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업종별)	25
<표 3-7>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임금수준별)	26
<표 3-8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27
<표 3-8b>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초과~1.5배 이하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28
<표 3-8c>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29

<표 3-9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업종별)	31
<표 3-9b>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초과~1.5배 이하 근로자, 업종별)	32
<표 3-9c>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업종별)	33
<표3-10a> 최저임금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사업체 규모별)	34
<표3-10b> 최저임금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업종별)	35
<표3-1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과 인건비 변동의 관계	36
<표 3-12a> 최저임금 상승 영향(총괄)	37
<표 3-12b> 최저임금 상승 영향(사업체 규모별)	39
<표 3-12c> 최저임금 상승 영향(업종별)	42
<표 3-13>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	45
<표 3-14> 최저임금근로자 비율(고용형태별)	45
<표 3-15a>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사업체 규모별)	46
<표 3-15b>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업종별)	47
<표 3-16a>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사업체 규모별)	48
<표 3-16b>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업종별)	49
<표 3-17>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와 '2023년 최저임금액 평가'의 비교	50
<표 3-18a>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사업체 규모별)	52
<표 3-18b>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업종별)	53
<표 3-19a>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체 규모별)	54
<표 3-19b>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업종별)	55
<표 3-20>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관계	56
<표 3-21a>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 규모별)	57
<표 3-21b>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	58
<표 3-22>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2023년과 2024년 비교)	59
<표 3-23a>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 규모별)	61
<표 3-23b>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업종별)	62
<표 3-23c>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응답자별)	63
<표 3-24>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2024년 최저임금액 평가와의 비교)	64

<표 3-25a>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 규모별)	65
<표 3-25b> 현물급여 지급 실태(업종별)	66
<표 3-26a>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사업체 규모별)	67
<표 3-26b>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업종별)	68
<표 3-27a>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 규모별)	70
<표 3-27b>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업종별)	71
<표 4-1a>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성별)	73
<표 4-1b>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학력별)	74
<표 4-1c>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고용형태별)	74
<표 4-2a> 학력 분포(성별)	75
<표 4-2b> 학력 분포(고용형태별)	76
<표 4-3a> 근속연수(성별)	77
<표 4-3b> 근속연수(연령별)	77
<표 4-3c> 근속연수(학력별)	78
<표 4-3d> 근속연수(고용형태별)	79
<표 4-4a> 사회보험 가입 여부(성별)	80
<표 4-4b> 사회보험 가입 여부(연령별)	80
<표 4-4c> 사회보험 가입 여부(학력별)	81
<표 4-4d> 사회보험 가입 여부(고용형태별)	82
<표 4-4e> 사회보험 가입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82
<표 4-5> 가구원 수(성별)	83
<표 4-6a>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성별)	84
<표 4-6b>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구원 수별)	85
<표 4-7a> 가구 월 총소득(성별)	86
<표 4-7b> 가구 월 총소득(연령별)	87
<표 4-7c> 가구 월 총소득(학력별)	88
<표 4-7d> 가구 월 총소득(고용형태별)	89
<표 4-7e> 가구 월 총소득(가구원 수별)	90

<표 4-7f> 가구 월 총소득(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91
<표 4-8a> 가구 월 총지출(성별)	92
<표 4-8b> 가구 월 총지출(연령별)	93
<표 4-8c> 가구 월 총지출(학력별)	94
<표 4-8d> 가구 월 총지출(고용형태별)	95
<표 4-8e> 가구 월 총지출(가구원 수별)	96
<표 4-8f> 가구 월 총지출(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97
<표 4-9a>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성별)	99
<표 4-9b>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연령별)	99
<표 4-9c>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학력별)	100
<표 4-9d>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고용형태별)	101
<표 4-9e>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가구원 수별)	102
<표 4-9f>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가구 월 총소득별)	102
<표 4-10a>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성별)	103
<표 4-10b>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연령별)	104
<표 4-10c>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학력별)	105
<표 4-11a> 현재 직장의 직종(성별)	106
<표 4-11b> 현재 직장의 직종(학력별)	107
<표 4-11c> 현재 직장의 직종(고용형태별)	108
<표 4-12a>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성별)	110
<표 4-12b>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연령별)	110
<표 4-12c>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학력별)	111
<표 4-12d>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고용형태별)	112
<표 4-12e>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12
<표 4-13a>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성별)	113
<표 4-13b>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고용형태별)	114
<표 4-13c>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14
<표 4-13d>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연령별)	115

<표 4-13e>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학력별)	116
<표 4-13f>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116
<표 4-14a>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117
<표 4-14b>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118
<표 4-14c>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학력별)	119
<표 4-14d>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119
<표 4-14e>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20
<표 4-14f>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121
<표 4-15a>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성별)	122
<표 4-15b>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연령별)	122
<표 4-15c>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학력별)	123
<표 4-15d>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고용형태별)	124
<표 4-15e>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25
<표 4-15f>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125
<표 4-16a>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성별)	126
<표 4-16b>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연령별)	127
<표 4-16c>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학력별)	128
<표 4-16d>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128
<표 4-16e>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29
<표 4-16f>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130
<표 4-16g>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 여부별)	131
<표 4-17a>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성별)	132
<표 4-17b>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연령별)	133
<표 4-17c>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학력별)	134
<표 4-17d>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고용형태별)	134
<표 4-17e>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35
<표 4-17f>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136
<표 4-18a>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성별)	137

<표 4-18b>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연령별)	138
<표 4-18c>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학력별)	139
<표 4-18d>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고용형태별)	139
<표 4-18e>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40
<표 4-19a> 최저임금 고지 여부(성별)	141
<표 4-19b> 최저임금 고지 여부(연령별)	141
<표 4-19c> 최저임금 고지 여부(고용형태별)	142
<표 4-19d> 최저임금 고지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42
<표 4-20> 최저임금 고지 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관한 인식의 관계	143
<표 4-21a>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고용형태별)	144
<표 4-21b>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성별)	145
<표 4-21c>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연령별)	146
<표 4-21d>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학력별)	146
<표 4-21e>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48
<표 4-21f>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별)	148

〈그림 차례〉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ii
<그림 2a>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사정	ii
<그림 2b>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	ii
<그림 3a>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사정 호전 이유	iii
<그림 3b>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 호전 이유	iii
<그림 4a>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사정 악화 사유	iv
<그림 4b>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 악화 사유	iv
<그림 5> 응답 근로자의 성별 구성	v
<그림 6>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	v
<그림 7> 응답 근로자의 학력 분포	vi
<그림 8> 응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vi
<그림 9>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	vii
<그림 10> 가구원 수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	vii
<그림 11>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소득	viii
<그림 12>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지출	ix
<그림 13>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x
<그림 14>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	x
<그림 15> 응답 근로자의 직종	xi
<그림 16a>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xiii
<그림 16b>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순이익(이윤) 변동	xiii
<그림 16c>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변동	xiv
<그림 16d>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변동	xiv
<그림 16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변동	xv
<그림 16f>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근로시간 변동	xv

<그림 16g>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임금산정방식 변동	xvi
<그림 17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사업주)	xviii
<그림 17b> 임금 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근로자)	xviii
<그림 18>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xix
<그림 19a>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주)	xx
<그림 19b> 최저임금 결정요인(근로자)	xxi
<그림 20a>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주)	xxii
<그림 20b>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근로자)	xxiii
<그림 21> 최저임금액 인상의 생활향상 기여도(근로자)	xxiii
<그림 22a>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주)	xxiv
<그림 22b>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근로자)	xxv
<그림 23a>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주)	xxvi
<그림 23b>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근로자)	xxvii
<그림 24>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주)	xxviii
<그림 25>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근로자)	xxix
<그림 2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주, 근로자)	xxx

요 약

1. 서 론

- 이 연구의 목적은 2023년에 실시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2024년 최저임금 심의(2025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사업체 특성, 사업체 경영 사정,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 고용효과,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여부,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복리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음
 -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근로자 특성, 이들이 속한 직장 특성, 일자리 종사 이유, 최저임금이 임금에 미친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여부,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최저임금 제도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음
- 본 조사의 표본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저임금 영역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 모집단 분포를 추정하여 얻었으며, 이에 따라 추출된 3,070개의 사업체 표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함
 - . 4인 이하 : 사업체당 최대 4명
 - . 5~9인 : 사업체당 최대 5명
 - . 10~99인 : 사업체당 최대 7명
 - . 100~299인 : 사업체당 최대 10명
- 분석 가능한 최종자료의 경우, 사업체가 3,070개소, 근로자는 5,583명임
- 조사 결과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 대상 근로자 전원이 제외된 경우 해당 사업장도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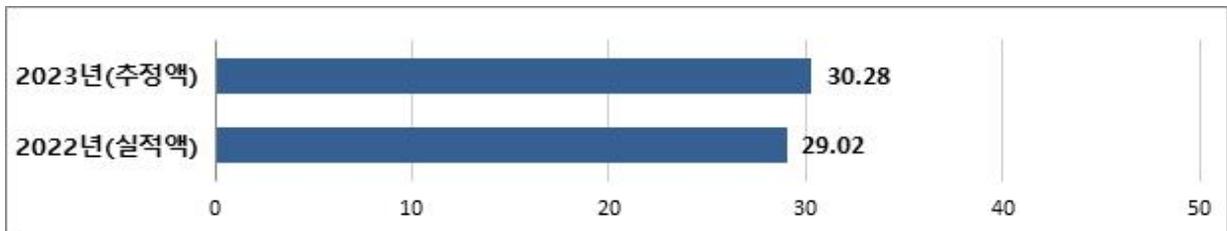
2. 기초분석

가. 응답 사업체 특성

- 응답 사업체(3,070개소)의 2023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정치'(30.28%)는 전년 대비 1.2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참조)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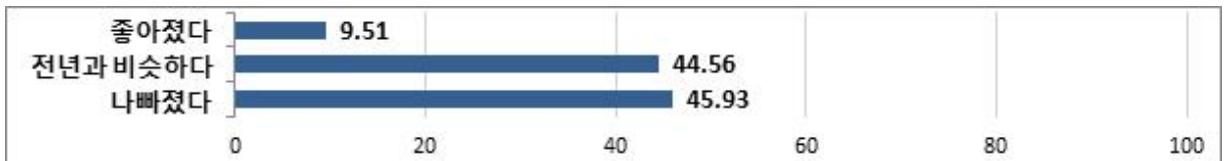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사정'에 관한 답변을 살펴보면, 응답 사업체(3,070개소) 가운데 경영사정이 '나빠졌다'(45.93%), '전년과 비슷하다'(44.56%), '좋아졌다'(9.51%) 순임 (<그림 2a> 참조)

-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에 관한 답변을 살펴보면, 그 응답 순서가 아래와 같음 (<그림 2b> 참조)

<그림 2a>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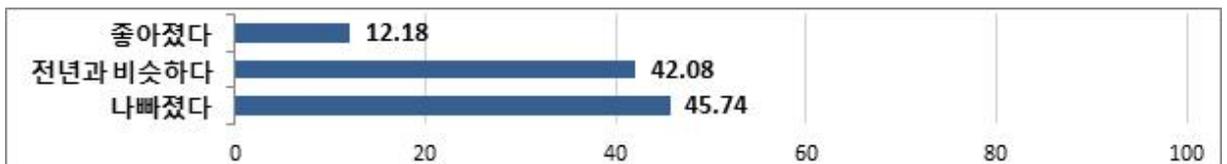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2b>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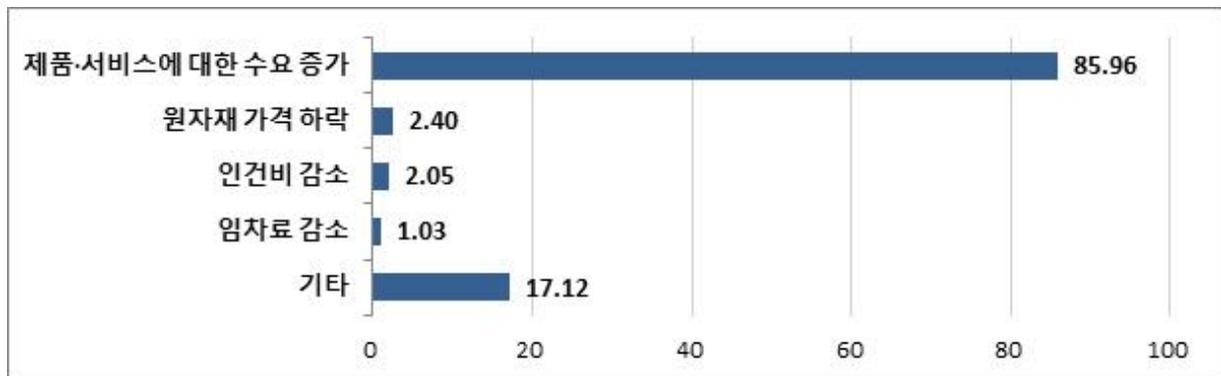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2년도 대비 2023년의 경영사정'이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그 사유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85.96%), '원자재 가격 하락'(2.40%), '인건비 감소'(2.05%), '임차료 감소'(1.03%) 순으로 응답함 (<그림 3a> 참조)
-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이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사업체도 경영사정의 호전 사유에 대해 동일한 순서로 응답함 (<그림 3b> 참조)

<그림 3a>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사정 호전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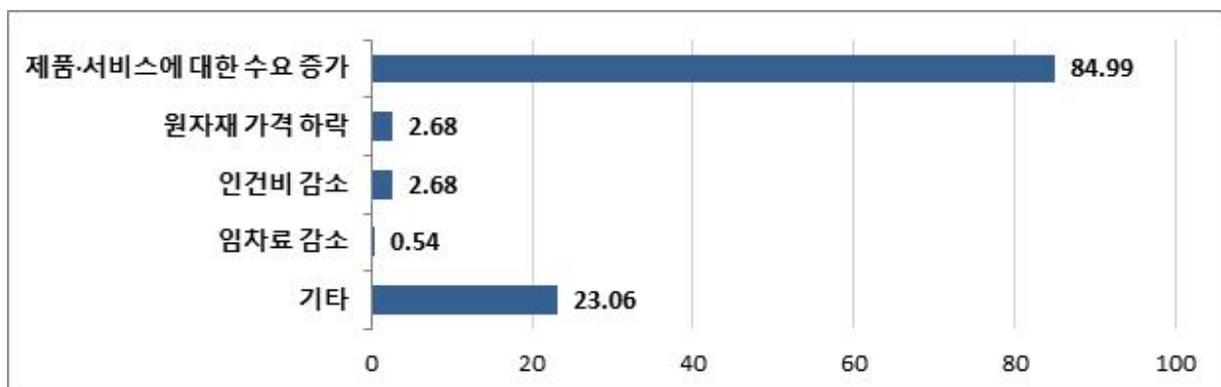
(단위 : %)



주: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2) 복수 응답. 이에 따라 비율은 응답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그림 3b>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 호전 사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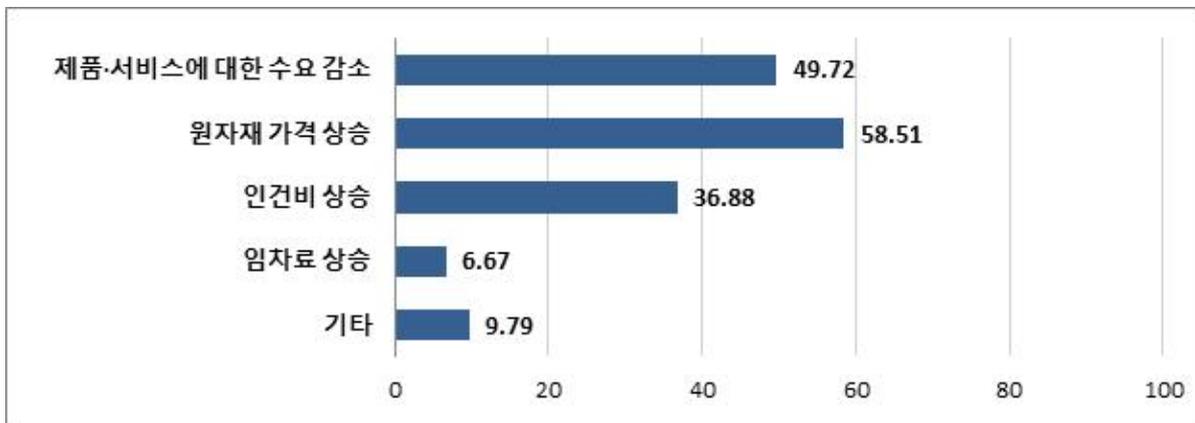


주: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2) 복수 응답. 이에 따라 비율은 응답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 2022년 대비 2023년의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그 사유로 58.51%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답하였으며, 49.72%가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를, 36.88%가 '인건비 상승'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4a> 참조)
- 2021년 대비 2022년의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그 사유로 61.38%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응답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9.32%의 사업체가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42.11%의 사업체가 '인건비 상승'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4b> 참조)

<그림 4a> 2022년 대비 2023년 경영사정 악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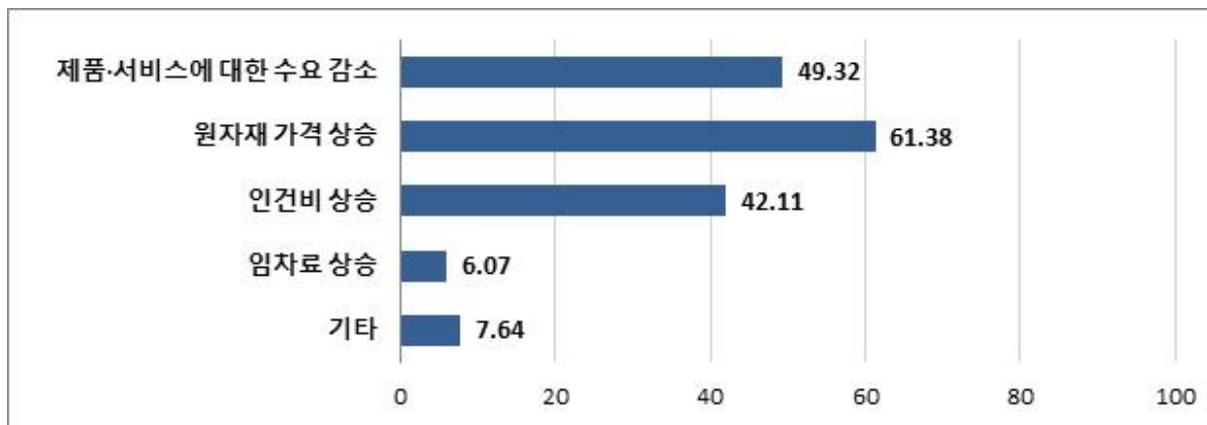
(단위 : %)



- 주: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 복수 응답. 이에 따라 비율은 응답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그림 4b> 2021년 대비 2022년 경영사정 악화 사유

(단위 : %)



- 주: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 복수 응답. 이에 따라 비율은 응답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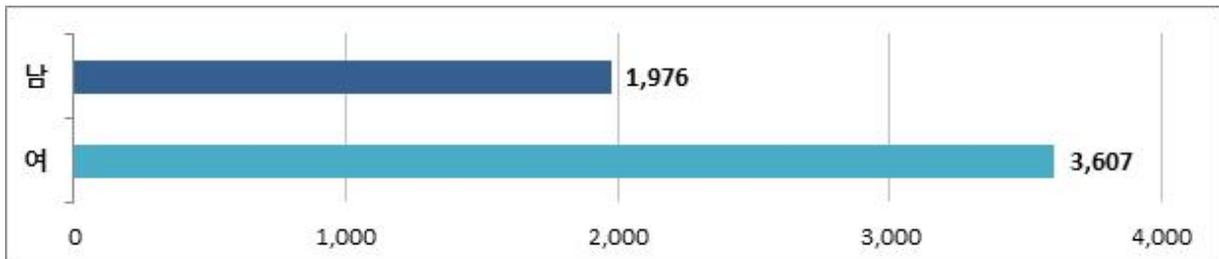
나. 응답 근로자 특성

○ 응답 근로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 근로자는 남성이 1,976명(35.39%), 여성이 3,607명(64.61%)으로 구성됨 (<그림 5> 참조)
- 응답 근로자의 연령은 '50~60세 미만'(23.14%), '40~50세 미만'(21.39%), '30~40세 미만'(19.51%) 순으로 구성됨 (<그림 6> 참조)
- 응답 근로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50.42%),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42.81%),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6.77%)으로 구성됨 (<그림 7> 참조)

<그림 5> 응답 근로자의 성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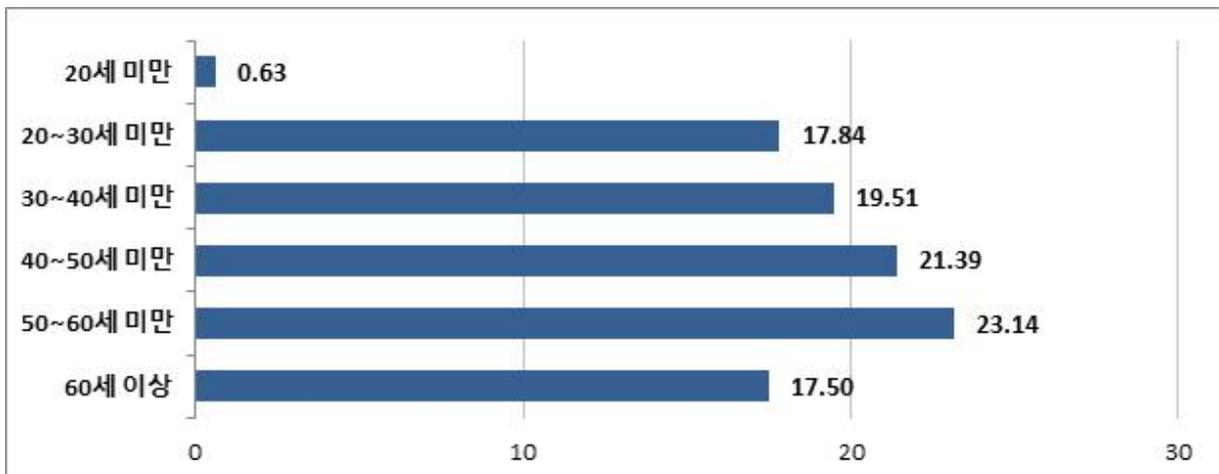
(단위 : 명)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6>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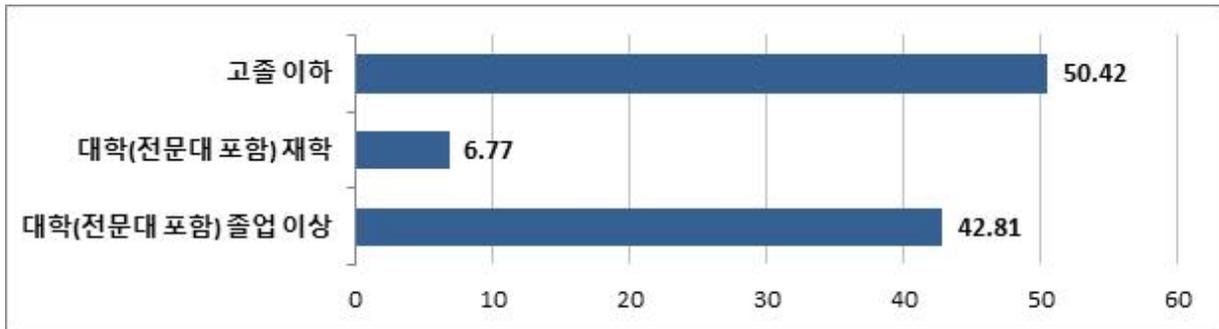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7> 응답 근로자의 학력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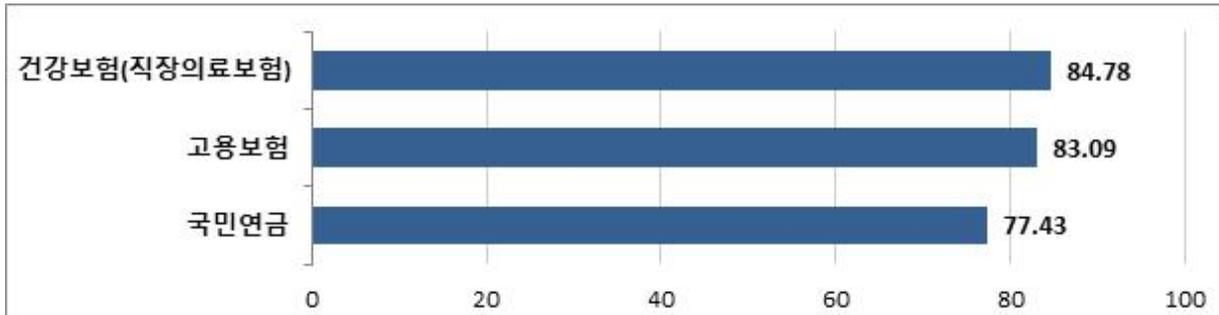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가입 비율은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84.78%), '고용보험'(83.09%), '국민연금'(77.43%) 순임 (<그림 8> 참조)

<그림 8> 응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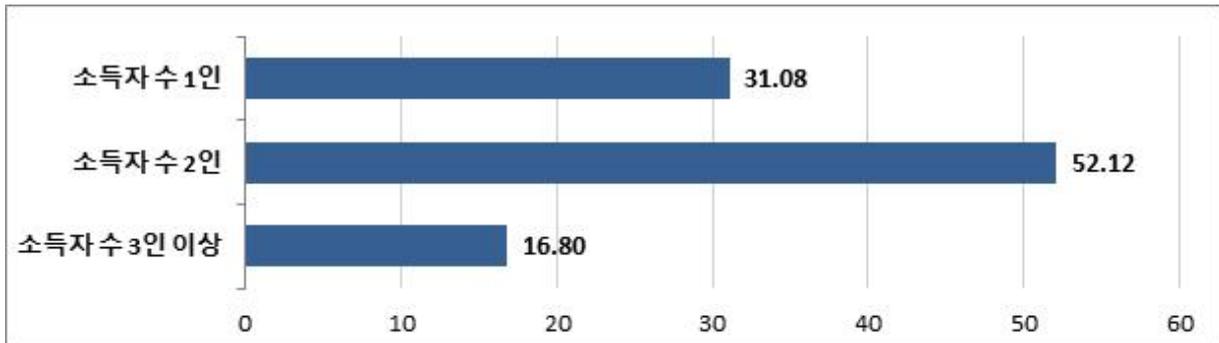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9>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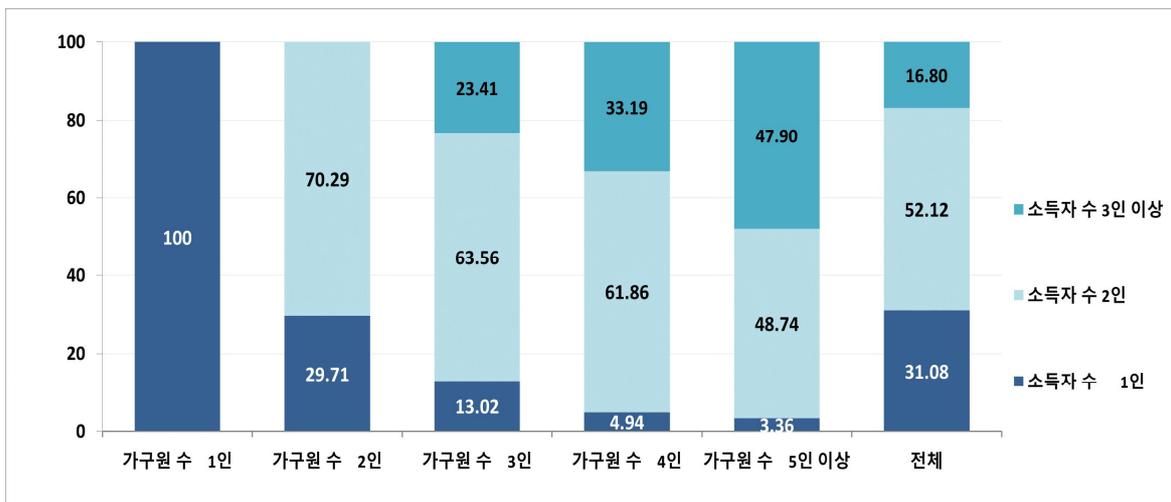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를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 1인'을 제외한 가구원 수 구성에서는 '소득자 수'가 '2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10> 참조)

-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소득자 수'가 '2인', '3인 이상', '1인' 순으로 각각 많았음

<그림 10> 가구원 수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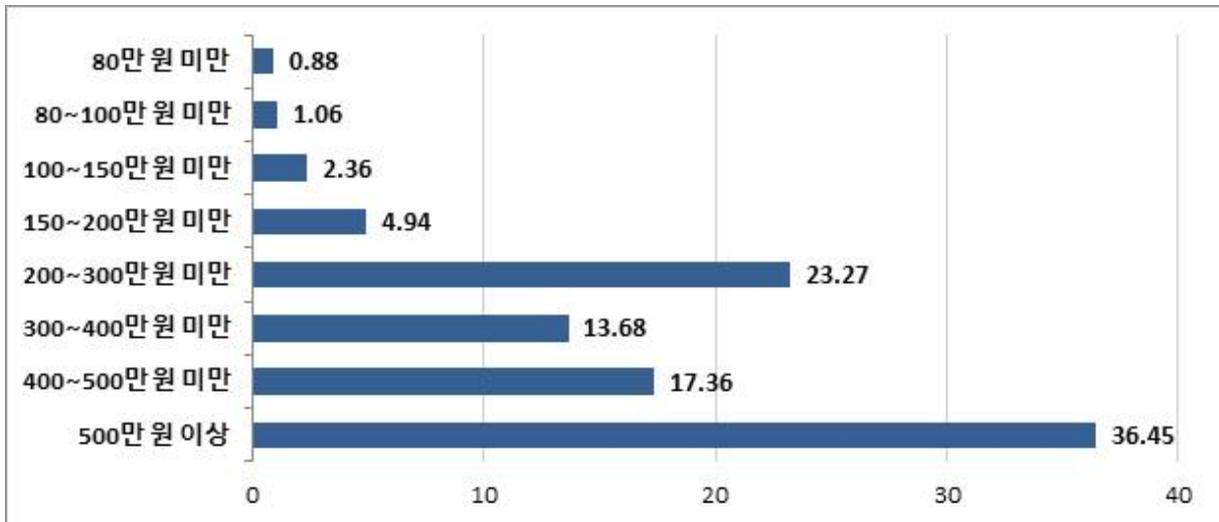
주: 1)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는 2023년 10월 기준, 행의 가구원 수는 2023년 기준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3) 가구원 수('23.11월)와 가구원 중 소득자 수('23.10월)의 조사기준시점이 달라서 가구원 수보다 소득자 수 값이 더 크게 조사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의 가구 월 총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6.45%로 가장 높음
(<그림 11> 참조)

- 그 뒤를 이어 '200~300만원 미만'(23.27%), '400~500만원 미만'(17.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소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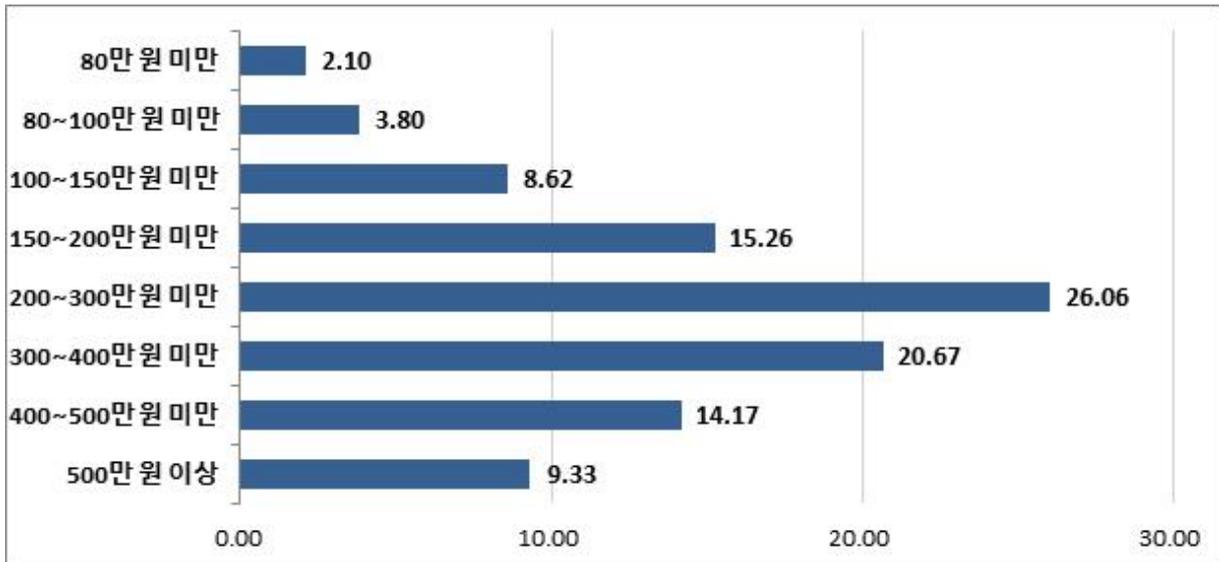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의 가구 월 총지출'은 '200~300만원 미만'이 26.06%로 가장 높음
(<그림 12> 참조)

- 그 뒤를 이어 '300~400만원 미만'(20.67%), '150~200만원 미만'(15.2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지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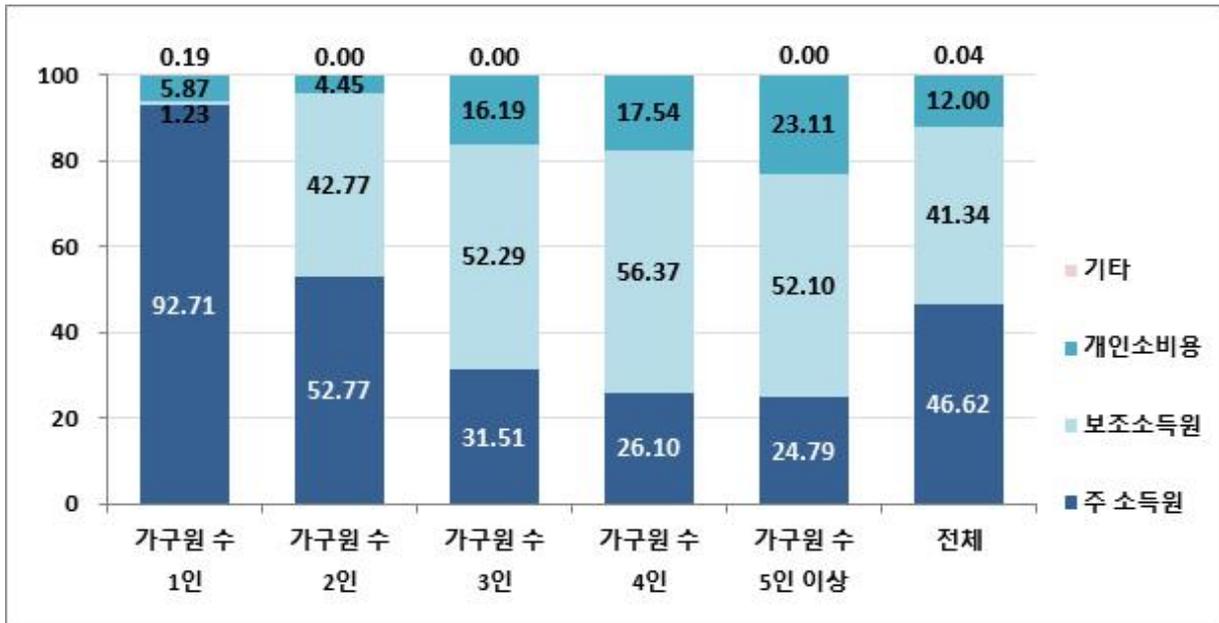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을 ‘전체’ 수준으로 살펴보면, ‘주 소득원’(46.62%), ‘보조 소득원’(41.34%), ‘개인 소비용’(12.00%)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참조)
 - 가구원 수가 ‘1인’(92.71%), ‘2인’(52.77%)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득이 ‘주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 가구원 수가 ‘3인’(52.29%), ‘4인’(56.37%), ‘5인 이상’(52.10%)인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보조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그림 13>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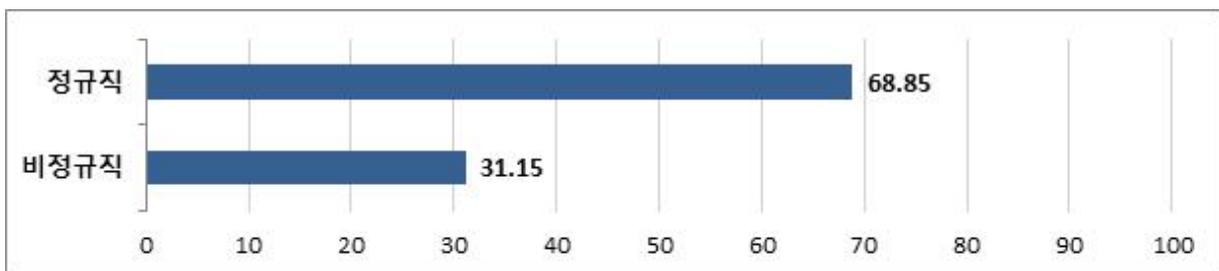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는 68.85%, '비정규직'인 경우는 31.15%로 나타남 (<그림 14> 참조)

<그림 14>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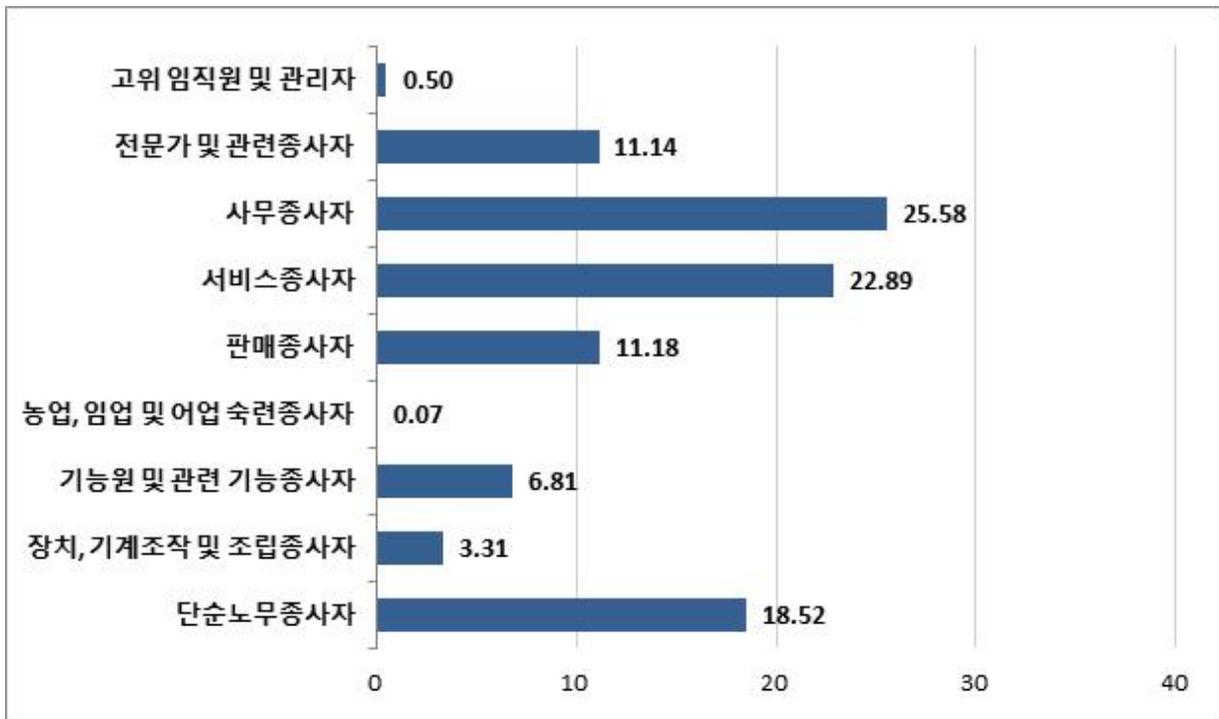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25.58%)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종사자'(22.89%), '단순노무종사자'(18.52%), '판매종사자'(11.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14%)의 비율이 그 뒤를 이었음 (<그림 15> 참조)

<그림 15> 응답 근로자의 직종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3.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미친 영향은 79.93%의 사업체가 '변동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9.67%의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감소'라고 응답함 (<그림 16a> 참조)
- '순이익(이윤)'에 대해서는 57.49%의 사업체가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38.44%의 사업체가 '감소'했다고 응답함 (<그림 16b> 참조)
- '제품(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68.01%의 사업체가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28.40%의 사업체가 '인상'했다고 응답함 (<그림 16c> 참조)
- '인건비'에 대해서는 53.00%의 사업체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43.84%의 사업체가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함 (<그림 16d> 참조)
-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82.38%의 사업체가 '영향없음'으로 응답하였고, 13.26%의 사업체가 '감소'했다고 응답함 (<그림 16e> 참조)
-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88.18%의 사업체가 '영향없음'으로 응답하였고, 10.39%의 사업체가 '감소'했다고 응답함 (<그림 16f> 참조)
- '임금산정방식'에 대해서는 93.97%의 사업체가 '변화없음'으로 응답했고, 3.13%의 기업체가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고 응답함 (<그림 16g> 참조)

<그림 16a>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16b>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순이익(이윤)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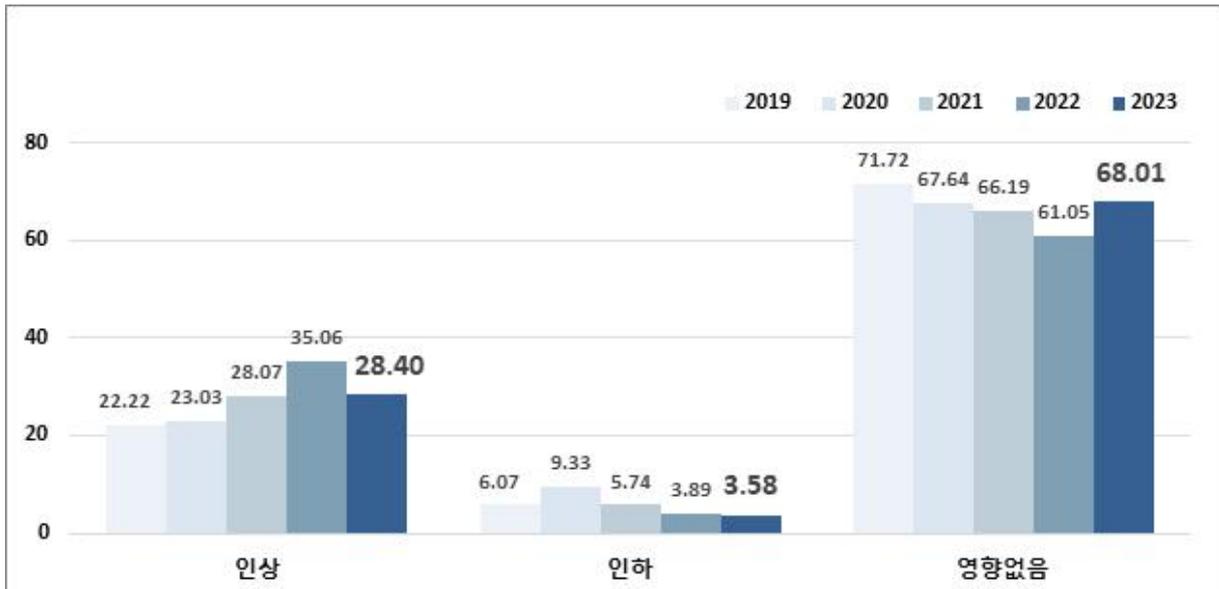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16c>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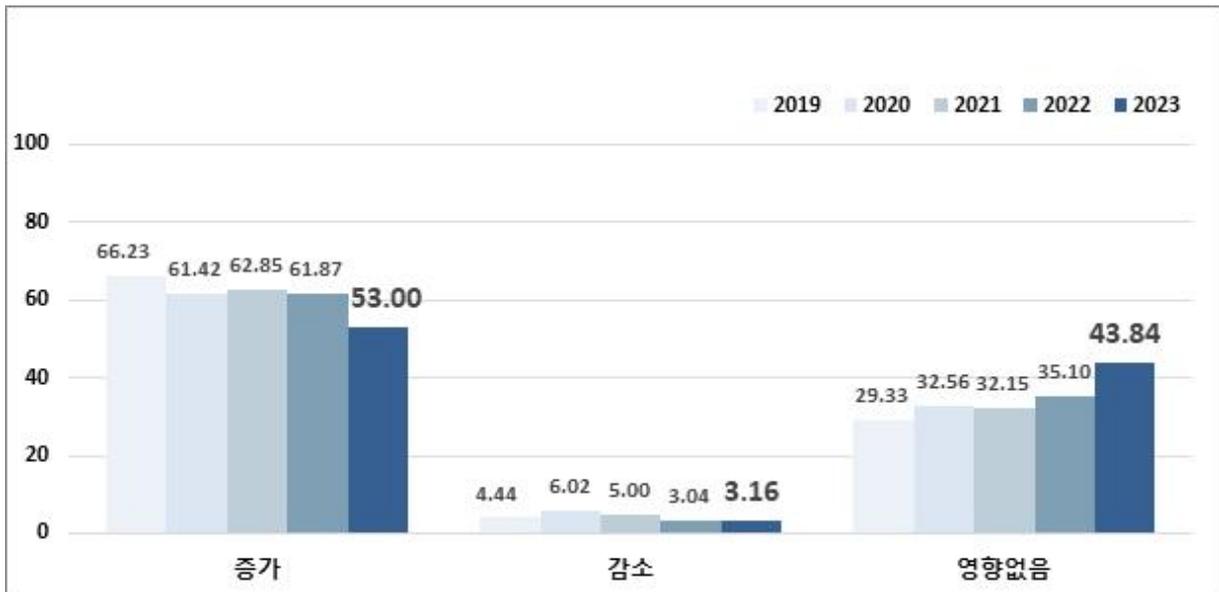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16d>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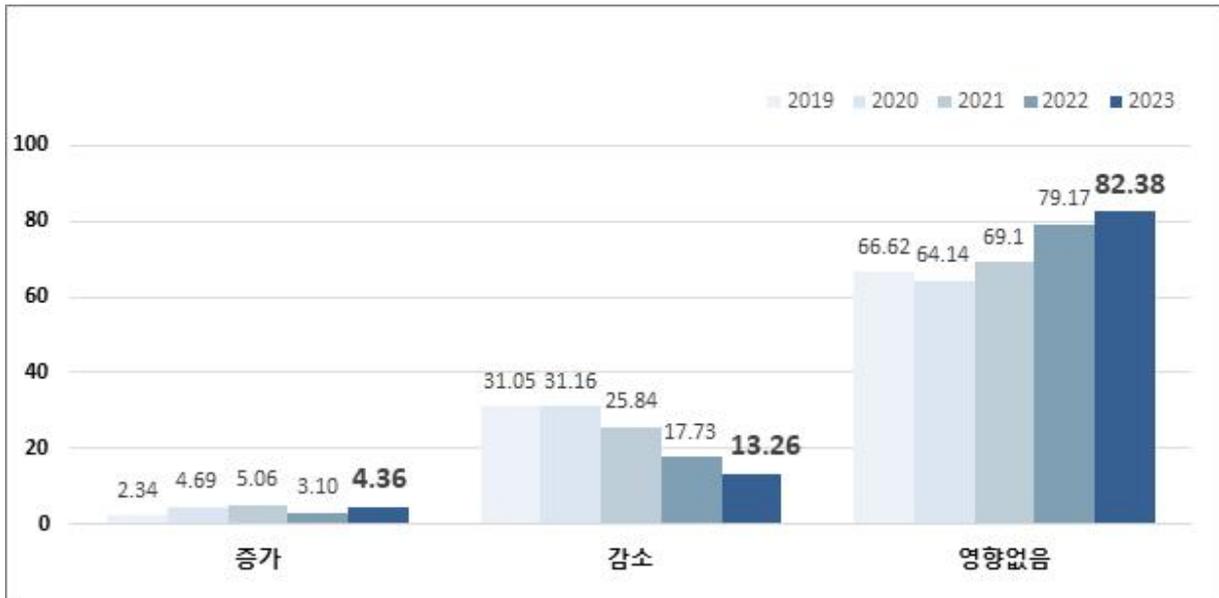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16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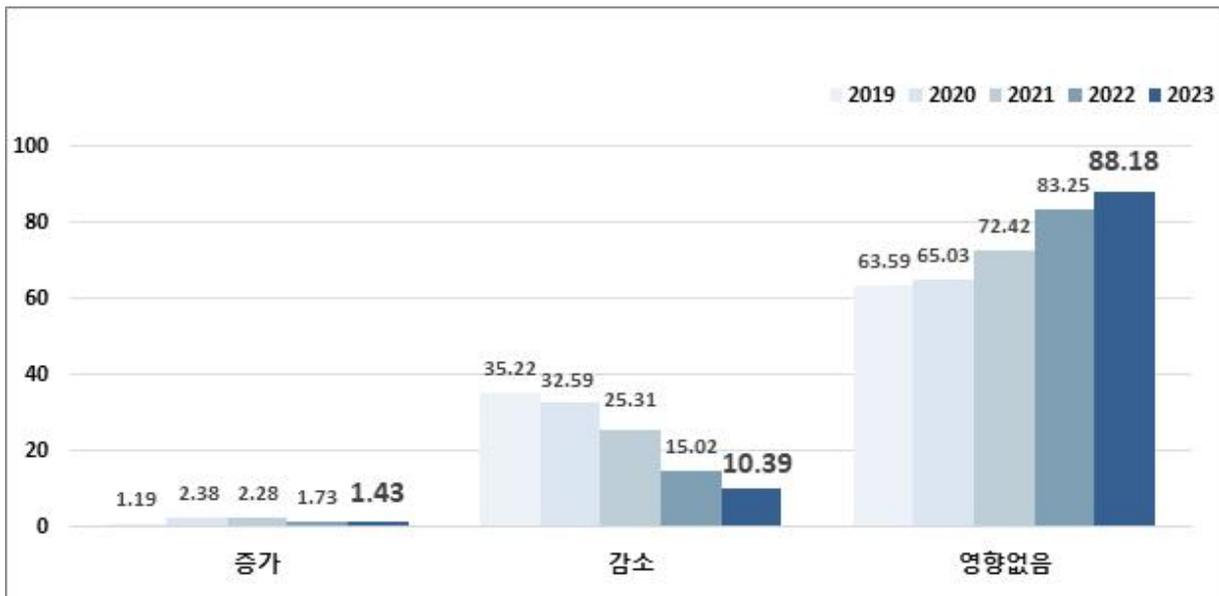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16f>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근로시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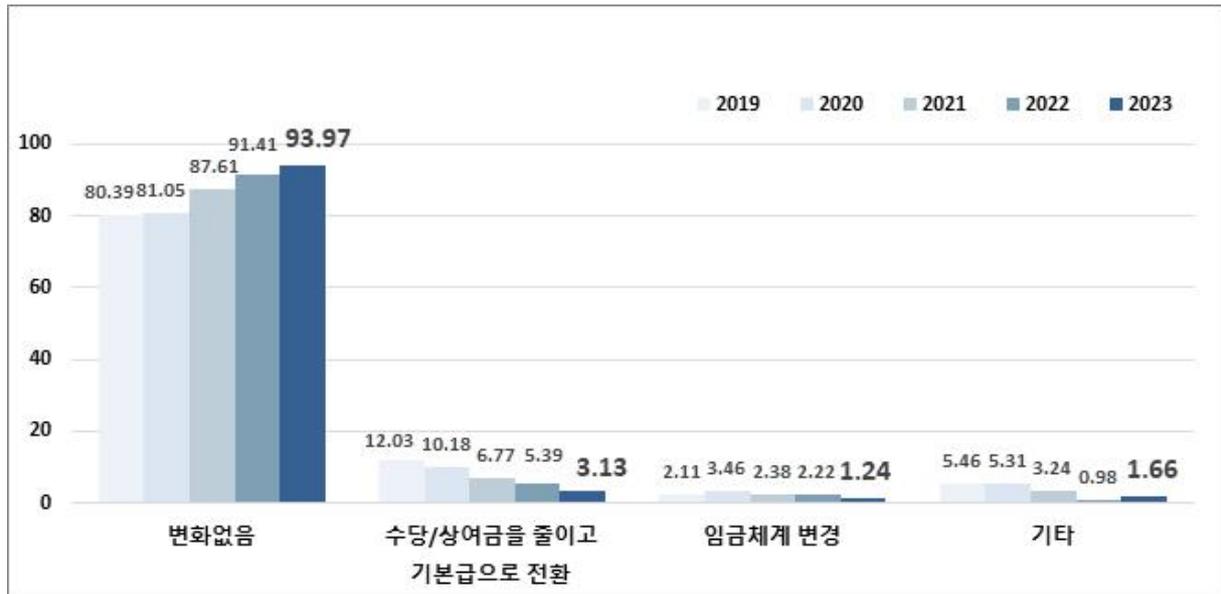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16g>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임금산정방식 변동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상승에 미친 영향

-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다른 설문 문항이 제시되었음
 - 사업주의 경우에는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3)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별로 5개의 항목(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 없음)을 각기 선택하도록 하였음
 -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22년) 시급 9,160원에서 올해(‘23년) 9,620원으로 시간당 460원(5.0%)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1)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460원)을 초과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 ‘2)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460원)만큼 임금이 인상되었다’, ‘3)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460원) 미만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4)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임금결정에서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정도’를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음 (<그림 17a>, <그림 17b> 참조)
 - 사업주 대상 설문에서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1.13%, 53.12%로 가장 높았음.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9%로 가장 높았음 (<그림 17a> 참조)
 - 근로자 대상 설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26.96%로 2022년 21.31%보다 5.65%p 소폭 증가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2022년 51.23%에서 46.78%로 4.45%p 감소함 (<그림 17b> 참조)

<그림 17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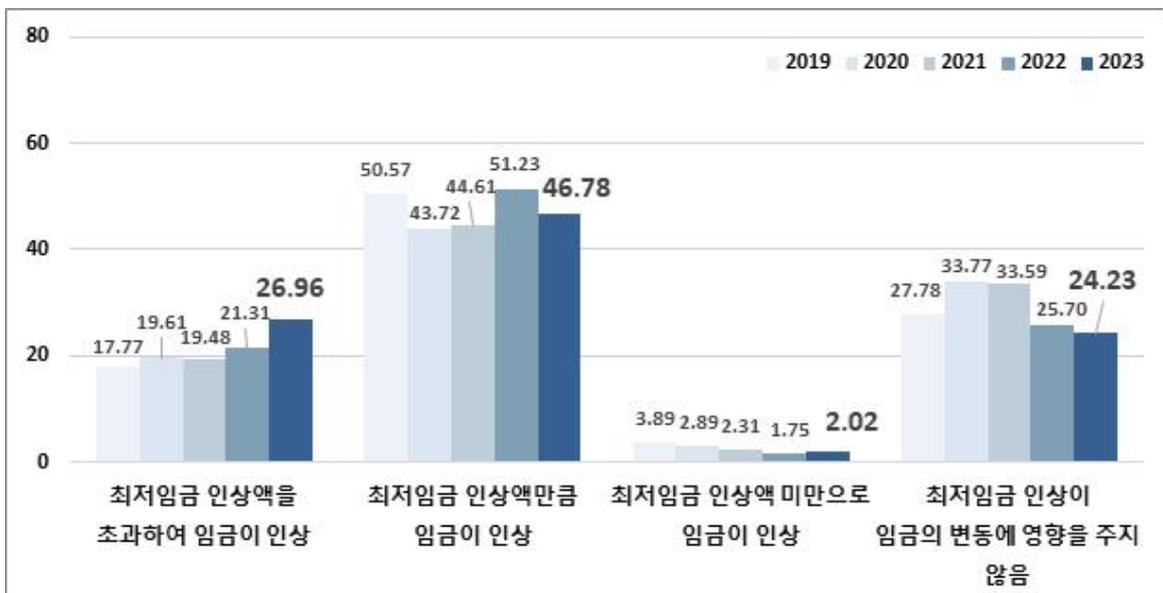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17b> 임금 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근로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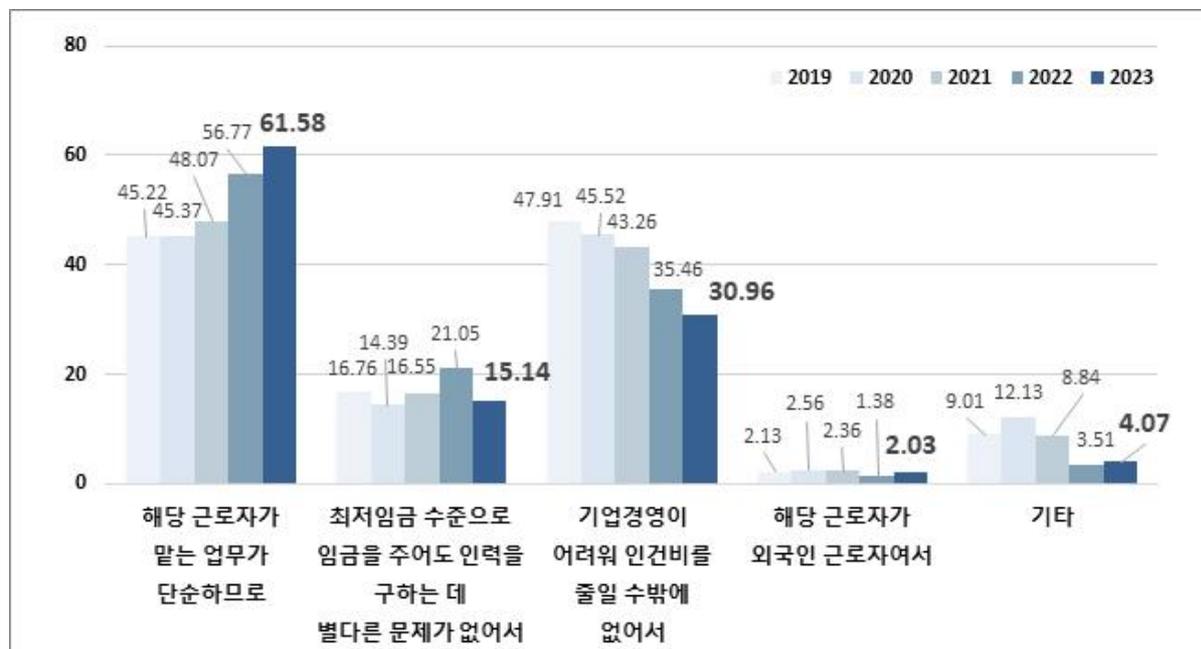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다.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

-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61.58%)이거나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30.96%)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림 18> 참조)

<그림 18>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4.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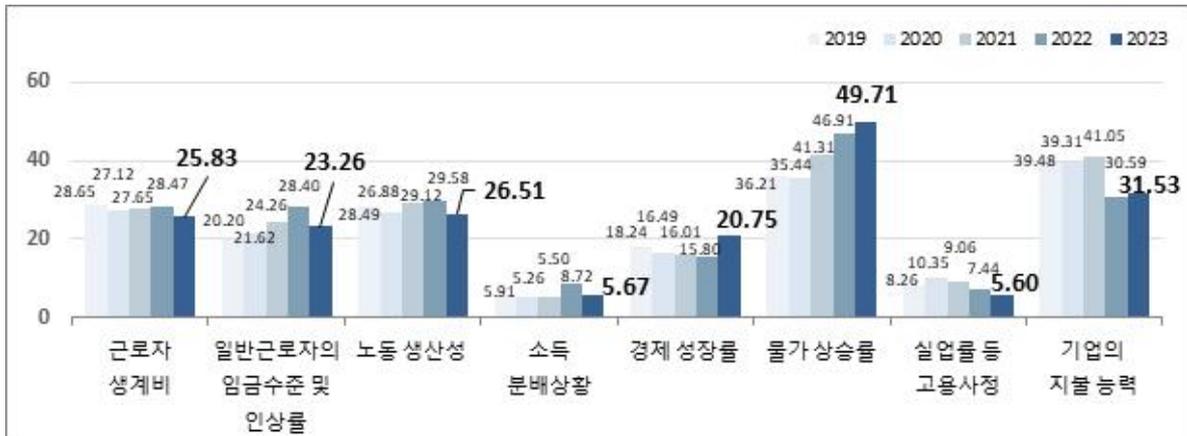
가. 최저임금 결정요인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일한 설문을 제공함

- 사업주들은 ‘물가상승률’(49.71%), ‘기업의 지불능력’(31.53%), ‘노동 생산성’(26.51%), ‘근로자생계비’(25.83%),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23.26%)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19a> 참조)

<그림 19a> 사업주의 최저임금 결정요인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62.30%), '근로자 생계비'(43.87%),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25.29%), '노동생산성'(18.81%), '경제 성장률'(18.20%)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19b> 참조)

<그림 19b> 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요인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나.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대해 사업체들의 경우, (<그림 20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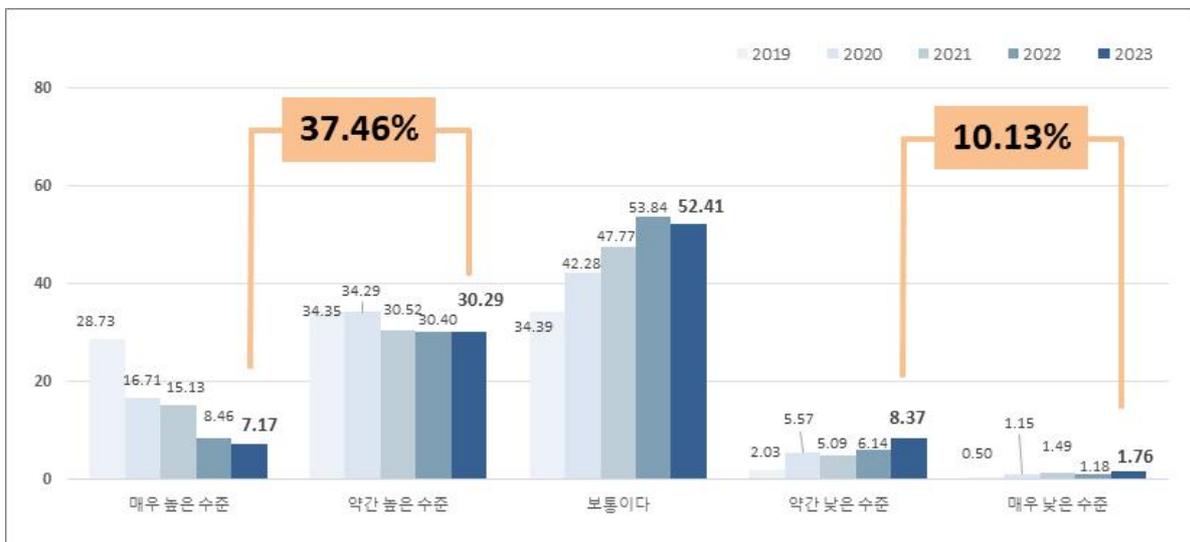
- '매우 높은 수준'(7.17%) 또는 '약간 높은 수준'(30.29%)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46%임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41%임
- '매우 낮은 수준'(1.76%) 또는 '약간 낮은 수준'(8.37%)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3%임

○ 반면 근로자의 경우, (<그림 20b> 참조)

- '매우 높은 수준'(0.70%) 또는 '약간 높은 수준'(4.78%)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8%임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6.58%임
- '매우 낮은 수준'(6.18%) 또는 '약간 낮은 수준'(31.76%)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94%임

<그림 20a>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주)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20b>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근로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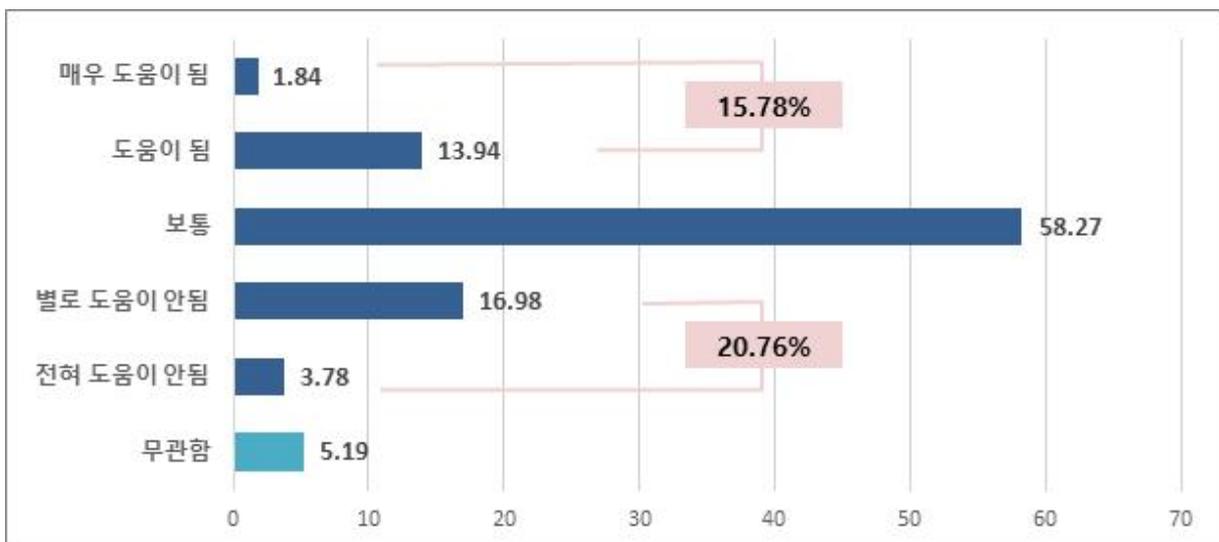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 인상이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은 58.27%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도움이 안 됨’(3.78%) 또는 ‘별로 도움이 안 됨’(16.98%)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76%, ‘매우 도움이 됨’(1.84%) 또는 ‘도움이 됨’(13.94%)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78%로 나타남 (<그림 21> 참조)

<그림 21>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인상의 생활향상 기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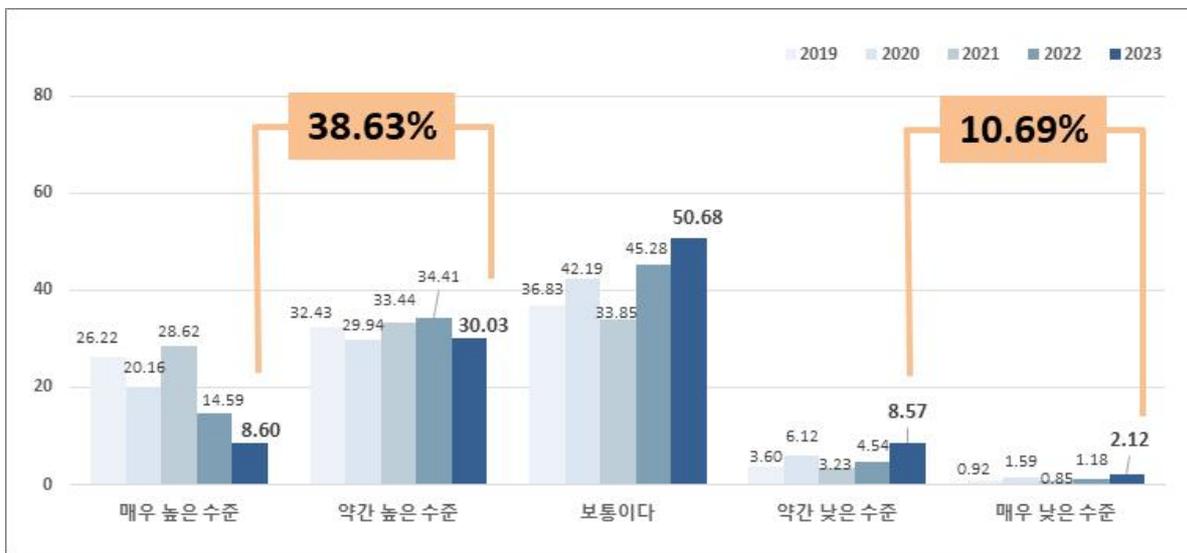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다. 2024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0.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뒤를 이어 '약간 높은 수준'(30.03%), '매우 높은 수준'(8.60%)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22a> 참조)

<그림 22a>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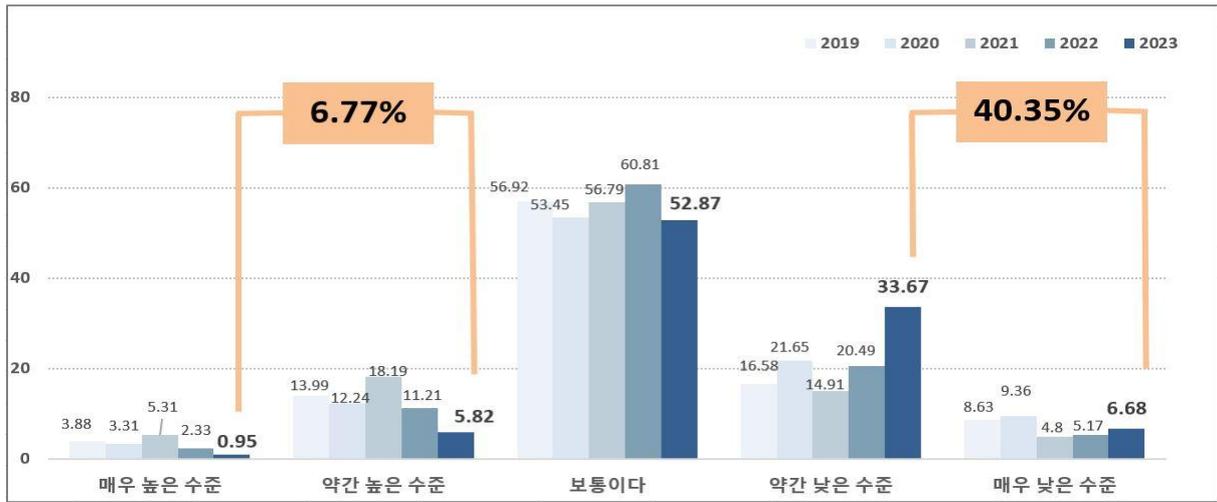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근로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약간 낮은 수준'(33.67%), '매우 낮은 수준'(6.68%)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22b> 참조)

<그림 22b>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근로자)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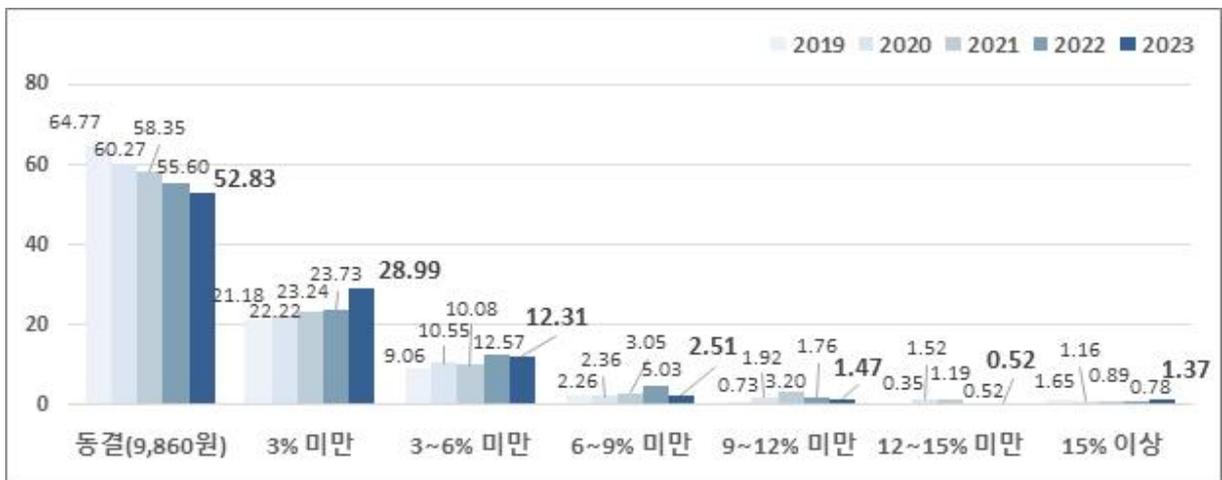
5.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수준에 대해 사업주는 '동결'이라는 응답이 5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3% 미만(28.99%)', '3~6% 미만(12.31%)' 순으로 응답함 (<그림 23a> 참조)

- '동결'이라는 응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3%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23a>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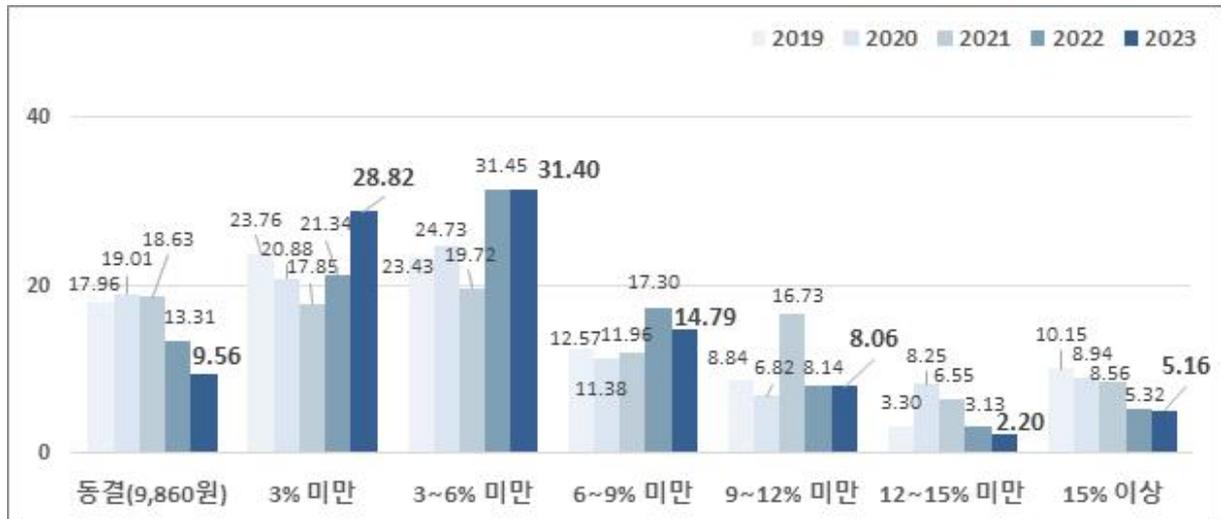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수준에 대해 근로자는 '3~6% 미만'이라는 응답이 31.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3% 미만'(28.82%), '6~9% 미만'(14.79%)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23b> 참조)

<그림 23b>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근로자)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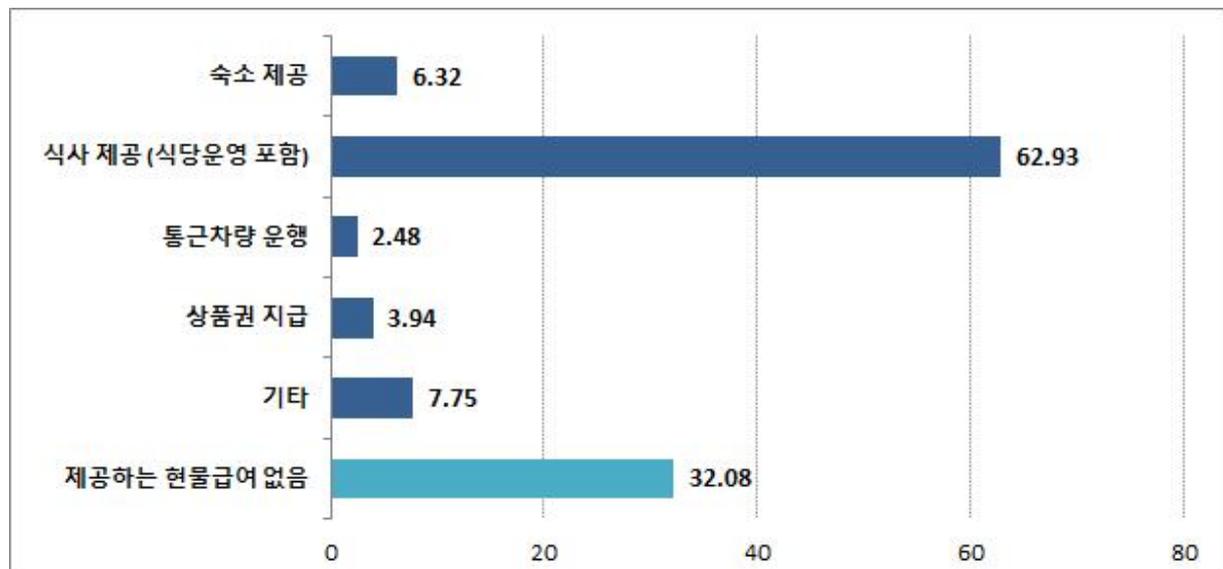
6. 복리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 ‘현물급여 지급실태’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물급여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업주는 67.92%,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으로 응답한 사업주는 32.08%였음

- 응답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살펴 보면,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62.93%), ‘기타’(7.75%), ‘숙소 제공’(6.32%), ‘상품권 지급’(3.94%), ‘통근차량 운행’(2.48%) 순으로 응답함 (복수 응답임) (<그림 24> 참조)

<그림 24>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주)

(단위 : %)



주: 1) 복수 응답.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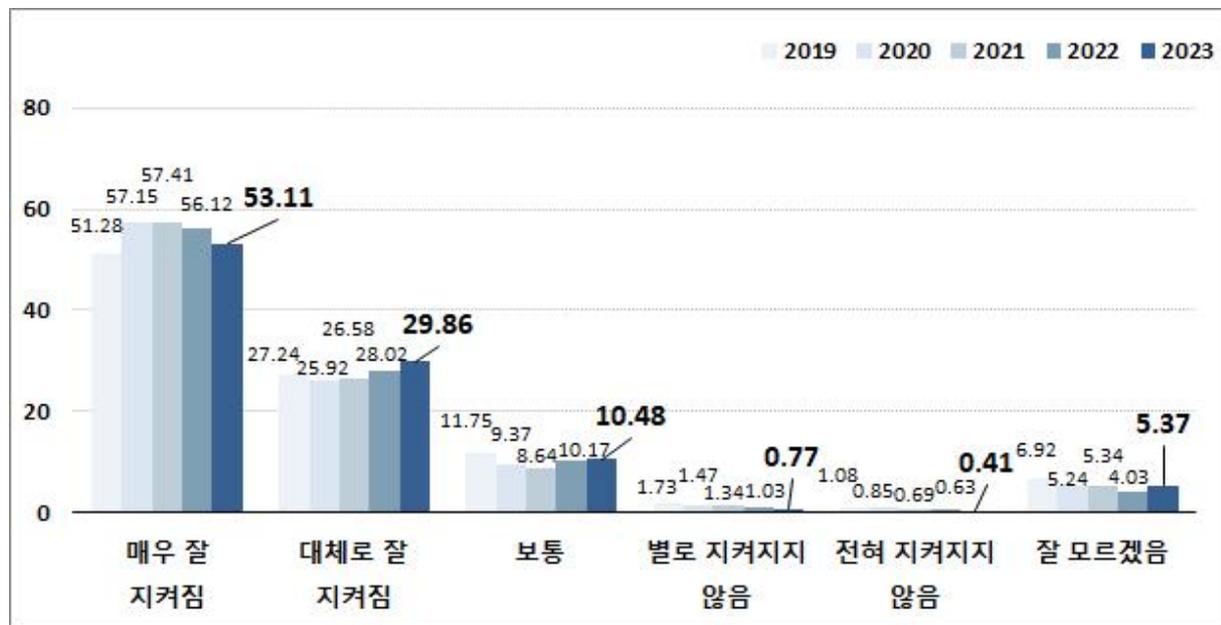
7. 최저임금제도 준수

○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그림 25> 참조)

- '매우 잘 지켜짐'이라는 응답이 5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어서 '대체로 잘 지켜짐'(29.86%), '보통'(10.48%)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그림 25>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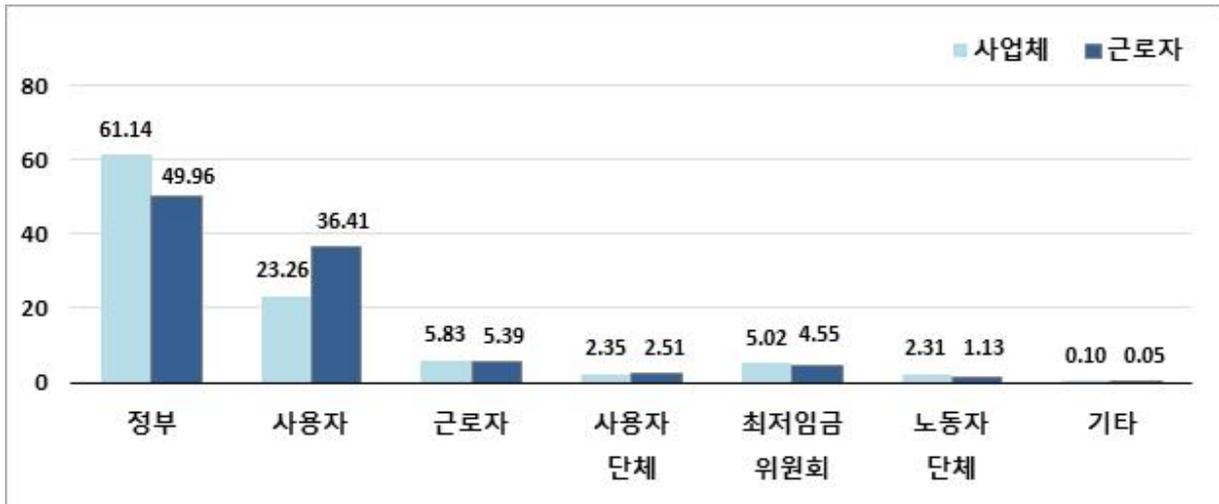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2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주, 근로자)

(단위 :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림 26> 참조)

- ‘사업주’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4%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사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6%임
-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6%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사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1%임

I. 서론

-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최저임금액은 각각 시간급 기준 8,720원과 9,16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책정되었음
 - 인상률로는 각각 2021년 1.5%, 2022년 5.05%를 기록하였고, 2023년은 5.0% 인상되었음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3월 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액 인상을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관례임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접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심의하고,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 재심의과정(필요한 경우)을 거쳐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액을 8월 초에 고시하게 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기초하여 결정(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결정 참고 요소와 관련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가계동향조사 등의 원자료(raw data)를 가공한 통계 결과를 최저임금 심의 자료로 이용
- 아울러 최저임금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11월 말에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질적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신고전학과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
 - 1980년대까지의 실증연구에서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론적 예측과 부합했음(Brown, 1999)
 - 1990년대에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수행된 실증연구는 이전과 달리 최저임금이 고용과 무관하거나,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함(Card & Krueger, 1994; Card and Krueger 1995)
 - 2000년대 이후에는 이들 의견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Giuliano, 2013; Neumark & Wascher, 2000; Neumark & Wascher, 2008; Neumark, Salas & Wascher, 2013)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 역시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와 고용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음
 - 강승복·박철성(2015), 김대일·이정민(2019), 강창희(2020, 2021)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신우리·송헌재·임현준(2019)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배진한(2019)은 최저임금이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낮추었다고 보고함. 또한, 이경호·김지환·최지훈(2019)은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반면에 김유선(2018), 송헌재 외(2018), 홍민기(2018)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함
- 따라서 최저임금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결과를 이용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조사통계에 기초한 정량적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위원회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까지 총 17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7~2022년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와 분석 결과는 각각 보고서(최강식 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로 간행되어 2008~2023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참고자료로써 이용하였음
 - 이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https://www.minimumwage.go.kr>)에서 받을 수 있고, 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통계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 2023년 11월에 일부 설문항목을 수정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본 연구는 2023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경제학·통계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2024년 최저임금 심의(2025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공표
- 공표 주기: 매년
 - 공표방법·시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minimumwage.go.kr>) 게재, 8월

II. 표본조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1. 조사대상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2023년 시간단위 최저임금액 9,620원의 1.5배인 14,430원 이하(저임금)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3,070개로 함

2. 표본설계

가. 개요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모집단 들은 존재하지 않음. 만일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조사대상 중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일부만 파악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하됨
 -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임의추출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함
- 차선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대략적인 모집단 들을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의 효율성은 다소 높아 지지만, 여전히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됨
 - 이러한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집단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표본 수를 결정함
 - 이때 산업분류는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상위(사업체 수) 10개 영역으로 하고, 사업체 규모는 299인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6개 규모로 함

나.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영역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분포

○ 표본조사 결과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비율을 추정한 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을 이용하여 <표 2-1>의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별 추정치를 구하였음

- 참고로 ‘사업체 규모가 0인(상용근로자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의미함

<표 2-1>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 추정(업종 및 규모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기준)						합계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개소)	(%)	
C. 제조업	10,665	101,305	43,112	40,842	13,866	2,917	212,707	16.62%	
G. 도매 및 소매업	48,633	208,965	39,874	19,002	3,632	742	320,849	25.08%	
H. 운수 및 창고업	927	14,243	4,704	4,974	2,555	779	28,180	2.20%	
I. 숙박 및 음식점업	96,223	159,062	19,354	7,307	902	97	282,945	22.11%	
L. 부동산업	3,644	47,931	13,741	6,647	642	119	72,725	5.6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56	22,454	5,309	4,944	2,718	1,087	39,267	3.07%	
P. 교육 서비스업	6,902	32,055	7,707	5,813	2,264	296	55,036	4.3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79	55,006	33,916	27,150	8,146	1,480	126,677	9.9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598	17,169	2,544	1,751	601	107	31,771	2.4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31	84,984	9,518	5,270	975	101	109,380	8.55%	
합계	(개소)	188,858	743,174	179,779	123,699	36,301	7,724	1,279,536	100%
	(%)	14.76%	58.08%	14.05%	9.67%	2.84%	0.60%	100%	-

자료: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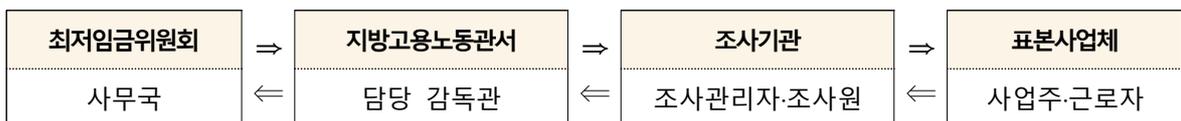
다. 표본추출 및 배정

- i) 사업체 : <표 2-1>의 분포에 따라 표본 수를 배정
 - ii) 근로자 : 추출된 사업체에 대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함
<상용근로자 수 기준>
 - 4인 이하 : 사업체당 최대 4명
 - 5~9인 : 사업체당 최대 5명
 - 10~99인 : 사업체당 최대 7명
 - 100~299인 : 사업체당 최대 10명
- 조사된 사업체 수는 3,070개였고, 근로자는 5,583명이었음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가. 조사방법

- 자계식, 타계식¹⁾ 면접조사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 사업체 방문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함
 - (대면 조사)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로 조사표 배포 후 사업체를 방문하여 작성한 조사표를 현장에서 점검·보완하여 회수
 - (비대면 조사) 인터넷, 이메일, 팩스, 우편 조사(응답자 요청 시)
- 조사체계는 다음과 같음
 - ① (최저임금위원회) 표본명부 및 조사표 확정
 - ② (지방관서) 표본명부 정비, 조사표·안내공문 우편 발송, 응답 독려 등
 - ③ (조사기관) 조사표·답례품 제작, 조사원 선발·교육, 조사표 회수, 내용검토, 보완조사, 전산입력, 자료처리, 통계표 작성



1) 조사표 기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사방법은 자계식과 타계식으로 구분되는데, 자계식은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반면, 타계식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법을 말함

나. 조사시점 · 실시기간

○ 조사 기준시점: 매년 11월 15일

- 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의 사업주와 사업체에 고용 중인 근로자 대상

○ 조사 실시기간: 매년 11월 15일부터 3주간(11.15.(수)~12.5.(화))

- 보완조사·재조사는 12.22.(금)까지 진행

4. 자료 분석

가. 자료수집 결과

○ 분석에 사용된 사업체는 3,070개로, 근로자는 5,583명이고 이를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2-2>는 최종 분석에 이용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분포이고, <표 2-3>은 최종 분석에 이용한 저임금 근로자의 분포임

<표 2-2>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수 기준)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합계	
								(개소)	(%)
C. 제조업		17	262	122	107	24	4	536	17.46
G. 도매 및 소매업		79	468	130	47	9	0	733	23.88
H. 운수 및 창고업		1	36	11	10	4	2	64	2.08
I. 숙박 및 음식점업		179	404	61	19	2	2	667	21.73
L. 부동산업		7	122	40	26	1	2	198	6.45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52	17	13	3	2	90	2.93
P. 교육 서비스업		11	81	17	13	3	3	128	4.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39	80	74	19	6	319	10.3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	40	6	5	2	1	72	2.3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198	26	17	4	3	263	8.57
합계	(개소)	331	1,802	510	331	71	25	3,070	100
	(%)	10.78	58.70	16.61	10.78	2.31	0.81	100	-

<표 2-3>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수

(단위 : 명, %)

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수 기준)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합계	
								(명)	(%)
C. 제조업		24	370	238	277	81	29	1,019	18.25
G. 도매 및 소매업		103	674	248	101	32	0	1,158	20.74
H. 운수 및 창고업		1	52	24	26	11	11	125	2.24%
I. 숙박 및 음식점업		261	680	172	63	3	12	1,191	21.33
L. 부동산업		18	183	108	68	1	19	397	7.11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	74	35	30	6	11	162	2.90
P. 교육 서비스업		13	115	36	29	12	29	234	4.1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247	190	220	73	34	765	13.7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	62	11	8	6	1	114	2.0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275	57	57	8	4	418	7.49
합계	(명)	470	2,732	1,119	879	233	150	5,583	100
	(%)	8.42	48.93	20.04	15.74	4.17	2.69	100	-

나. 2022년 조사와 2023년 조사의 사업체 분포 비교

○ 조사된 사업체의 분포는 2022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2-4>와 <표 2-5> 참조)

- 사업체 규모별 구성을 보면, '상용근로자 수 10~29인', '상용근로자 수 1~4인', '상용근로자 수 5~9인'의 사업체 비중은 각각 2.46%p, 2.12%p, 1.27%p 증가하였고 '상용근로자 수 0인' 사업체 비중은 6.36%p 감소함)
- 업종별 구성을 보면, '부동산업', '제조업' 비중은 증가했고, 반대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은 감소하였으며, 그 외 다른 업종은 근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음

<표 2-4>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22년, 2023년)

(단위 : 개소, %, %p)

사업체 규모 \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2022년		2023년		B-A (%p)
	사업체 수 (개소)	A (%)	사업체 수 (개소)	B (%)	
상용근로자 수 0인	525	17.14	331	10.78	-6.36
상용근로자 수 1~4인	1,733	56.58	1,802	58.70	2.12
상용근로자 수 5~9인	470	15.34	510	16.61	1.27
상용근로자 수 10~29인	255	8.33	331	10.78	2.46
상용근로자 수 30~99인	70	2.29	71	2.31	0.03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10	0.33	25	0.81	0.49
전체	3,063	100	3,070	100	0.00

2) 이는 조사대상인 표본목록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상용근로자수 0인의 사업체의 수가 부족해서 대신 같은 업종의 타 규모의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로 추정됨

<표 2-5>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22년, 2023년)

(단위 : 개소, %, %p)

산업대분류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2022년		2023년		B-A (%p)
	사업체 수 (개소)	A (%)	사업체 수 (개소)	B (%)	
C. 제조업	501	16.36	536	17.46	1.10
G. 도매 및 소매업	759	24.78	733	23.88	-0.90
H. 운수 및 창고업	50	1.63	64	2.08	0.45
I. 숙박 및 음식점업	749	24.45	667	21.73	-2.73
L. 부동산업	162	5.29	198	6.45	1.1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9	2.25	90	2.93	0.68
P. 교육 서비스업	135	4.41	128	4.17	-0.2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9	9.44	319	10.39	0.9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7	2.84	72	2.35	-0.5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2	8.55	263	8.57	0.01
합 계	3,063	100	3,070	100	0.00

○ 저임금 근로자 수 기준 구성비는 2022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2-6>과 <표 2-7> 참조)

- 사업체 규모별 구성을 보면, '상용근로자 수 0인', '상용근로자 수 30~99인'에서 저임금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고 그 외 사업체 규모에서 고용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는 증가함
- 업종별 구성을 보면, '부동산업'에서 고용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는 증가한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감소하였고, 그 외 다른 업종은 근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음

<표 2-6>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22년, 2023년)

(단위 : 명, %, %p)

사업체 규모 \ 저임금 근로자 수	2022년		2023년		B-A (%p)
	근로자 수 (명)	비율(A) (%)	근로자 수 (명)	비율(B) (%)	
상용근로자 수 0인	754	13.20	470	8.42	-4.78
상용근로자 수 1~4인	2,780	48.68	2,732	48.93	0.26
상용근로자 수 5~9인	1,089	19.07	1,119	20.04	0.97
상용근로자 수 10~29인	775	13.57	879	15.74	2.17
상용근로자 수 30~99인	267	4.68	233	4.17	-0.5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46	0.81	150	2.69	1.88
전체	5,711	100	5,583	100	0.00

<표 2-7>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22년, 2023년)

(단위 : 명, %, %p)

산업대분류 \ 저임금 근로자 수	2022년		2023년		B-A (%p)
	근로자 수 (명)	비율(A) (%)	근로자 수 (명)	비율(B) (%)	
C. 제조업	1,033	18.09	1,019	18.25	0.16
G. 도매 및 소매업	1,215	21.27	1,158	20.74	-0.53
H. 운수 및 창고업	107	1.87	125	2.24	0.37
I. 숙박 및 음식점업	1,279	22.40	1,191	21.33	-1.06
L. 부동산업	333	5.83	397	7.11	1.2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4	2.87	162	2.90	0.03
P. 교육 서비스업	246	4.31	234	4.19	-0.1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91	13.85	765	13.70	-0.1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5	2.36	114	2.04	-0.3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8	7.14	418	7.49	0.34
전체	5,711	100	5,583	100	0.00

다. 표본 수의 적정 여부

○ 확보된 사업체 표본 수는 3,070개이고, 근로자 표본 수는 5,583명임

- 비율에 관한 문항

- 응답문항 중 비율에 관한 결과에 대한 95% 신뢰수준 하에서의 최대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최대허용오차
사업체	1.77%
근로자	1.31%

- 여기서 최대허용오차는 $\pm 1.96 \times \sqrt{\frac{0.5(1-0.5)}{n}}$ 로 구해짐 (n은 표본 수)
- 단, 산업분류별이나 성별 등에 따른 세분화된 응답 비율은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수보다 줄어들어 이 경우의 최대 허용오차는 위의 오차보다 커지게 됨

- 수치에 관한 문항

- 응답문항 중 수치에 관한 문항은 표본평균으로 자료를 요약할 수 있고, 표본평균의 오차는 평균의 표준오차로 나타냄
- 이러한 표본평균의 정확도는 평균값에 대비한 표준오차인 상대표준오차로 비교하는데 이때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text{상대표준오차} = \frac{\text{평균의 표준오차}}{\text{평균}}$$

- 본 설문 문항 중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주요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음

문항	변수	상대표준오차
부가	시간당임금(전체 단위)	0.19% (5,583명 기준)
부가	근로시간(월 단위만)	0.33% (4,175명 기준)
부가	임금(월 단위만)	0.38% (4,175명 기준)

- 따라서 주요 문항들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1% 이내의 오차를 보여 표본 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사업체 규모 범주는 상용근로자 수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 당시의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조사항목별로 결측치(missing value)가 있는 표본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음
 - 따라서 사업체 수, 근로자 수 전체에서 응답 결과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사업주 대상 설문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응답한 비율은 61.34%이고, 대리 응답은 38.66%임
 - 사업주 응답 여부에 대한 결측치는 0건(0.00%)임

응답자 구분	빈도(비율)
사업주	1,883(61.34)
대리응답	1,187(38.66)
결측치	0(0)
전체	3,070(100)

- 2023년 조사에서 설문 내용은 전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음
 - 추가·수정된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는 <표 2-8>과 <표 2-9>를 참조

<표 2-8> 사업주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범주	설문 내용	설문 번호	변경
① 사업체 현황	주소, 주요 생산품목, 노조 유무	기본현황	
	매출액, 인건비 (작년 실적액, 올해 추정액)	문1	
	작년 대비 올해 경영 사정 (좋아진 이유, 나빠진 이유)	문2, 문2-1, 문2-2	
② 고용 현황	직접 고용 근로자 수(작년, 올해) 최저임금 또는 이하 수준 근로자수(작년, 올해)	문3	변경 ¹⁾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수준으로 고용하는 이유	문8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수준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 비교	문9	
③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의 임금액 수준별 임금 결정 수준	문4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	문5	
	최저임금으로 인한 항목별 변동 수준 (순이익, 제품(서비스) 가격,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시간)	문6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방식 변동	문7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 종류	문14, 문14-1	
④ 최저임금 결정 및 정착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문10	
	올해('23년), 내년('24년) 최저임금의 수준 평가, 내후년('25년) 최저임금의 적절 인상 수준	문11, 문12, 문13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중요 역할 주체	문15	
⑤ 기타	조사대상 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임금액, 근로시간 (10월분 임금)	부가 조사표	

주1: 응답 편의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해 논리구조가 연계되는 2022년 조사표의 문2와 문3을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고 전년도('22.12월말) 전체 근로자 수 항목 추가

<표 2-9> 근로자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범주	설문 내용	설문 번호	변경
① 근로자 특성	성별	문1	
	연령대	문2	
	학력	문3	
	현 직장 근무기간(근속 연수)	문4	
	현 직장 사회보험 가입 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문5	
	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문10 문10-1	
	현 직장에서 하는 일(표준직업분류)	문11	
② 근로자 가구 현황	가구원 수, 소득 활동을 한 가구원 수	문6-1, 문6-2	
	가구 소득 총액(10월 기준)	문7	
	가구 지출 총액(10월 기준)	문8	
	본인 근로소득의 가구 내 역할	문9	
③ 최저임금 인상 영향	최저임금이 본인 임금에 미친 영향	문12	
	최저임금의 생활 향상 도움 정도	문15	
④ 최저임금 결정 및 정착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문13	
	올해('23년), 내년('24년) 최저임금의 수준 평가, 내후년('25년) 최저임금의 적절 인상 수준	문14, 문16 문17	
	사업장의 최저임금제도 준수 정도	문18	
	사업장의 최저임금 고지 여부	문19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중요 역할 주체	문20	

III.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응답 사업체 특성과 사업체 경영 사정

가. 사업체 규모별업종별 특성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58.26%)가 가장 비중이 높음.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24.2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a>와 <표 3-1b> 참조)
 - 응답 '사업체 규모별' 구성비는 '상용근로자 수 5~9인'(16.63%), '상용근로자 수 10~29인'(11.00%)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음 (<표 3-1a> 참조)
 - 응답 사업체의 '업종별' 구성비는 '숙박 및 음식점업'(22.13%), '제조업'(18.33%)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표 3-1b> 참조)
- '2023년 인건비/매출액 추정치'는 30.28%로 '2022년 인건비/매출액 평균'인 29.02%에 비해 1.2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표 3-1a>와 <표 3-1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50.14%), '상용근로자 수 10~29인'(36.62%), '상용근로자 수 30~99인'(34.75%) 순임 (<표3-1a> 참조)
 -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9.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8.03%), '교육 서비스업'(44.97%) 순임 (<표 3-1b> 참조)

<표 3-1a> 응답 사업체 구성(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p)

응답 사업체 사업체 규모	빈도 (백분율)	2022년 인건비/매출액 평균(A) (%)	2023년 인건비/매출액 추정치(B) (%)	B-A (%p)
상용근로자 수 0인	314 (10.86)	21.29	22.24	0.95
상용근로자 수 1~4인	1685 (58.26)	28.08	29.48	1.39
상용근로자 수 5~9인	481 (16.63)	31.25	32.49	1.24
상용근로자 수 10~29인	318 (11.00)	35.38	36.62	1.24
상용근로자 수 30~99인	69 (2.39)	35.14	34.75	-0.4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25 (0.86)	49.53	50.14	0.61
전체	2,892 (100)	29.02	30.28	1.25

<표 3-1b> 응답 사업체 구성(업종별)

(단위 : 개소, %, %p)

응답 사업체 산업대분류	빈도 (백분율)	2022년 인건비/매출액 평균(A) (%)	2023년 인건비/매출액 추정치(B) (%)	B-A (%p)
C. 제조업	530 (18.33)	23.03	24.79	1.77
G. 도매 및 소매업	700 (24.20)	15.60	16.47	0.88
H. 운수 및 창고업	60 (2.07)	28.97	30.06	1.09
I. 숙박 및 음식점업	640 (22.13)	24.38	25.42	1.04
L. 부동산업	185 (6.40)	34.68	35.45	0.77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4 (2.90)	48.10	48.03	-0.06
P. 교육 서비스업	111 (3.84)	43.23	44.97	1.7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8 (9.96)	57.66	59.18	1.5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6 (2.28)	35.89	40.26	4.3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8 (7.88)	40.35	41.63	1.28
전체	2,892 (100)	29.02	30.28	1.25

- 사업체의 노조 유무를 살펴보면, 노조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1.50%,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8.50%임 (<표 3-2a>와 <표 3-2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 유무에 대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2a> 참조)
 -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사업체의 경우 16%, '상용근로자 수 30~99인' 사업체의 경우 12.68%임
 - '상용근로자 수 10~29인' 사업체의 경우 3.63%이며 그 이하 규모에서는 1% 내외의 비율이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노조 '있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운수 및 창고업' 사업체 비율이 12.50%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4.17%로 그 뒤를 이음 (<표 3-2b> 참조)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체의 경우 2.22%,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는 2.05%이며 다른 업종의 사업체에서는 1% 내외의 비율로 나타남

<표 3-2a> 사업체 노조 유무(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 노조 유무	노조 유무		전체
	있음	없음	
상용근로자 수 0인	1 (0.30)	330 (99.70)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13 (0.72)	1,789 (99.28)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7 (1.37)	503 (98.63)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12 (3.63)	319 (96.37)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9 (12.68)	62 (87.32)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4 (16.00)	21 (84.00)	25 (100)
전체	46 (1.50)	3,024 (98.50)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2b> 사업체 노조 유무(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노조 유무		전체
	있음	없음	
C. 제조업	6 (1.12)	530 (98.88)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15 (2.05)	718 (97.95)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8 (12.50)	56 (87.50)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4 (0.60)	663 (99.40)	667 (100)
L. 부동산업	1 (0.51)	197 (99.49)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2.22)	88 (97.78)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2 (1.56)	126 (98.44)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31)	318 (99.69)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 (4.17)	69 (95.83)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1.52)	259 (98.48)	263 (100)
전체	46 (1.50)	3,024 (98.50)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나. 사업체 경영사정

1) 경영사정

-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 변화를 보면, 응답 사업체(3,070개소) 가운데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5.93%이고, 경영사정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4.56%이며, 경영사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9.51%였음 (<표 3-3a>와 <표 3-3b> 참조)
- '사업체 규모별 특성'으로는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와 '상용근로자 수 30~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상용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체일수록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표 3-3a> 참조)
-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56.34%)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54.12%), '도매 및 소매업'(52.52%) 사업체가 그 뒤를 이음 (<표 3-3b> 참조)

<표 3-3a>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2022년 대비 경영사정	좋아졌다	전년과 비슷하다	나빠졌다	전체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0인	36 (10.88)	122 (36.86)	173 (52.27)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150 (8.32)	832 (46.17)	820 (45.50)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53 (10.39)	221 (43.33)	236 (46.27)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40 (12.08)	148 (44.71)	143 (43.20)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13 (18.31)	30 (42.25)	28 (39.44)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0 (0.00)	15 (60.00)	10 (40.00)	25 (100)
전체	292 (9.51)	1,368 (44.56)	1,410 (45.93)	3,070 (100)
전체(2022)	373 (12.18)	1,289 (42.08)	1,401 (45.74)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3b>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2022년 대비 경영사정			
	좋아졌다	전년과 비슷하다	나빠졌다	전체
C. 제조업	56 (10.45)	178 (33.21)	302 (56.34)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72 (9.82)	276 (37.65)	385 (52.52)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3 (4.69)	36 (56.25)	25 (39.06)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82 (12.29)	224 (33.58)	361 (54.12)	667 (100)
L. 부동산업	8 (4.04)	153 (77.27)	37 (18.69)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 (12.22)	45 (50.00)	34 (37.78)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10 (7.81)	64 (50.00)	54 (42.19)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 (6.90)	199 (62.38)	98 (30.72)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 (9.72)	40 (55.56)	25 (34.72)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 (7.98)	153 (58.17)	89 (33.84)	263 (100)
전체	292 (9.51)	1,368 (44.56)	1,410 (45.93)	3,070 (100)
전체(2022)	373 (12.18)	1,289 (42.08)	1,401 (45.74)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2) 경영사정 변화 사유

-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 사업체(3,070개소) 중 '좋아졌다'라고 대답한 사업체가 292개소(9.51%)였으며, (<표 3-3b> 참조), 그 사유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응답이 85.96%로 가장 높았음 (<표 3-4> 참조)

<표 3-4>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 호전 사유

(단위 : 개소, %)

2022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인건비 감소	임차료 감소	기타	전체 ²⁾
전체	251 (85.96)	7 (2.40)	6 (2.05)	3 (1.03)	50 (17.12)	292
전체(2022)	317 (84.99)	10 (2.68)	10 (2.68)	2 (0.54)	86 (23.06)	373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 사업체(3,070개소) 중 '나빠졌다'라고 대답한 사업체가 1,410개소(45.93%)이었으며 (<표 3-3b> 참조), 그 사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58.51%로 가장 높았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49.72%로 그 뒤를 이었음 (<표 3-5> 참조)

- 전년 대비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는 0.39%p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은 각각 2.87%p, 5.23%p 감소했음

<표 3-5> 2022년 대비 2023년도 경영사정 악화 사유

(단위 : 개소, %)

2022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임차료 상승	기타	전체 ²⁾
전체	701 (49.72)	825 (58.51)	520 (36.88)	94 (6.67)	138 (9.79)	1,410 (100)
전체(2022)	691 (49.32)	860 (61.38)	590 (42.11)	85 (6.07)	107 (7.64)	1,401 (100)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2. 고용 현황

가. 근로자 수

- 응답 사업체 3,070개소의 평균 근로자 수는 8.10명이었음 (<표 3-6a>~<표 3-6c> 참조)
 - 2022년의 조사대상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2023년 조사대상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가 0.72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근로자는 0.87명 감소하였고, 여성 근로자는 0.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를 '성별', '고용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51.49%)이 '여성'의 비율(48.51%)보다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여성' 비율(66.08%)이 '남성' 비율(33.92%)보다 높음 (<표 3-6a> 참조)
 - '성별·규모별' 평균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음 (<표 3-6b> 참조)
 - '성별·업종별' 평균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운수 및 창고업'(77.16%), '제조업'(67.3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2.50%), '교육 서비스업'(72.54%), '숙박 및 음식점업'(68.30%) 순으로 나타남 (<표 3-6c> 참조)

<표 3-6a>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성별	남성		여성		전체	
	명	%	명	%	명	%
정규직	3.06	51.49	2.88	48.51	5.94	100
비정규직	0.73	33.92	1.43	66.08	2.16	100
전체	3.79	46.79	4.31	53.21	8.10	100
전체(2022)	4.66	52.83	4.16	47.17	8.82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6b>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규모별)

(단위 : 명, %)

사업체 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자		남 성		여 성		전체	
	명	%	명	%	명	%	명	%
상용근로자 수 0인	0.93	30.84	2.09	69.16	3.03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1.60	43.54	2.07	56.46	3.67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3.76	48.47	4.00	51.53	7.77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8.79	48.88	9.19	51.12	17.98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27.17	47.65	29.85	52.35	57.0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67.80	51.32	64.32	48.68	132.12	100		
전체	3.79	46.79	4.31	53.21	8.10	100		
전체(2022)	4.66	52.83	4.16	47.17	8.82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6c>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업종별)

(단위 : 명, %)

산업대분류	사업체 평균 성별 근로자		남 성		여 성		전체	
	명	%	명	%	명	%	명	%
C. 제조업	7.09	67.36	3.44	32.64	10.53	100		
G. 도매 및 소매업	2.79	52.98	2.47	47.02	5.26	100		
H. 운수 및 창고업	13.56	77.16	4.02	22.84	17.58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39	31.70	2.99	68.30	4.38	100		
L. 부동산업	4.06	61.77	2.51	38.23	6.57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4	49.64	10.19	50.36	20.23	100		
P. 교육 서비스업	2.40	27.46	6.34	72.54	8.73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8	17.50	12.64	82.50	15.32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69	58.18	3.38	41.82	8.07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3	48.90	3.17	51.10	6.20	100		
전체	3.79	46.79	4.31	53.21	8.10	100		
전체(2022)	4.66	52.83	4.16	47.17	8.82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3.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 임금 결정에 대해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조사 (<표 3-7> 참조)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81.13%,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10.51%로 나타남
 -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53.12%,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이라는 응답이 27.32%로 나타남
 -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36.49%,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35.33%로 나타남

<표 3-7>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임금수준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²⁾	전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임금수준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37 (4.18)	718 (81.13)	37 (4.18)	93 (10.51)	885 (100)	2,185	3,070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740 (27.32)	1,439 (53.12)	91 (3.36)	439 (16.21)	2,709 (100)	361	3,070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378 (36.49)	366 (35.33)	62 (5.98)	230 (22.20)	1,036 (100)	2,034	3,070

주: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의 수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임금 결정에 대해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영향 정도를 '임금 수준'과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3-8a>~<표 3-8c> 참조)

-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임금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 임금 인상액만큼 인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8a>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가 78.1%로 가장 낮았으며,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사업체는 100%로 가장 높았음

<표 3-8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최저임금 인상액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²⁾	전체
	최저임금 인상액 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상용근로자 수 0인	6 (5.56)	88 (81.48)	5 (4.63)	9 (8.33)	108 (100)	223	331
상용근로자 수 1~4인	18 (3.72)	378 (78.1)	22 (4.55)	66 (13.64)	484 (100)	1,318	1,802
상용근로자 수 5~9인	7 (4.55)	131 (85.06)	7 (4.55)	9 (5.84)	154 (100)	356	51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6 (5.77)	88 (84.62)	2 (1.92)	8 (7.69)	104 (100)	227	331
상용근로자 수 30~99인	0 (0.00)	21 (91.30)	1 (4.35)	1 (4.35)	23 (100)	48	71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0 (0.00)	12 (100)	0 (0.00)	0 (0.00)	12 (100)	13	25
전체	37 (4.18)	718 (81.13)	37 (4.18)	93 (10.51)	885 (100)	2,185	3,070
전체(2022)	59 (6.99)	636 (75.36)	27 (3.20)	122 (14.45)	844 (100)	2,219	3,063

주: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각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의 수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의 임금인상 정도는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8b>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0인' 사업체가 48.64%로 가장 낮았으며,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사업체는 62.50%로 가장 높았음

<표 3-8b>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초과~1.5배 이하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최저임금 인상액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²⁾	전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상용근로자 수 0인	77 (29.96)	125 (48.64)	9 (3.50)	46 (17.90)	257 (100)	74	331
상용근로자 수 1~4인	422 (27.07)	815 (52.28)	42 (2.69)	280 (17.96)	1,559 (100)	243	1,802
상용근로자 수 5~9인	130 (27.20)	269 (56.28)	13 (2.72)	66 (13.81)	478 (100)	32	51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85 (26.40)	176 (54.66)	20 (6.21)	41 (12.73)	322 (100)	9	331
상용근로자 수 30~99인	18 (26.09)	39 (56.52)	6 (8.70)	6 (8.70)	69 (100)	2	71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8 (33.33)	15 (62.50)	1 (4.17)	0 (0.00)	24 (100)	1	25
전체	740 (27.32)	1,439 (53.12)	91 (3.36)	439 (16.21)	2,709 (100)	361	3,070
전체(2022)	550 (21.23)	1,633 (63.03)	107 (4.13)	301 (11.62)	2,591 (100)	472	3,063

- 주: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 2) 각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의 수
-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정도는 '상용근로자 수 1~4인', '상용근로자 수 10~2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8c>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했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5~9인' 사업체가 33.45%로 가장 낮았으며,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가 39.07%로 가장 높았음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가 32.92%로 가장 낮았으며,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사업체는 52.38%로 높았음

<표 3-8c>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최저임금 인상액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²⁾	전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상용근로자 수 0인	10 (38.46)	11 (42.31)	1 (3.85)	4 (15.38)	26 (100)	305	331
상용근로자 수 1~4인	159 (39.07)	134 (32.92)	15 (3.69)	99 (24.32)	407 (100)	1,395	1,802
상용근로자 수 5~9인	98 (33.45)	107 (36.52)	13 (4.44)	75 (25.60)	293 (100)	217	51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83 (35.32)	81 (34.47)	25 (10.64)	46 (19.57)	235 (100)	96	331
상용근로자 수 30~99인	20 (37.04)	22 (40.74)	6 (11.11)	6 (11.11)	54 (100)	17	71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8 (38.10)	11 (52.38)	2 (9.52)	0 (0.00)	21 (100)	4	25
전체	378 (36.49)	366 (35.33)	62 (5.98)	230 (22.20)	1,036 (100)	2,034	3,070
전체(2022)	268 (28.30)	454 (47.94)	82 (8.66)	143 (15.10)	947 (100)	2,116	3,063

주: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각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의 수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임금 결정에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영향 정도를 '임금수준'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3-9a>~<표 3-9c> 참조)
 -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 인상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이라는 응답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모두 70% 이상으로 가장 많음 (<표 3-9a>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90.0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교육 서비스업'(86.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5.98%) 순임
 -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했다는 응답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에서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2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9a>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인상액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²⁾	전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C. 제조업	6 (3.80)	134 (84.81)	3 (1.90)	15 (9.49)	158 (100)	378	536
G. 도매 및 소매업	4 (2.17)	153 (83.15)	8 (4.35)	19 (10.33)	184 (100)	549	733
H. 운수 및 창고업	0 (0.00)	9 (90.00)	0 (0.00)	1 (10.00)	10 (100)	54	64
I. 숙박 및 음식점업	14 (7.00)	162 (81.00)	9 (4.50)	15 (7.50)	200 (100)	467	667
L. 부동산업	4 (5.41)	54 (72.97)	3 (4.05)	13 (17.57)	74 (100)	124	19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4.00)	21 (84.00)	1 (4.00)	2 (8.00)	25 (100)	65	90
P. 교육 서비스업	2 (6.90)	25 (86.21)	0 (0.00)	2 (6.90)	29 (100)	99	12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3.74)	92 (85.98)	7 (6.54)	4 (3.74)	107 (100)	212	31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 (0.00)	17 (77.27)	2 (9.09)	3 (13.64)	22 (100)	50	7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63)	51 (67.11)	4 (5.26)	19 (25.00)	76 (100)	187	263
전체	37 (4.18)	718 (81.13)	37 (4.18)	93 (10.51)	885 (100)	2,185	3,070
전체(2022)	59 (6.99)	636 (75.36)	27 (3.20)	122 (14.45)	844 (100)	2,219	3,063

주: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각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의 수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 정도는 사업체 업체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9b>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66.6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업'이 60.0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했다는 응답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30.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교육 서비스업'에서 24.79%로 가장 높았음

<표 3-9b>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초과~1.5배 이하 근로자, 업종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²⁾	전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산업대분류							
C. 제조업	138 (27.94)	233 (47.17)	16 (3.24)	107 (21.66)	494 (100)	42	536
G. 도매 및 소매업	174 (27.53)	344 (54.43)	11 (1.74)	103 (16.30)	632 (100)	101	733
H. 운수 및 창고업	17 (27.87)	33 (54.10)	3 (4.92)	8 (13.11)	61 (100)	3	64
I. 숙박 및 음식점업	171 (29.43)	292 (50.26)	23 (3.96)	95 (16.35)	581 (100)	86	667
L. 부동산업	36 (21.18)	102 (60.00)	4 (2.35)	28 (16.47)	170 (100)	28	19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 (27.16)	41 (50.62)	6 (7.41)	12 (14.81)	81 (100)	9	90
P. 교육 서비스업	29 (24.79)	56 (47.86)	3 (2.56)	29 (24.79)	117 (100)	11	12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 (23.37)	194 (66.67)	12 (4.12)	17 (5.84)	291 (100)	28	31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 (27.42)	33 (53.23)	1 (1.61)	11 (17.74)	62 (100)	10	7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8 (30.91)	111 (50.45)	12 (5.45)	29 (13.18)	220 (100)	43	263
전체	740 (27.32)	1,439 (53.12)	91 (3.36)	439 (16.21)	2,709 (100)	361	3,070
전체(2022)	550 (21.23)	1,633 (63.03)	107 (4.13)	301 (11.62)	2,591 (100)	472	3,063

- 주: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각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의 수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이라는 응답이 36.49%,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이라는 응답이 35.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c>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했다는 응답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49.28%로 가장 높았음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49.1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업'이 46.48%로 나타남
-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에서 31.7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교육 서비스업'이 25.00%로 나타남

<표 3-9c>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²⁾	전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C. 제조업	93 (32.40)	80 (27.87)	23 (8.01)	91 (31.71)	287 (100)	249	536
G. 도매 및 소매업	94 (37.90)	83 (33.47)	13 (5.24)	58 (23.39)	248 (100)	485	733
H. 운수 및 창고업	11 (32.35)	14 (41.18)	4 (11.76)	5 (14.71)	34 (100)	30	64
I. 숙박 및 음식점업	49 (41.53)	38 (32.20)	5 (4.24)	26 (22.03)	118 (100)	549	667
L. 부동산업	23 (32.39)	33 (46.48)	4 (5.63)	11 (15.49)	71 (100)	127	19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 (31.71)	17 (41.46)	5 (12.2)	6 (14.63)	41 (100)	49	90
P. 교육 서비스업	14 (35.00)	15 (37.50)	1 (2.50)	10 (25.00)	40 (100)	88	12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 (36.61)	55 (49.11)	3 (2.68)	13 (11.61)	112 (100)	207	31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37.50)	7 (43.75)	0 (0.00)	3 (18.75)	16 (100)	56	7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 (49.28)	24 (34.78)	4 (5.80)	7 (10.14)	69 (100)	194	263
전체	378 (36.49)	366 (35.33)	62 (5.98)	230 (22.2)	1,036 (100)	2,034	3,070
전체(2022)	268 (28.30)	454 (47.94)	82 (8.66)	143 (15.1)	947 (100)	2,116	3,063

주: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각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의 수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변화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효과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효과'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효과는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3-10a> 참조)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전체 응답 사업체(3,070개소) 중 79.93%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9.67%로 2022년과 비교하여 4.30%p 감소하였음

<표 3-10a>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	전체
상용근로자 수 0인	55 (16.62)	251 (75.83)	15 (4.53)	10 (3.02)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164 (9.10)	1,506 (83.57)	64 (3.55)	68 (3.77)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44 (8.63)	405 (79.41)	24 (4.71)	37 (7.25)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24 (7.25)	240 (72.51)	35 (10.57)	32 (9.67)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7 (9.86)	38 (53.52)	15 (21.13)	11 (15.49)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3 (12.00)	14 (56.00)	5 (20.00)	3 (12.00)	25 (100)
전체	297 (9.67)	2,454 (79.93)	158 (5.15)	161 (5.24)	3,070 (100)
전체(2022)	428 (13.97)	2,327 (75.97)	106 (3.46)	202 (6.59)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효과'를 '사업체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상관없이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10b> 참조)
 -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은 '부동산업'에서 93.94%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3.94%로 가장 높았음

<표 3-10b>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업종별)

(단위 : 개수, %)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	전체
C. 제조업		46 (8.58)	422 (78.73)	31 (5.78)	37 (6.9)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77 (10.50)	577 (78.72)	34 (4.64)	45 (6.14)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4 (6.25)	50 (78.13)	3 (4.69)	7 (10.94)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93 (13.94)	512 (76.76)	31 (4.65)	31 (4.65)	667 (100)
L. 부동산업		8 (4.04)	186 (93.94)	1 (0.51)	3 (1.52)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 (11.11)	70 (77.78)	8 (8.89)	2 (2.22)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15 (11.72)	106 (82.81)	2 (1.56)	5 (3.91)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 (6.58)	243 (76.18)	35 (10.97)	20 (6.27)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5.56)	60 (83.33)	6 (8.33)	2 (2.78)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 (7.22)	228 (86.69)	7 (2.66)	9 (3.42)	263 (100)
전체		297 (9.67)	2,454 (79.93)	158 (5.15)	161 (5.24)	3,070 (100)
전체(2022)		428 (13.97)	2,327 (75.97)	106 (3.46)	202 (6.59)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과 인건비 변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에 상관없이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79.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1> 참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 여부'에 '증가하였다'라고 응답한 경우,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은 73.45%로 나타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 여부'에 '감소하였다'라고 응답한 경우,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은 39.18%, 그 뒤를 이어 '최저임금과 관계 없이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23.71%로 나타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고 응답은 90.71%로 나타남

<표 3-1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과 인건비 변동의 관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 여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	전체
증가하였다	223 (13.71)	1,195 (73.45)	112 (6.88)	97 (5.96)	1,627 (100)
감소하였다	33 (34.02)	38 (39.18)	3 (3.09)	23 (23.71)	97 (100)
영향이 없었다	41 (3.05)	1,221 (90.71)	43 (3.19)	41 (3.05)	1,346 (100)
전체	297 (9.67)	2,454 (79.93)	158 (5.15)	161 (5.24)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5. 최저임금 상승 영향

○ 2023년 적용되었던 '최저임금 상승 영향'에 대해 (<표 3-12a>와 <표 3-12b> 참조),

- '순이익(이윤)', '신규채용', '근로시간'의 경우 '영향없음', '감소', '증가' 순으로 응답함
 - '순이익(이윤)'은 '영향없음'(57.49%), '감소'(38.44%), '증가'(4.07%) 순으로 응답함
 - '신규채용'은 '영향없음'(82.38%), '감소'(13.26%), '증가'(4.36%) 순으로 응답함
 - '근로시간'은 '영향없음'(88.18%), '감소'(10.39%), '증가'(1.43%) 순으로 응답함
- '제품(서비스) 가격'의 경우 '영향없음'(68.01%), '증가'(28.40%), '감소'(3.58%) 순으로 응답함
- '인건비'의 경우 '증가'(53.00%), '영향없음'(43.84%), '감소'(3.16%) 순으로 응답함

<표 3-12a> 최저임금 상승 영향(총괄)

(단위 : 개소, %)

항목 \ 최저임금 상승 영향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순이익(이윤)	125 (4.07)	1,180 (38.44)	1,765 (57.49)	3,070 (100)
제품(서비스) 가격	872 (28.40)	110 (3.58)	2,088 (68.01)	3,070 (100)
인건비	1,627 (53.00)	97 (3.16)	1,346 (43.84)	3,070 (100)
신규채용	134 (4.36)	407 (13.26)	2,529 (82.38)	3,070 (100)
근로시간	44 (1.43)	319 (10.39)	2,707 (88.18)	3,070 (100)

항목 \ 최저임금 상승 영향	변화 없음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	임금체계 변경	기타	전체
임금산정방식	2,885 (93.97)	96 (3.13)	38 (1.24)	51 (1.66)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사업체 규모별'로 순이익이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사업체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가 60.04%로 그 뒤를 이었음 (<표 3-12b> 참조)
-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제품(서비스) 가격'에 '영향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68.01%로 나타남 (<표 3-12b> 참조)
 - '제품(서비스) 가격'에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10~29인' 사업체(71.30%),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70.1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최저임금액 상승의 효과가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53.00%로 가장 높았으며, 인건비의 부담에 '영향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43.84%로 그 뒤를 이었음 (<표 3-12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 1~4인'을 제외하고,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인건비 부담의 증가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최저임금액 상승이 신규채용에 '영향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82.38%였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13.26%이었음 (<표 3-12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 1~4인' 사업체에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8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최저임금액 상승이 근로시간에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은 88.18%였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10.39%이었음 (<표 3-12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 0인' 사업체(76.13%)를 제외하고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90% 내외로 나타났음
- 최저임금액 상승이 임금산정 방식에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93.97%였으며,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이라는 응답이 3.13%이었음 (<표 3-12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 39~99인' 사업체(87.32%)를 제외하고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표 3-12b> 최저임금액 상승 영향(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상승 영향	순이익(이윤)				제품(서비스) 가격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0인	20 (6.04)	157 (47.43)	154 (46.53)	331 (100)	138 (41.69)	13 (3.93)	180 (54.38)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65 (3.61)	655 (36.35)	1,082 (60.04)	1,802 (100)	485 (26.91)	53 (2.94)	1,264 (70.14)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20 (3.92)	202 (39.61)	288 (56.47)	510 (100)	142 (27.84)	20 (3.92)	348 (68.24)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14 (4.23)	126 (38.07)	191 (57.70)	331 (100)	76 (22.96)	19 (5.74)	236 (71.30)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4 (5.63)	33 (46.48)	34 (47.89)	71 (100)	24 (33.80)	4 (5.63)	43 (60.56)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2 (8.00)	7 (28.00)	16 (64.00)	25 (100)	7 (28.00)	1 (4.00)	17 (68.00)	25 (100)
전체	125 (4.07)	1,180 (38.44)	1,765 (57.49)	3,070 (100)	872 (28.4)	110 (3.58)	2,088 (68.01)	3,070 (100)
전체(2022)	119 (3.89)	1,448 (47.27)	1,496 (48.84)	3,063 (100)	1,074 (35.06)	119 (3.89)	1,870 (61.05)	3,063 (1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인건비				신규채용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0인	169 (51.06)	19 (5.74)	143 (43.20)	331 (100)	12 (3.63)	67 (20.24)	252 (76.13)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887 (49.22)	53 (2.94)	862 (47.84)	1,802 (100)	58 (3.22)	209 (11.60)	1,535 (85.18)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299 (58.63)	9 (1.76)	202 (39.61)	510 (100)	19 (3.73)	72 (14.12)	419 (82.16)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207 (62.54)	11 (3.32)	113 (34.14)	331 (100)	30 (9.06)	41 (12.39)	260 (78.55)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48 (67.61)	4 (5.63)	19 (26.76)	71 (100)	10 (14.08)	12 (16.90)	49 (69.01)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17 (68.00)	1 (4.00)	7 (28.00)	25 (100)	5 (20.00)	6 (24.00)	14 (56.00)	25 (100)
전체	1,627 (53.00)	97 (3.16)	1,346 (43.84)	3,070 (100)	134 (4.36)	407 (13.26)	2,529 (82.38)	3,070 (100)
전체(2022)	1,895 (61.87)	93 (3.04)	1,075 (35.10)	3,063 (100)	95 (3.10)	543 (17.73)	2,425 (79.17)	3,063 (1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사업체 규모	근로시간				임금산정 방식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변화 없음	수당/ 상여금을 기본급 으로 전환	임금 체계 변경	기타	전체
상용근로자 수 0인	10 (3.02)	69 (20.85)	252 (76.13)	331 (100)	313 (94.56)	7 (2.11)	1 (0.30)	10 (3.02)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25 (1.39)	169 (9.38)	1,608 (89.23)	1,802 (100)	1,708 (94.78)	44 (2.44)	22 (1.22)	28 (1.55)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1 (0.20)	44 (8.63)	465 (91.18)	510 (100)	473 (92.75)	25 (4.90)	7 (1.37)	5 (0.98)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5 (1.51)	31 (9.37)	295 (89.12)	331 (100)	304 (91.84)	15 (4.53)	8 (2.42)	4 (1.21)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3 (4.23)	4 (5.63)	64 (90.14)	71 (100)	62 (87.32)	5 (7.04)	0 (0.00)	4 (5.63)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0 (0.00)	2 (8.00)	23 (92.00)	25 (100)	25 (100)	0 (0.00)	0 (0.00)	0 (0.00)	25 (100)
전체	44 (1.43)	319 (10.39)	2,707 (88.18)	3,070 (100)	2,885 (93.97)	96 (3.13)	38 (1.24)	51 (1.66)	3,070 (100)
전체(2022)	53 (1.73)	460 (15.02)	2,550 (83.25)	3,063 (100)	2,800 (91.41)	165 (5.39)	68 (2.22)	30 (0.98)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 상승의 효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3-12c> 참조)

- 순이익(이윤)에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57.4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감소'했다는 비율은 38.44%로 나타남
 - 순이익(이윤)에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부동산업' 81.8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순이익(이윤)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5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이 42.16%로 응답함
- 제품(서비스) 가격에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8.01%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증가'했다는 비율은 28.4%로 나타남
 - 제품(서비스) 가격에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부동산업'에서 90.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품(서비스)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46.4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에서 37.24%로 나타남
-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사업체 비율은 전체 53%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영향없음'이라는 비율은 43.84%로 나타남
 -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59.8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제조업'에서 56.53%로 나타남
 - 인건비에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58.1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운수 및 창고업'(53.13%), '부동산업'(51.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1.39%) 순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액 상승이 신규채용에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 비율은 전체 82.3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감소'했다는 비율은 13.26%로 나타남
 - 신규채용에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부동산업'에서 94.95%로 가장 높았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8.29%로 가장 높았음
 - 최저임금액 상승이 근로시간에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 비율은 전체 88.1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감소'했다는 비율은 10.39%로 나타남
 - 근로시간에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96.88%로 가장 높았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8.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임금산정 방식은 최저임금 상승에도 업종과 상관없이 대체로 90% 내외로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함
 - 임금산정 방식에 '변화없음'이라는 응답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에서 98.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당/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의 전환' 응답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2c> 최저임금 상승 영향(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순이익(이윤)				제품(서비스) 가격			
	최저임금 상승 영향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C. 제조업	15 (2.80)	226 (42.16)	295 (55.04)	536 (100)	122 (22.76)	32 (5.97)	382 (71.27)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41 (5.59)	294 (40.11)	398 (54.30)	733 (100)	273 (37.24)	16 (2.18)	444 (60.57)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1 (1.56)	20 (31.25)	43 (67.19)	64 (100)	8 (12.50)	4 (6.25)	52 (81.25)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37 (5.55)	350 (52.47)	280 (41.98)	667 (100)	310 (46.48)	19 (2.85)	338 (50.67)	667 (100)
L. 부동산업	4 (2.02)	32 (16.16)	162 (81.82)	198 (100)	16 (8.08)	2 (1.01)	180 (90.91)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3.33)	28 (31.11)	59 (65.56)	90 (100)	16 (17.78)	6 (6.67)	68 (75.56)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2 (1.56)	49 (38.28)	77 (60.16)	128 (100)	15 (11.72)	5 (3.91)	108 (84.38)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2.19)	87 (27.27)	225 (70.53)	319 (100)	43 (13.48)	17 (5.33)	259 (81.19)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5.56)	23 (31.94)	45 (62.50)	72 (100)	9 (12.50)	6 (8.33)	57 (79.17)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4.18)	71 (27.00)	181 (68.82)	263 (100)	60 (22.81)	3 (1.14)	200 (76.05)	263 (100)
전체	125 (4.07)	1,180 (38.44)	1,765 (57.49)	3,070 (100)	872 (28.4)	110 (3.58)	2,088 (68.01)	3,070 (100)
전체(2022)	119 (3.89)	1,448 (47.27)	1,496 (48.84)	3,063 (100)	1,074 (35.06)	119 (3.89)	1,870 (61.05)	3,063 (100)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상승 영향	인건비				신규채용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C. 제조업		303 (56.53)	14 (2.61)	219 (40.86)	536 (100)	28 (5.22)	77 (14.37)	431 (80.41)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400 (54.57)	14 (1.91)	319 (43.52)	733 (100)	31 (4.23)	99 (13.51)	603 (82.26)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29 (45.31)	1 (1.56)	34 (53.13)	64 (100)	1 (1.56)	6 (9.38)	57 (89.06)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399 (59.82)	30 (4.50)	238 (35.68)	667 (100)	27 (4.05)	122 (18.29)	518 (77.66)	667 (100)
L. 부동산업		92 (46.46)	4 (2.02)	102 (51.52)	198 (100)	2 (1.01)	8 (4.04)	188 (94.95)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9 (43.33)	7 (7.78)	44 (48.89)	90 (100)	5 (5.56)	12 (13.33)	73 (81.11)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65 (50.78)	7 (5.47)	56 (43.75)	128 (100)	4 (3.13)	18 (14.06)	106 (82.81)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1 (50.47)	14 (4.39)	144 (45.14)	319 (100)	26 (8.15)	33 (10.34)	260 (81.5)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5 (48.61)	0 (0.00)	37 (51.39)	72 (100)	3 (4.17)	7 (9.72)	62 (86.11)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4 (39.54)	6 (2.28)	153 (58.17)	263 (100)	7 (2.66)	25 (9.51)	231 (87.83)	263 (100)
전체		1,627 (53)	97 (3.16)	1,346 (43.84)	3,070 (100)	134 (4.36)	407 (13.26)	2,529 (82.38)	3,070 (100)
전체(2022)		1,895 (61.87)	93 (3.04)	1,075 (35.1)	3,063 (100)	95 (3.1)	543 (17.73)	2,425 (79.17)	3,063 (100)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상승 영향	근로시간				임금산정 방식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변화 없음	수당/ 상여금을 기본급 으로 전환	임금 체계 변경	기타	전체
C. 제조업		4 (0.75)	43 (8.02)	489 (91.23)	536 (100)	509 (94.96)	18 (3.36)	4 (0.75)	5 (0.93)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16 (2.18)	78 (10.64)	639 (87.18)	733 (100)	693 (94.54)	20 (2.73)	5 (0.68)	15 (2.05)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0 (0.00)	2 (3.13)	62 (96.88)	64 (100)	59 (92.19)	3 (4.69)	0 (0.00)	2 (3.13)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3 (1.95)	121 (18.14)	533 (79.91)	667 (100)	621 (93.10)	25 (3.75)	4 (0.60)	17 (2.55)	667 (100)
L. 부동산업		0 (0.00)	11 (5.56)	187 (94.44)	198 (100)	189 (95.45)	5 (2.53)	4 (2.02)	0 (0.00)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00)	9 (10.00)	81 (90.00)	90 (100)	82 (91.11)	4 (4.44)	2 (2.22)	2 (2.22)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2 (1.56)	12 (9.38)	114 (89.06)	128 (100)	115 (89.84)	5 (3.91)	5 (3.91)	3 (2.34)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0.94)	16 (5.02)	300 (94.04)	319 (100)	298 (93.42)	9 (2.82)	9 (2.82)	3 (0.94)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2.78)	7 (9.72)	63 (87.50)	72 (100)	71 (98.61)	0 (0.00)	1 (1.39)	0 (0.00)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1.52)	20 (7.60)	239 (90.87)	263 (100)	248 (94.30)	7 (2.66)	4 (1.52)	4 (1.52)	263 (100)
전체		44 (1.43)	319 (10.39)	2,707 (88.18)	3,070 (100)	2,885 (93.97)	96 (3.13)	38 (1.24)	51 (1.66)	3,070 (100)
전체(2022)		53 (1.73)	460 (15.02)	2,550 (83.25)	3,063 (100)	2,800 (91.41)	165 (5.39)	68 (2.22)	30 (0.98)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6.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상황

- ‘최저임금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조사 시점 당시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1.1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참조)
 - 최저임금 근로자 총 근로자 수는 2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1년 0.69명 차이가 발생하던 것에서 ‘23년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3> 참조)

<표 3-13>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

(단위 : 명)

고용형태	'23.11.15 현재	'22.12월말	'21.12월말
정규직	0.54	0.58	0.50
비정규직	0.55	0.6	1.19
총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인원)	1.10 (0.69)	1.18 (0.74)	1.69 (0.89)

주: 위 표는 시점별로 ‘1명 이상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작성됨

- 최저임금근로자 비율(최저임금근로자 수/근로자 수)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29.32%이었고, ‘비정규직’의 경우 58.56%로 나타남 (<표 3-14> 참조)

<표 3-14> 최저임금근로자 비율(고용형태별)

(단위 : %, 명)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여자)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최저임금근로자 수 / 근로자 수)	29.32 (1,668/ 5,688)	58.56 (1,697/ 2,898)	39.19 (3,365/ 8,586)	(46.21) (2,125/ 4,599)

- 주: 1)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 [최저임금근로자 수(고용형태별) / 근로자 수(고용형태별)] × 100
 2) 위 표는 ‘1명 이상의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작성됨
 3) 2023년 11월 15일 기준

-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가 61.58%로 응답했고,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은 30.96%로 나타남 (<표 3-15a>와 <표 3-15b> 참조)
- '사업체 규모'와 '사업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체는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15a>와 <표 3-15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0인'의 사업체에서 3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은 '운수 및 창고업' 6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5a>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최저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고용하는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이어서	기타	전체
상용근로자 수 0인	65 (60.19)	16 (14.81)	38 (35.19)	1 (0.93)	3 (2.78)	123	
상용근로자 수 1~4인	293 (60.54)	70 (14.46)	156 (32.23)	4 (0.83)	18 (3.72)	541	
상용근로자 수 5~9인	92 (59.74)	21 (13.64)	44 (28.57)	6 (3.90)	7 (4.55)	17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74 (71.15)	18 (17.31)	26 (25.00)	4 (3.85)	4 (3.85)	126	
상용근로자 수 30~99인	12 (52.17)	8 (34.78)	7 (30.43)	3 (13.04)	2 (8.70)	32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9 (75.00)	1 (8.33)	3 (25.00)	0 (0.00)	2 (16.67)	15	
전체	545 (61.58)	134 (15.14)	274 (30.96)	18 (2.03)	36 (4.07)	1,007	
전체(2022)	453 (56.77)	168 (21.05)	283 (35.46)	11 (1.38)	28 (3.51)	943	
전체(2021)	549 (48.07)	189 (16.55)	494 (43.26)	27 (2.36)	101 (8.84)	1,142	

주: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15b>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최저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고용하는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이어서	기타	전체
C. 제조업		110 (69.62)	22 (13.92)	38 (24.05)	12 (7.59)	4 (2.53)	186
G. 도매 및 소매업		109 (59.24)	28 (15.22)	64 (34.78)	4 (2.17)	7 (3.80)	212
H. 운수 및 창고업		4 (40.00)	2 (20.00)	6 (60.00)	0 (0.00)	0 (0.00)	12
I. 숙박 및 음식점업		115 (57.50)	36 (18.00)	71 (35.5)	2 (1.00)	7 (3.50)	231
L. 부동산업		63 (85.14)	10 (13.51)	10 (13.51)	0 (0.00)	2 (2.70)	85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72.00)	2 (8.00)	5 (20.00)	0 (0.00)	2 (8.00)	27
P. 교육 서비스업		17 (58.62)	4 (13.79)	7 (24.14)	0 (0.00)	1 (3.45)	2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 (46.73)	21 (19.63)	42 (39.25)	0 (0.00)	7 (6.54)	1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 (54.55)	3 (13.64)	6 (27.27)	0 (0.00)	1 (4.55)	2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61.84)	6 (7.89)	25 (32.89)	0 (0.00)	5 (6.58)	83
전체		545 (61.58)	134 (15.14)	274 (30.96)	18 (2.03)	36 (4.07)	1,007

주: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7.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의 생산성

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생산성

- 2023년의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을 받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응답 사업체(74.69%)가 근로자의 생산성이 '적정한 수준임'이라고 응답하였고,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3%, '생산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0%로 나타남 (<표 3-16a>와 <표 3-16b> 참조)
-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수준임'으로 응답한 비율은 12.03%p 증가하였고, '생산성이 높은 수준임'은 2.81%p 증가,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의 비율은 5.86%p 감소함
-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근로자 생산성이 '적정한 수준임'이라는 응답은 70% 이상이고, 근로자 생산성이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이라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30~99인' 사업체에서 17.39%로 가장 높았음 (<표 3-16a> 참조)

<표 3-16a>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 근로자 생산성	생산성이 높은 수준임	적정한 수준임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	모르겠음	전체
상용근로자 수 0인	7 (6.48)	76 (70.37)	15 (13.89)	10 (9.26)	108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39 (8.06)	368 (76.03)	33 (6.82)	44 (9.09)	484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18 (11.69)	117 (75.97)	12 (7.79)	7 (4.55)	154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11 (10.58)	73 (70.19)	14 (13.46)	6 (5.77)	104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1 (4.35)	18 (78.26)	4 (17.39)	0 (0.00)	23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1 (8.33)	9 (75.00)	1 (8.33)	1 (8.33)	12 (100)
전체	77 (8.70)	661 (74.69)	79 (8.93)	68 (7.68)	885 (100)
전체(2022)	47 (5.89)	500 (62.66)	118 (14.79)	133 (16.67)	798 (100)
전체(2021)	114 (9.22)	731 (59.14)	180 (14.56)	211 (17.07)	1,236 (100)

주: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는 제외하였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응답으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부동산업'(79.73%)과 '교육 서비스업'(79.3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생산성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4.30%,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30.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16b> 참조)

<표 3-16b>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근로자 생산성	생산성이 높은 수준	적정한 수준	생산성이 낮은 수준	모르겠음	전체
C. 제조업	6 (3.8)	123 (77.85)	23 (14.56)	6 (3.80)	158 (100)	
G. 도매 및 소매업	17 (9.24)	143 (77.72)	10 (5.43)	14 (7.61)	184 (100)	
H. 운수 및 창고업	1 (10.00)	5 (50.00)	3 (30.00)	1 (10.00)	1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1 (5.50)	148 (74.00)	20 (10.00)	21 (10.5)	200 (100)	
L. 부동산업	4 (5.41)	59 (79.73)	6 (8.11)	5 (6.76)	74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8.00)	19 (76.00)	2 (8.00)	2 (8.00)	25 (100)	
P. 교육 서비스업	2 (6.90)	23 (79.31)	2 (6.90)	2 (6.90)	29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 (24.30)	66 (61.68)	7 (6.54)	8 (7.48)	107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 (13.64)	17 (77.27)	1 (4.55)	1 (4.55)	2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6.58)	58 (76.32)	5 (6.58)	8 (10.53)	76 (100)	
전체	77 (8.70)	661 (74.69)	79 (8.93)	68 (7.68)	885 (100)	

주: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는 제외하였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와 '2023년 최저임금액 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적정한 수준임'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74.69%로 높게 나타남 (<표 3-17> 참조)
 - '최저임금액 평가(2023년)'는 대체로 '적정한 수준임'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를 '생산성이 높은 수준임'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에서는 '최저임금액 평가(2023년)'를 '매우 낮은 수준이다'(46.67%)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3-17>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와 '2023년 최저임금액 평가'의 비교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 최저임금액 평가 (2023년)	생산성이 높은 수준임	적정한 수준임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	모르겠음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9 (12.16)	35 (47.30)	23 (31.08)	7 (9.46)	74 (100)
약간 높은 수준이다	12 (4.08)	232 (78.91)	32 (10.88)	18 (6.12)	294 (100)
보통이다	36 (8.07)	354 (79.37)	21 (4.71)	35 (7.85)	446 (100)
약간 낮은 수준이다	13 (23.21)	36 (64.29)	3 (5.36)	4 (7.14)	56 (100)
매우 낮은 수준이다	7 (46.67)	4 (26.67)	0 (0.00)	4 (26.67)	15 (100)
전체	77 (8.70)	661 (74.69)	79 (8.93)	68 (7.68)	885 (100)
전체(2022)	47 (5.89)	500 (62.66)	118 (14.79)	133 (16.67)	798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8.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가. 최저임금 결정요인

-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물가상승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함 (<표 3-18a>와 <표 3-18b> 참조)
- 사업체 '전체' 수준에서는 '물가상승률',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근로자 생계비',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의 순으로 응답함
 -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수'가 '9인 이하인 사업체' 규모에서는 '물가상승률' 다음으로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상용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 규모에서는 '물가상승률' 다음으로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근로자 생계비' 순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함
 - '사업체 업종별'로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은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57.78%로 가장 높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응답은 '제조업'에서 36.94%, '노동생산성'이라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2.23%로 가장 높았음

<표 3-18a>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결정요인 사업체 규모	근로자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사정	기업의 지불능력	기타	전체
상용근로자 수 0인	80 (24.17)	63 (19.03)	101 (30.51)	20 (6.04)	67 (20.24)	146 (44.11)	17 (5.14)	119 (35.95)	2 (0.60)	331
상용근로자 수 1~4인	462 (25.64)	380 (21.09)	473 (26.25)	95 (5.27)	362 (20.09)	889 (49.33)	92 (5.11)	575 (31.91)	3 (0.17)	1,802
상용근로자 수 5~9인	128 (25.10)	135 (26.47)	130 (25.49)	33 (6.47)	112 (21.96)	259 (50.78)	34 (6.67)	154 (30.20)	1 (0.20)	51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92 (27.79)	103 (31.12)	97 (29.31)	19 (5.74)	78 (23.56)	173 (52.27)	24 (7.25)	94 (28.4)	3 (0.91)	331
상용근로자 수 30~99인	24 (33.8)	25 (35.21)	10 (14.08)	6 (8.45)	12 (16.90)	42 (59.15)	4 (5.63)	21 (29.58)	2 (2.82)	71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7 (28.00)	8 (32.00)	3 (12.00)	1 (4.00)	6 (24.00)	17 (68.00)	1 (4.00)	5 (20.00)	0 (0.00)	25
전체	793 (25.83)	714 (23.26)	814 (26.51)	174 (5.67)	637 (20.75)	1,526 (49.71)	172 (5.60)	968 (31.53)	11 (0.36)	3,070
전체(2022)	872 (28.47)	870 (28.40)	906 (29.58)	267 (8.72)	484 (15.80)	1,437 (46.91)	228 (7.44)	937 (30.59)	12 (0.39)	3,063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18b>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업종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결정요인 산업대분류	근로자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기타	전체
C. 제조업	120 (22.39)	124 (23.13)	157 (29.29)	34 (6.34)	144 (26.87)	252 (47.01)	27 (5.04)	198 (36.94)	2 (0.37)	536
G. 도매 및 소매업	205 (27.97)	141 (19.24)	208 (28.38)	41 (5.59)	159 (21.69)	356 (48.57)	39 (5.32)	254 (34.65)	3 (0.41)	733
H. 운수 및 창고업	19 (29.69)	14 (21.88)	13 (20.31)	3 (4.69)	17 (26.56)	24 (37.5)	3 (4.69)	22 (34.38)	1 (1.56)	64
I. 숙박 및 음식점업	148 (22.19)	139 (20.84)	215 (32.23)	28 (4.20)	149 (22.34)	332 (49.78)	36 (5.40)	228 (34.18)	1 (0.15)	667
L. 부동산업	62 (31.31)	53 (26.77)	44 (22.22)	11 (5.56)	19 (9.60)	110 (55.56)	11 (5.56)	39 (19.70)	0 (0.00)	19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 (26.67)	19 (21.11)	16 (17.78)	5 (5.56)	17 (18.89)	52 (57.78)	9 (10.00)	24 (26.67)	0 (0.00)	90
P. 교육 서비스업	27 (21.09)	40 (31.25)	35 (27.34)	9 (7.03)	17 (13.28)	68 (53.13)	7 (5.47)	33 (25.78)	1 (0.78)	12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9 (27.90)	102 (31.97)	65 (20.38)	26 (8.15)	44 (13.79)	163 (51.10)	21 (6.58)	82 (25.71)	2 (0.63)	31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18.06)	15 (20.83)	14 (19.44)	4 (5.56)	10 (13.89)	40 (55.56)	5 (6.94)	24 (33.33)	1 (1.39)	7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6 (32.70)	67 (25.48)	47 (17.87)	13 (4.94)	61 (23.19)	129 (49.05)	14 (5.32)	64 (24.33)	0 (0.00)	263
전체	793 (25.83)	714 (23.26)	814 (26.51)	174 (5.67)	637 (20.75)	1,526 (49.71)	172 (5.60)	968 (31.53)	11 (0.36)	3,070
전체(2022)	872 (28.40)	870 (28.40)	906 (29.58)	267 (8.72)	484 (15.80)	1,437 (46.91)	228 (7.44)	937 (30.59)	12 (0.39)	3,063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나. 2023년 최저임금수준 적정성

- '2023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사업체 전체 수준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41%,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0.29%, '약간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은 8.37%로 나타남 (<표 3-19a>와 <표 3-19b> 참조)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체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최저임금액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3-19a>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상용근로자 수 0인	46 (13.90)	118 (35.65)	154 (46.53)	12 (3.63)	1 (0.30)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126 (6.99)	560 (31.08)	924 (51.28)	156 (8.66)	36 (2.00)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31 (6.08)	138 (27.06)	290 (56.86)	43 (8.43)	8 (1.57)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16 (4.83)	92 (27.79)	179 (54.08)	37 (11.18)	7 (2.11)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1 (1.41)	15 (21.13)	45 (63.38)	8 (11.27)	2 (2.82)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0 (0.00)	7 (28.00)	17 (68.00)	1 (4.00)	0 (0.00)	25 (100)
전체	220 (7.17)	930 (30.29)	1,609 (52.41)	257 (8.37)	54 (1.76)	3,070 (100)
전체(2022)	259 (8.46)	931 (30.40)	1,649 (53.84)	188 (6.14)	36 (1.18)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19b> 참조)
-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65.5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부동산업'(64.14%), '운수 및 창고업'(64.06%) 순이었음
-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이 '약간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4.11%,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9b>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C. 제조업	39 (7.28)	201 (37.50)	265 (49.44)	29 (5.41)	2 (0.37)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51 (6.96)	248 (33.83)	365 (49.80)	61 (8.32)	8 (1.09)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5 (7.81)	10 (15.63)	41 (64.06)	5 (7.81)	3 (4.69)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78 (11.69)	251 (37.63)	308 (46.18)	27 (4.05)	3 (0.45)	667 (100)
L. 부동산업	6 (3.03)	31 (15.66)	127 (64.14)	27 (13.64)	7 (3.54)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4.44)	16 (17.78)	59 (65.56)	9 (10.00)	2 (2.22)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9 (7.03)	35 (27.34)	71 (55.47)	10 (7.81)	3 (2.34)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3.45)	62 (19.44)	187 (58.62)	45 (14.11)	14 (4.39)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5.56)	20 (27.78)	39 (54.17)	7 (9.72)	2 (2.78)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 (4.94)	56 (21.29)	147 (55.89)	37 (14.07)	10 (3.80)	263 (100)
전체	220 (7.17)	930 (30.29)	1,609 (52.41)	257 (8.37)	54 (1.76)	3,070 (100)
전체(2022)	259 (8.46)	931 (30.40)	1,649 (53.84)	188 (6.14)	36 (1.18)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20> 참조)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응답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으로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업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

<표 3-20>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관계 (단위 : 개소,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	73 (33.18)	122 (13.12)	89 (5.53)	11 (4.28)	2 (3.70)	297 (9.67)
고용에 변동이 없었음	130 (59.09)	700 (75.27)	1,358 (84.4)	219 (85.21)	47 (87.04)	2,454 (79.93)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	5 (2.27)	48 (5.16)	84 (5.22)	18 (7.00)	3 (5.56)	158 (5.15)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	12 (5.45)	60 (6.45)	78 (4.85)	9 (3.50)	2 (3.70)	161 (5.24)
전체	220 (100)	930 (100)	1,609 (100)	257 (100)	54 (100)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다. 2024년 최저임금수준 적정성

-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표 3-21a>와 <표 3-21b> 참조)
-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보통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의 응답 비율은 각각 5.99%p, 4.38%p 감소했으며,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의 응답 비율은 각각 5.4%p, 4.03%p, 0.94%p 증가함
 - '2024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상용근로자 수 30~99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1a>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 2024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상용근로자 수 0인	50 (15.11)	121 (36.56)	148 (44.71)	11 (3.32)	1 (0.30)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156 (8.66)	549 (30.47)	896 (49.72)	162 (8.99)	39 (2.16)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36 (7.06)	146 (28.63)	273 (53.53)	44 (8.63)	11 (2.16)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18 (5.44)	90 (27.19)	175 (52.87)	37 (11.18)	11 (3.32)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3 (4.23)	10 (14.08)	46 (64.79)	9 (12.68)	3 (4.23)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1 (4.00)	6 (24.00)	18 (72.00)	0 (0.00)	0 (0.00)	25 (100)
전체	264 (8.60)	922 (30.03)	1,556 (50.68)	263 (8.57)	65 (2.12)	3,070 (100)
전체(2022)¹⁾	447 (14.59)	1,054 (34.41)	1,387 (45.28)	139 (4.54)	36 (1.18)	3,063 (100)

주: 1)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4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3-21b> 참조)
 - '부동산업'을 제외한 사업체에서 2024년 최저임금액 수준이 '보통이다'라는 응답 다음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1b>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2024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C 제조업	47 (8.77)	204 (38.06)	255 (47.57)	26 (4.85)	4 (0.75)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62 (8.46)	238 (32.47)	361 (49.25)	64 (8.73)	8 (1.09)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5 (7.81)	11 (17.19)	39 (60.94)	6 (9.38)	3 (4.69)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85 (12.74)	253 (37.93)	300 (44.98)	25 (3.75)	4 (0.60)	667 (100)
L 부동산업	6 (3.03)	31 (15.66)	121 (61.11)	32 (16.16)	8 (4.04)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5.56)	16 (17.78)	57 (63.33)	9 (10.00)	3 (3.33)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14 (10.94)	32 (25.00)	68 (53.13)	12 (9.38)	2 (1.56)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 (6.58)	58 (18.18)	171 (53.61)	50 (15.67)	19 (5.96)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5.56)	22 (30.56)	39 (54.17)	5 (6.94)	2 (2.78)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5.70)	57 (21.67)	145 (55.13)	34 (12.93)	12 (4.56)	263 (100)
전체	264 (8.60)	922 (30.03)	1,556 (50.68)	263 (8.57)	65 (2.12)	3,070 (100)
전체(2022) ¹⁾	447 (14.59)	1,054 (34.41)	1,387 (45.28)	139 (4.54)	36 (1.18)	3,063 (100)

주: 1)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수준과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 간의 적정성을 비교하면, (<표 3-22> 참조)

- 2022년 최저임금액 수준과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이 같은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임
 -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2>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2023년과 2024년 비교)

(단위 : 개소, %)

최저임금액 (2023년) \ 최저임금액 (2024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2 (87.27)	17 (7.73)	9 (4.09)	1 (0.45)	1 (0.45)	220 (100)
약간 높은 수준이다	66 (7.10)	774 (83.23)	85 (9.14)	3 (0.32)	2 (0.22)	930 (100)
보통이다	5 (0.31)	127 (7.89)	1,421 (88.32)	50 (3.11)	6 (0.37)	1,609 (100)
약간 낮은 수준이다	0 (0.00)	4 (1.56)	40 (15.56)	205 (79.77)	8 (3.11)	257 (100)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1.85)	0 (0.00)	1 (1.85)	4 (7.41)	48 (88.89)	54 (100)
전체	264 (8.60)	922 (30.03)	1,556 (50.68)	263 (8.57)	65 (2.12)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9.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은 '동결'(52.83%)이었고, 그 뒤를 이어 '3% 미만'(28.99%)과 '3~6% 미만'(12.31%)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3-23a>~<표 3-23c> 참조)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3-23a> 참조)
 -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동결'을 원하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서 '동결'은 2.77%p 감소, '3% 미만'은 5.26%p 증가, '6~9% 미만'은 2.52%p 감소한 변동을 보임
 - '동결'이라는 응답 비율은 '상용근로자 수 0인' 사업체에서 67.98%로 가장 많았고, '3% 미만'이라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에서 48.00%, '3~6% 미만'이라는 응답에서는 '상용근로자 수 30~99인'이 26.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3a>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수준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0인	225 (67.98)	72 (21.75)	23 (6.95)	6 (1.81)	2 (0.60)	0 (0.00)	3 (0.91)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991 (54.99)	501 (27.80)	201 (11.15)	45 (2.50)	30 (1.66)	10 (0.55)	24 (1.33)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245 (48.04)	164 (32.16)	66 (12.94)	16 (3.14)	8 (1.57)	3 (0.59)	8 (1.57)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133 (40.18)	114 (34.44)	64 (19.34)	9 (2.72)	3 (0.91)	3 (0.91)	5 (1.51)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22 (30.99)	27 (38.03)	19 (26.76)	1 (1.41)	1 (1.41)	0 (0.00)	1 (1.41)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6 (24.00)	12 (48.00)	5 (20.00)	0 (0.00)	1 (4.00)	0 (0.00)	1 (4.00)	25 (100)
전체	1,622 (52.83)	890 (28.99)	378 (12.31)	77 (2.51)	45 (1.47)	16 (0.52)	42 (1.37)	3,070 (100)
전체(2022) ¹⁾	1,703 (55.60)	727 (23.73)	385 (12.57)	154 (5.03)	54 (1.76)	16 (0.52)	24 (0.78)	3,063 (100)

주: 1)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3-23b> 참조)

-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동결'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응답이 65.67%로 가장 높았음

<표 3-23b>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업종별)

(단위 : 개소, %)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수준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C. 제조업	307 (57.28)	153 (28.54)	55 (10.26)	8 (1.49)	3 (0.56)	1 (0.19)	9 (1.68)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417 (56.89)	204 (27.83)	76 (10.37)	14 (1.91)	12 (1.64)	1 (0.14)	9 (1.23)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23 (35.94)	28 (43.75)	10 (15.63)	2 (3.13)	1 (1.56)	0 (0.00)	0 (0.00)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438 (65.67)	169 (25.34)	41 (6.15)	10 (1.50)	6 (0.90)	3 (0.45)	0 (0.00)	667 (100)
L. 부동산업	76 (38.38)	66 (33.33)	31 (15.66)	9 (4.55)	6 (3.03)	1 (0.51)	9 (4.55)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8 (31.11)	35 (38.89)	21 (23.33)	3 (3.33)	1 (1.11)	1 (1.11)	1 (1.11)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74 (57.81)	28 (21.88)	18 (14.06)	2 (1.56)	1 (0.78)	1 (0.78)	4 (3.13)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 (34.17)	105 (32.92)	70 (21.94)	17 (5.33)	7 (2.19)	5 (1.57)	6 (1.88)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0 (55.56)	18 (25.00)	10 (13.89)	1 (1.39)	1 (1.39)	1 (1.39)	1 (1.39)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0 (41.83)	84 (31.94)	46 (17.49)	11 (4.18)	7 (2.66)	2 (0.76)	3 (1.14)	263 (100)
전체	1,622 (52.83)	890 (28.99)	378 (12.31)	77 (2.51)	45 (1.47)	16 (0.52)	42 (1.37)	3,070 (100)
전체(2022) ¹⁾	1,703 (55.60)	727 (23.73)	385 (12.57)	154 (5.03)	54 (1.76)	16 (0.52)	24 (0.78)	3,063 (100)

주: 1)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표 3-23c> 참조)
 -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으로 '동결'은 2.77%p 감소, '3% 미만'은 5.26%p 증가함
 - '사업주응답'은 '동결'(62.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3% 미만'(24.16%), '3~6% 미만'(9.67%) 순임
 - '대리응답'은 '동결'(37.49%), '3% 미만'(36.65%), '3~6% 미만'(16.51%)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음

<표 3-23c>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응답자별)

(단위 : 개수, %)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수준 응답자별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사업주응답	1,177 (62.51)	455 (24.16)	182 (9.67)	30 (1.59)	18 (0.96)	6 (0.32)	15 (0.80)	1,883 (100)
대리응답	445 (37.49)	435 (36.65)	196 (16.51)	47 (3.96)	27 (2.27)	10 (0.84)	27 (2.27)	1,187 (100)
무응답 ²⁾	-	-	-	-	-	-	-	-
전체	1,622 (52.83)	890 (28.99)	378 (12.31)	77 (2.51)	45 (1.47)	16 (0.52)	42 (1.37)	3,070 (100)
전체(2022) ¹⁾	1,703 (55.60)	727 (23.73)	385 (12.57)	154 (5.03)	54 (1.76)	16 (0.52)	24 (0.78)	3,063 (100)

주: 1)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임
 2) 무응답은 사업주 설문지의 "응답자 구분"에 답변하지 않은 표본을 의미함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과 '2024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평가'를 비교하면, 2024년 최저임금액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수록 2025년 최저임금액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임 (<표 3-24> 참조)

- '2024년 최저임금액'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경우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약간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경우에는 '3~6% 미만 수준에서 인상',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경우에는 '6~9% 미만 수준에서 인상'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3-24>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2024년 최저임금액 평가와의 비교)
(단위 : 개소, %)

최저임금액 인상률 (2025년)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최저임금액 평가 (2024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37 (89.77)	18 (6.82)	8 (3.03)	0 (0.00)	0 (0.00)	1 (0.38)	0 (0.00)	264 (100)
약간 높은 수준이다	657 (71.26)	220 (23.86)	35 (3.80)	5 (0.54)	3 (0.33)	1 (0.11)	1 (0.11)	922 (100)
보통이다	703 (45.18)	569 (36.57)	223 (14.33)	25 (1.61)	17 (1.09)	5 (0.32)	14 (0.90)	1,556 (100)
약간 낮은 수준이다	19 (7.22)	75 (28.52)	100 (38.02)	32 (12.17)	16 (6.08)	6 (2.28)	15 (5.70)	263 (100)
매우 낮은 수준이다	6 (9.23)	8 (12.31)	12 (18.46)	15 (23.08)	9 (13.85)	3 (4.62)	12 (18.46)	65 (100)
전체	1,622 (52.83)	890 (28.99)	378 (12.31)	77 (2.51)	45 (1.47)	16 (0.52)	42 (1.37)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10. 복리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전체 응답 사업체(3,070개소) 중 62.93%가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으로 응답함 (<표 3-25a>와 <표 3-25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현물급여를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상용근로자 수 10~29인' 사업체에서 68.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물급여를 '숙소 제공'으로 제공한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수 30~99인' 사업체에서 28.17%, '상용근로자 수 10~29인' 사업체에서 15.41%로 나타남

<표 3-25a>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 현물급여 지급실태	숙소 제공	식사 제공 (식당운영 포함)	통근차량 운행	상품권 지급	기타	해당 없음	사업체 수
상용근로자 수 0인	3 (0.91)	171 (51.66)	4 (1.21)	5 (1.51)	17 (5.14)	151 (45.62)	331
상용근로자 수 1~4인	67 (3.72)	1126 (62.49)	23 (1.28)	41 (2.28)	133 (7.38)	603 (33.46)	1,802
상용근로자 수 5~9인	48 (9.41)	346 (67.84)	13 (2.55)	24 (4.71)	42 (8.24)	130 (25.49)	51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51 (15.41)	228 (68.88)	20 (6.04)	34 (10.27)	38 (11.48)	79 (23.87)	331
상용근로자 수 30~99인	20 (28.17)	45 (63.38)	12 (16.90)	14 (19.72)	7 (9.86)	14 (19.72)	71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5 (20.00)	16 (64.00)	4 (16.00)	3 (12.00)	1 (4.00)	8 (32.00)	25
전체	194 (6.32)	1932 (62.93)	76 (2.48)	121 (3.94)	238 (7.75)	985 (32.08)	3,070
전체(2022)	202 (6.59)	1,764 (57.59)	74 (2.42)	154 (5.03)	77 (2.51)	1,156 (37.74)	3,063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현물급여 지급 실태를 '사업체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과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5b> 참조)

- '식사제공(식당운영 포함)'이라는 응답은 '제조업(80.97%)', '숙박 및 음식점업 (75.26%)' 순으로 높은 비중이 나타남

<표 3-25b> 현물급여 지급 실태(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현물급여 지급실태	숙소 제공	식사 제공 (식당운영 포함)	통근차량 운행	상품권 지급	기타	해당 없음	사업체 수
C. 제조업		110 (20.52)	434 (80.97)	38 (7.09)	19 (3.54)	42 (7.84)	80 (14.93)	536
G. 도매 및 소매업		23 (3.14)	426 (58.12)	16 (2.18)	25 (3.41)	41 (5.59)	277 (37.79)	733
H. 운수 및 창고업		1 (1.56)	36 (56.25)	3 (4.69)	4 (6.25)	4 (6.25)	26 (40.63)	64
I. 숙박 및 음식점업		30 (4.5)	502 (75.26)	9 (1.35)	10 (1.5)	54 (8.1)	145 (21.74)	667
L. 부동산업		3 (1.52)	56 (28.28)	0 (0.00)	6 (3.03)	10 (5.05)	132 (66.67)	19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11)	48 (53.33)	1 (1.11)	8 (8.89)	10 (11.11)	33 (36.67)	90
P. 교육 서비스업		3 (2.34)	56 (43.75)	1 (0.78)	11 (8.59)	12 (9.38)	59 (46.09)	12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63)	188 (58.93)	2 (0.63)	32 (10.03)	37 (11.6)	106 (33.23)	31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2.78)	40 (55.56)	3 (4.17)	2 (2.78)	5 (6.94)	31 (43.06)	7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 (7.22)	146 (55.51)	3 (1.14)	4 (1.52)	23 (8.75)	96 (36.5)	263
전체		194 (6.32)	1,932 (62.93)	76 (2.48)	121 (3.94)	238 (7.75)	985 (32.08)	3,070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숙소 제공은 전체 응답 사업체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295개소)의 35.59%가 제공하고 있었음 (<표 3-26a>와 <표 3-26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숙소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26a> 참조)

- '사업체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숙소를 제공하는 비율이 79.81%로 가장 높음 (<표 3-26b> 참조)

<표 3-26a>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사업체 규모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없음		전체
			소계		
상용근로자 수 0인	1 (3.57)	27 (96.43)	28 (100)	303	331
상용근로자 수 1~4인	26 (16.77)	129 (83.23)	155 (100)	1,647	1,802
상용근로자 수 5~9인	29 (55.77)	23 (44.23)	52 (100)	458	51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38 (80.85)	9 (19.15)	47 (100)	284	331
상용근로자 수 30~99인	9 (81.82)	2 (18.18)	11 (100)	60	71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2 (100)	0 (0.00)	2 (100)	23	25
전체	105 (35.59)	190 (64.41)	295 (100)	2,775	3,070
전체(2022)	114 (33.14)	230 (66.86)	344 (100)	2,719	3,063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26b>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업종별)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소계	외국인 근로자 없음	전체
C. 제조업		83 (79.81)	21 (20.19)	104 (100)	432	536
G. 도매 및 소매업		9 (13.24)	59 (86.76)	68 (100)	665	733
H. 운수 및 창고업		0 (0.00)	1 (100)	1 (100)	63	64
I. 숙박 및 음식점업		11 (14.86)	63 (85.14)	74 (100)	593	667
L. 부동산업		0 (0.00)	6 (100)	6 (100)	192	19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00)	0 (0.00)	0 (0.00)	90	90
P. 교육 서비스업		0 (0.00)	5 (100)	5 (100)	123	12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00)	14 (100)	14 (100)	305	31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 (0.00)	3 (100)	3 (100)	69	7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0.00)	18 (90.00)	20 (100)	243	263
전체		105 (35.59)	190 (64.41)	295 (100)	2,775	3,07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11.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61.14%였고, 이어서 ‘사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26%임 (<표 3-27a>와 <표 3-27b> 참조)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 30~99인’ 사업체에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01%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사업체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0%로 다른 사업체 규모에 비하여 높았음 (<표 3-27a> 참조)
 - ‘사업체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89%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높았음 (<표 3-27b> 참조)

<표 3-27a>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 규모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0인	207 (62.54)	72 (21.75)	22 (6.65)	5 (1.51)	14 (4.23)	10 (3.02)	1 (0.30)	331 (100)
상용근로자 수 1~4인	1,111 (61.65)	405 (22.48)	107 (5.94)	49 (2.72)	86 (4.77)	44 (2.44)	0 (0.00)	1,802 (100)
상용근로자 수 5~9인	307 (60.20)	125 (24.51)	36 (7.06)	5 (0.98)	28 (5.49)	8 (1.57)	1 (0.20)	510 (100)
상용근로자 수 10~29인	192 (58.01)	91 (27.49)	11 (3.32)	11 (3.32)	18 (5.44)	7 (2.11)	1 (0.30)	331 (100)
상용근로자 수 30~99인	49 (69.01)	12 (16.90)	2 (2.82)	2 (2.82)	5 (7.04)	1 (1.41)	0 (0.00)	71 (100)
상용근로자 수 100~299인	11 (44.00)	9 (36.00)	1 (4.00)	0 (0.00)	3 (12.00)	1 (4.00)	0 (0.00)	25 (100)
전체	1,877 (61.14)	714 (23.26)	179 (5.83)	72 (2.35)	154 (5.02)	71 (2.31)	3 (0.10)	3,070 (100)
전체(2022)	1,907 (62.26)	675 (22.04)	162 (5.29)	70 (2.29)	210 (6.86)	29 (0.95)	10 (0.33)	3,06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3-27b>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업종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산업대분류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C. 제조업	306 (57.09)	142 (26.49)	37 (6.90)	11 (2.05)	26 (4.85)	14 (2.61)	0 (0.00)	536 (100)
G. 도매 및 소매업	433 (59.07)	185 (25.24)	37 (5.05)	19 (2.59)	38 (5.18)	19 (2.59)	2 (0.27)	733 (100)
H. 운수 및 창고업	40 (62.50)	16 (25.00)	2 (3.13)	4 (6.25)	1 (1.56)	1 (1.56)	0 (0.00)	64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422 (63.27)	136 (20.39)	45 (6.75)	7 (1.05)	39 (5.85)	18 (2.70)	0 (0.00)	667 (100)
L. 부동산업	103 (52.02)	56 (28.28)	13 (6.57)	8 (4.04)	11 (5.56)	6 (3.03)	1 (0.51)	198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2 (57.78)	26 (28.89)	2 (2.22)	3 (3.33)	4 (4.44)	3 (3.33)	0 (0.00)	90 (100)
P. 교육 서비스업	75 (58.59)	35 (27.34)	5 (3.91)	5 (3.91)	6 (4.69)	2 (1.56)	0 (0.00)	128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1 (72.41)	51 (15.99)	15 (4.70)	4 (1.25)	14 (4.39)	4 (1.25)	0 (0.00)	319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6 (63.89)	12 (16.67)	7 (9.72)	2 (2.78)	4 (5.56)	1 (1.39)	0 (0.00)	72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9 (64.26)	55 (20.91)	16 (6.08)	9 (3.42)	11 (4.18)	3 (1.14)	0 (0.00)	263 (100)
전체	1,877 (61.14)	714 (23.26)	179 (5.83)	72 (2.35)	154 (5.02)	71 (2.31)	3 (0.10)	3,0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IV.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응답 근로자 특성

가. 개인별 특성

- 응답 근로자(5,583명)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976명(35.39%), 여성이 3,607명(64.61%)임 (<표 4-1a> 참조)
- '응답자의 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0세 미만'(23.14%), '40~50세 미만'(21.39%), '30~40세 미만'(19.51%), '20~30세 미만'(17.84%), '60세 이상'(17.50%), '20세 미만'(0.63%) 순임 (<표 4-1a>~<표 4-1c> 참조)
 - '응답자의 연령 구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1a> 참조)
 -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23.84%), '30~40세 미만'(21.41%) 순으로 많았음
 - '여성'의 경우 '50~60세 미만'(25.81%), '40~50세 미만'(23.37%) 순으로 많았음
 - '응답자의 연령 구성'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50.42%), '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42.81%), '대학 (전문대 포함) 재학'(6.77%) 순으로 구성됨 (<표 4-1b> 참조)
 - '20세 미만'의 경우 '고졸 이하'(40.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37.14%),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22.86%) 순으로 구성됨
 -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의 경우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순으로 구성됨
 - '50~60세 미만', '60세 이상'에서는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순으로 구성됨
 - '응답자의 연령 구성'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3,844명(68.85%), '비정규직'은 1,739명(31.15%)으로 응답됨 (<표 4-1c> 참조)
 - 응답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은 2022년 대비 3.38%p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비중은 동기 대비 3.38%p 감소함

- '20세 미만'에서는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반면, 나머지 응답 연령에서는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큼

<표 4-1a>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성별)

(단위 : 명, %)

연령	성별		남		여		전체		전체(2022)	
	남	여	명	%	명	%	명	%	명	%
20세 미만	6	(17.14)	29	(82.86)	35	(100)	39	(100)		
	(0.30)		(0.80)		(0.63)		(0.68)			
20~30세 미만	364	(36.55)	632	(63.45)	996	(100)	1,115	(100)		
	(18.42)		(17.52)		(17.84)		(19.52)			
30~40세 미만	423	(38.84)	666	(61.16)	1,089	(100)	943	(100)		
	(21.41)		(18.46)		(19.51)		(16.51)			
40~50세 미만	351	(29.4)	843	(70.60)	1,194	(100)	1,290	(100)		
	(17.76)		(23.37)		(21.39)		(22.58)			
50~60세 미만	361	(27.94)	931	(72.06)	1,292	(100)	1,384	(100)		
	(18.27)		(25.81)		(23.14)		(24.23)			
60세 이상	471	(48.21)	506	(51.79)	977	(100)	940	(100)		
	(23.84)		(14.03)		(17.50)		(16.45)			
전체	1,976	(35.39)	3,607	(64.61)	5,583	(100)	-			
	(100)		(100)		(100)					
전체(2022)	1,993	(34.9)	3,718	(65.1)	-		5,711	(100)		

<표 4-1b>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학력별)

(단위 : 명, %)

연령 \ 학력별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20세 미만	14 (40.00)	13 (37.14)	8 (22.86)	35 (100)
20~30세 미만	293 (29.42)	202 (20.28)	501 (50.30)	996 (100)
30~40세 미만	305 (28.01)	41 (3.76)	743 (68.23)	1,089 (100)
40~50세 미만	477 (39.95)	59 (4.94)	658 (55.11)	1,194 (100)
50~60세 미만	883 (68.34)	45 (3.48)	364 (28.17)	1,292 (100)
60세 이상	843 (86.28)	18 (1.84)	116 (11.87)	977 (100)
전체	2,815 (50.42)	378 (6.77)	2,390 (42.81)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1c>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연령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세 미만	10 (28.57)	25 (71.43)	35 (100)
20~30세 미만	582 (58.43)	414 (41.57)	996 (100)
30~40세 미만	877 (80.53)	212 (19.47)	1,089 (100)
40~50세 미만	888 (74.37)	306 (25.63)	1,194 (100)
50~60세 미만	941 (72.83)	351 (27.17)	1,292 (100)
60세 이상	546 (55.89)	431 (44.11)	977 (100)
전체	3,844 (68.85)	1,739 (31.15)	5,583 (100)
전체(2022)	3,739 (65.47)	1,972 (34.53)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의 '학력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순으로 구성됨 (<표 4-2a> 참조)

<표 4-2a> 학력분포(성별)

(단위 : 명, %)

학력 \ 성별	남	여	전체
고졸 이하	1,104 (55.87)	1,711 (47.44)	2,815 (50.42)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131 (6.63)	247 (6.85)	378 (6.77)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741 (37.50)	1,649 (45.72)	2,390 (42.81)
전체	1,976 (100)	3,607 (10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학력분포'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2b> 참조)
 - '정규직' 근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49.90%), '고졸 이하'(45.76%),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4.34%) 순으로 구성됨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졸 이하'(60.72%),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27.14%),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12.13%) 순으로 구성됨

<표 4-2b> 학력분포(고용형태별)

(단위 : 명, %)

학력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고졸 이하	1,759 (45.76)	1,056 (60.72)	2,815 (50.42)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167 (4.34)	211 (12.13)	378 (6.77)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918 (49.90)	472 (27.14)	2,390 (42.81)
전체	3,844 (100)	1,739 (10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를 '근속연수'별로 살펴보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30.38%), '2~5년 미만'(26.37%), '1~2년 미만'(19.63%), '6개월 이상~1년 미만'(14.22%), '6개월 미만'(9.40%)인 순으로 구성됨 (<표 4-3a>~<표 4-3d> 참조)
 - '성별'로 살펴보다도 동일한 순서로 구성됨 (<표 4-3a> 참조)
 -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4-3b> 참조)
 - '20세 미만'에서는 '6개월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3%로 가장 많았음
 - '20~29세'에서는 '1~2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1%로 가장 많았음
 - '30~39세'에서는 '2~5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34.16%로 가장 많았음
 - '40~49세'(36.01%), '50~59세'(41.25%), '60세 이상'(44.11%)은 모두 '5년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음

<표 4-3a> 근속연수(성별)

(단위 : 명, %)

근속연수	성별		
	남	여	전체
6개월 미만	149 (7.54)	376 (10.42)	525 (9.40)
6개월 이상~1년 미만	278 (14.07)	516 (14.31)	794 (14.22)
1~2년 미만	366 (18.52)	730 (20.24)	1,096 (19.63)
2~5년 미만	546 (27.63)	926 (25.67)	1,472 (26.37)
5년 이상	637 (32.24)	1,059 (29.36)	1,696 (30.38)
전체	1,976 (100)	3,607 (10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3b> 근속연수(연령별)

(단위 : 명, %)

근속연수	연령						전체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개월 미만	18 (51.43)	192 (19.28)	84 (7.71)	84 (7.04)	84 (6.50)	63 (6.45)	525 (9.40)
6개월 이상~1년 미만	8 (22.86)	283 (28.41)	153 (14.05)	124 (10.39)	128 (9.91)	98 (10.03)	794 (14.22)
1~2년 미만	2 (5.71)	286 (28.71)	229 (21.03)	220 (18.43)	214 (16.56)	145 (14.84)	1,096 (19.63)
2~5년 미만	3 (8.57)	188 (18.88)	372 (34.16)	336 (28.14)	333 (25.77)	240 (24.56)	1,472 (26.37)
5년 이상	4 (11.43)	47 (4.72)	251 (23.05)	430 (36.01)	533 (41.25)	431 (44.11)	1,696 (30.38)
전체	35 (100)	996 (100)	1,089 (100)	1,194 (100)	1,292 (100)	977 (10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의 '근속연수'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4-3c> 참조)
 - '고졸 이하'와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는 '5년 이상', '2~5년 미만', '1~2년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6개월 미만' 순으로 많았음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의 학력에서는 '6개월 미만'(24.87%), '6개월 이상~1년 미만'(23.54%), '1~2년 미만'(18.78%), '5년 이상'(17.72%), '2~5년 미만'(15.08%) 순으로 많았음
- 응답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3d> 참조)
 - 응답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상'(35.59%), '2~5년 미만'(29.21%), '1~2년 미만'(18.63%), '6개월 이상~1년 미만'(11.06%), '6개월 미만'(5.52%) 순이었음
 - 응답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가 '1~2년 미만'(21.85%), '6개월 이상~1년 미만'(21.22%), '2~5년 미만'(20.07%), '5년 이상'(18.86%), '6개월 미만'(18.00%) 순이었음

<표 4-3c> 근속연수(학력별)

(단위 : 명, %)

근속연수 \ 학력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6개월 미만	248 (8.81)	94 (24.87)	183 (7.66)	525 (9.40)
6개월 이상~1년 미만	381 (13.53)	89 (23.54)	324 (13.56)	794 (14.22)
1~2년 미만	554 (19.68)	71 (18.78)	471 (19.71)	1,096 (19.63)
2~5년 미만	710 (25.22)	57 (15.08)	705 (29.50)	1,472 (26.37)
5년 이상	922 (32.75)	67 (17.72)	707 (29.58)	1,696 (30.38)
전체	2,815 (100)	378 (100)	2,390 (10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3d> 근속연수(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근속연수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6개월 미만	212 (5.52)	313 (18.00)	525 (9.40)
6개월 이상~1년 미만	425 (11.06)	369 (21.22)	794 (14.22)
1~2년 미만	716 (18.63)	380 (21.85)	1,096 (19.63)
2~5년 미만	1,123 (29.21)	349 (20.07)	1,472 (26.37)
5년 이상	1,368 (35.59)	328 (18.86)	1,696 (30.38)
전체	3,844 (100)	1,739 (10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응답근로자의 77.43%,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응답근로자의 84.78%,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응답근로자의 83.09%임 (<표 4-4a> ~ <표 4-4e> 참조)
 - 응답근로자가 각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표 4-4a> 참조)
 - '성별'로 비교할 때, '국민연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 비율이 높은 반면,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남성'의 가입 비율이 더 높았음 (<표 4-4a> 참조)
 -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연령별'로 보면, (<표 4-4b> 참조)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세 미만'(37.14%)이 가장 낮으며, '60세 이상'이 42.17%로 두 번째로 낮고 그 이외의 연령층에선 70% 이상의 가입률을 보임
 -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각각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표 4-4a> 사회보험 가입 여부(성별)

(단위 : 명, %)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남	1,501 (75.96)	475 (24.04)	1,729 (87.50)	247 (12.50)	1,665 (84.26)	311 (15.74)
여	2,822 (78.24)	785 (21.76)	3,004 (83.28)	603 (16.72)	2,974 (82.45)	633 (17.55)
전체	4,323 (77.43)	1,260 (22.57)	4,733 (84.78)	850 (15.22)	4,639 (83.09)	944 (16.91)
전체(2022)	4,193 (73.43)	1,517 (26.57)	4,557 (79.81)	1,153 (20.19)	4,486 (78.61)	1,221 (21.39)

주: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4b> 사회보험 가입 여부(연령별)

(단위 : 명, %)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20세 미만	13 (37.14)	22 (62.86)	14 (40.00)	21 (60.00)	14 (40.00)	21 (60.00)
20~29세	730 (73.29)	266 (26.71)	738 (74.10)	258 (25.90)	743 (74.6)	253 (25.40)
30~39세	981 (90.08)	108 (9.92)	997 (91.55)	92 (8.45)	980 (89.99)	109 (10.01)
40~49세	1,081 (90.54)	113 (9.46)	1,087 (91.04)	107 (8.96)	1,082 (90.62)	112 (9.38)
50~59세	1,106 (85.60)	186 (14.40)	1,118 (86.53)	174 (13.47)	1,114 (86.22)	178 (13.78)
60세 이상	412 (42.17)	565 (57.83)	779 (79.73)	198 (20.27)	706 (72.26)	271 (27.74)
전체	4,323 (77.43)	1,260 (22.57)	4,733 (84.78)	850 (15.22)	4,639 (83.09)	944 (16.91)
전체(2022)	4,193 (73.43)	1,517 (26.57)	4,557 (79.81)	1,153 (20.19)	4,486 (78.61)	1,221 (21.39)

주: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각 '사회보험'에서 모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음 (<표 4-4c> 참조)
- 응답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4d> 참조)
 - '정규직'은 모든 사회보험에서 90% 이상의 가입률을 보임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은 47.27%,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은 55.38%, '고용보험'은 56.58% 수준의 가입률을 보임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4e> 참조)
 -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36.10%,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가입률은 40.98%, '고용보험' 가입률은 43.46%임
 -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25.49%,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가입률은 27.4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45%임
 -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15%,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가입률은 81.93%, '고용보험' 가입률은 81.62%임

<표 4-4c> 사회보험 가입 여부(학력별)

(단위 : 명, %)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고졸 이하	1,992 (70.76)	823 (29.24)	2,324 (82.56)	491 (17.44)	2,262 (80.36)	553 (19.64)
대학 (전문대 포함) 재학	198 (52.38)	180 (47.62)	212 (56.08)	166 (43.92)	224 (59.26)	154 (40.74)
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2,133 (89.25)	257 (10.75)	2,197 (91.92)	193 (8.08)	2,153 (90.08)	237 (9.92)
전체	4,323 (77.43)	1,260 (22.57)	4,733 (84.78)	850 (15.22)	4,639 (83.09)	944 (16.91)
전체(2022)	4,191 (73.44)	1,516 (26.56)	4,555 (79.81)	1,152 (20.19)	4,484 (78.61)	1,220 (21.39)

주: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4d> 사회보험 가입 여부(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정규직	3,501 (91.08)	343 (8.92)	3,770 (98.07)	74 (1.93)	3,655 (95.08)	189 (4.92)
비정규직	822 (47.27)	917 (52.73)	963 (55.38)	776 (44.62)	984 (56.58)	755 (43.42)
전체	4,323 (77.43)	1,260 (22.57)	4,733 (84.78)	850 (15.22)	4,639 (83.09)	944 (16.91)
전체(2022)	4,193 (73.43)	1,517 (26.57)	4,557 (79.81)	1,153 (20.19)	4,486 (78.61)	1,221 (21.39)

주: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4e> 사회보험 가입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비정규직	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시간제근로자	348 (36.10)	616 (63.90)	395 (40.98)	569 (59.02)	419 (43.46)	545 (56.54)
일용근로자	26 (25.49)	76 (74.51)	28 (27.45)	74 (72.55)	28 (27.45)	74 (72.55)
기간제근로자	445 (68.15)	208 (31.85)	535 (81.93)	118 (18.07)	533 (81.62)	120 (18.38)
기타	3 (15.00)	17 (85.00)	5 (25.00)	15 (75.00)	4 (20.00)	16 (80.00)
전체	822 (47.27)	917 (52.73)	963 (55.38)	776 (44.62)	984 (56.58)	755 (43.42)
전체(2022)	812 (41.24)	1,157 (58.76)	962 (48.83)	1,008 (51.17)	990 (50.28)	979 (49.72)

주: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나. 근로자 가구 특성

- 2023년 가구원 수의 분포를 보면, '3인' 가구(26.5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4인' 가구(25.74%), '2인' 가구(24.54%), '1인' 가구(18.91%), '5인 이상' 가구(4.26%) 순으로 많았음 (<표 4-5> 참조)
 - 응답근로자의 '가구원 수'를 전년(2022)과 비교할 때, '1인', '2인', '3인'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반면, '4인', '5인 이상'이라는 응답은 그 비중이 감소함 (<표 4-5> 참조)
- 각 '성별'에서 차지하는 '가구원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4-5> 참조)
 - '남성' 응답자의 경우 '2인', '3인', '1인', '4인', '5인 이상' 순이었음
 - '여성' 응답자의 경우 '4인', '3인', '2인', '1인', '5인 이상' 순이었음

<표 4-5> 가구원 수(성별)

(단위 : 명, %)

근로자 가구특성 성별	가구원 수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남	487 (24.65)	539 (27.28)	503 (25.46)	395 (19.99)	52 (2.63)	1,976 (100)
여	569 (15.77)	831 (23.04)	979 (27.14)	1,042 (28.89)	186 (5.16)	3,607 (100)
전체	1,056 (18.91)	1,370 (24.54)	1,482 (26.54)	1,437 (25.74)	238 (4.26)	5,583 (100)
전체 (2022)	826 (14.46)	1,390 (24.34)	1,394 (24.41)	1,807 (31.64)	294 (5.15)	5,711 (100)

- 주: 1) 본인 포함
 2)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으로 하여 백분율을 얻음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1인'인 경우 31.08%, '2인'인 경우 52.12%, '3인 이상'인 경우는 16.80%임 (<표 4-6a>와 <표 4-6b> 참조)
 - 전년(2022)과 비교할 때, '1인'의 경우는 전체 응답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2인'과 '3인 이상'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감소함 (<표 4-6a> 참조)
 - '성별'로 살펴보면, (<표 4-6a> 참조)
 - '남성' 응답자의 경우 '1인'(46.36%), '2인'(40.33%), '3인 이상'(13.31%) 순임
 - '여성' 응답자의 경우 '2인'(58.58%), '1인'(22.71%), '3인 이상'(18.71%) 순임
 -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에서 모두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가 '2인'인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6b> 참조)

<표 4-6a>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성별)

(단위 : 명, %)

성별	1인	2인	3인 이상	전체
남	916 (46.36)	797 (40.33)	263 (13.31)	1,976 (100)
여	819 (22.71)	2,113 (58.58)	675 (18.71)	3,607 (100)
전체	1,735 (31.08)	2,910 (52.12)	938 (16.80)	5,583 (100)
전체 (2022)	1,535 (26.88)	3,015 (52.79)	1,161 (20.33)	5,711 (100)

주: 1)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는 2023년 10월 기준
 2)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에서 '0인'으로 기입한 항목은 제외
 3)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6b>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이상	전체
가구원 수				
1인	1,056 (100)	0 (0.00)	0 (0.00)	1,056 (100)
2인	407 (29.71)	963 (70.29)	0 (0.00)	1,370 (100)
3인	193 (13.02)	942 (63.56)	347 (23.41)	1,482 (100)
4인	71 (4.94)	889 (61.86)	477 (33.19)	1,437 (100)
5인 이상	8 (3.36)	116 (48.74)	114 (47.90)	238 (100)
전체	1,735 (31.08)	2,910 (52.12)	938 (16.80)	5,583 (100)
전체(2022)	1,535 (26.9)	3,015 (52.83)	1,157 (20.27)	5,707 (100)

주: 1)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는 2023년 10월 기준, 행의 가구원 수는 2023년 11월 기준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3) 가구원 수('23.11월)와 가구원 중 소득자 수('23.10월)의 조사기준시점이 달라서 가구원 수보다 소득자 수 값이 더 크게 조사될 수 있음

○ 응답근로자의 '가구 월 총소득'을 살펴보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6.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이 23.27%, '400~500만원 미만'이 17.36%였음 (<표 4-7a>~<표 4-7f> 참조)

- 응답근로자의 각 '가구 월 총소득'을 전년(2022년)과 비교할 때, '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구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음 (<표 4-7a> 참조)

- '가구 월 총소득'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7a> 참조)

-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가구 월 총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3.50%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4.95%로 그 뒤를 이음
- '여성' 응답자의 경우, 가구 월 총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2.75%로 가장 많았으며 '400~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8.38%로 그 뒤를 이음

<표 4-7a> 가구 월 총소득(성별)

(단위 : 명, %)

가구 월 총소득	성별		전체	전체(2022)
	남	여		
80만원 미만	19 (0.96)	30 (0.83)	49 (0.88)	46 (0.81)
80~100만원 미만	21 (1.06)	38 (1.05)	59 (1.06)	59 (1.03)
100~150만원 미만	48 (2.43)	84 (2.33)	132 (2.36)	166 (2.91)
150~200만원 미만	118 (5.97)	158 (4.38)	276 (4.94)	421 (7.37)
200~300만원 미만	662 (33.50)	637 (17.66)	1,299 (23.27)	1,183 (20.71)
300~400만원 미만	309 (15.64)	455 (12.61)	764 (13.68)	851 (14.90)
400~500만원 미만	306 (15.49)	663 (18.38)	969 (17.36)	1,072 (18.77)
500만원 이상	493 (24.95)	1,542 (42.75)	2,035 (36.45)	1,913 (33.50)
전체	1,976 (100)	3,607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소득은 2023년 10월 기준, 총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7b> 참조)

- '20세 미만'의 응답자의 경우는 가구 월 총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7.14%로 가장 많았음
- '20~30세 미만'의 응답자의 경우는 가구 월 총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2.07%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2.69%와 13.35%로 그 뒤를 이음
- '30~40세 미만'의 응답자는 가구 월 총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7.19%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8.01%와 18.18%로 그 뒤를 이음
- '40~50세 미만'의 응답자는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3.22%로 가장 많았으며, '400~5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1.94%와 17.34%로 그 뒤를 이음

- '50~60세 미만'의 응답자는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2.11%로 가장 많았으며, '400~5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18.81%와 17.41%로 그 뒤를 이음
- '60세 이상'의 응답자는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19%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18.83%와 14.12%로 그 뒤를 이음

<표 4-7b> 가구 월 총소득(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가구 월 총소득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전체(2022)
80만원 미만	7 (20.00)	19 (1.91)	1 (0.09)	3 (0.25)	6 (0.46)	13 (1.33)	49 (0.88)	46 (0.81)
80~100만원 미만	3 (8.57)	15 (1.51)	11 (1.01)	7 (0.59)	4 (0.31)	19 (1.94)	59 (1.06)	59 (1.03)
100~150만원 미만	0 (0.00)	41 (4.12)	12 (1.10)	10 (0.84)	12 (0.93)	57 (5.83)	132 (2.36)	166 (2.91)
150~200만원 미만	2 (5.71)	66 (6.63)	30 (2.75)	28 (2.35)	45 (3.48)	105 (10.75)	276 (4.94)	421 (7.37)
200~300만원 미만	2 (5.71)	226 (22.69)	305 (28.01)	207 (17.34)	225 (17.41)	334 (34.19)	1,299 (23.27)	1,183 (20.71)
300~400만원 미만	2 (5.71)	77 (7.73)	127 (11.66)	161 (13.48)	213 (16.49)	184 (18.83)	764 (13.68)	851 (14.90)
400~500만원 미만	6 (17.14)	133 (13.35)	198 (18.18)	262 (21.94)	243 (18.81)	127 (13.00)	969 (17.36)	1,072 (18.77)
500만원 이상	13 (37.14)	419 (42.07)	405 (37.19)	516 (43.22)	544 (42.11)	138 (14.12)	2,035 (36.45)	1,913 (33.50)
전체	35 (100)	996 (100)	1,089 (100)	1,194 (100)	1,292 (100)	977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소득은 2023년 10월 기준, 총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5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가장 많았음 (<표 4-7c> 참조)
- '고졸 이하'와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에서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월 총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반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에서는 '400~500만원 미만'이었음

<표 4-7c> 가구 월 총소득(학력별)

(단위 : 명, %)

학력 가구 월 총소득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전체(2022)
80만원 미만	22 (0.78)	22 (5.82)	5 (0.21)	49 (0.88)	46 (0.80)
80~100만원 미만	38 (1.35)	10 (2.65)	11 (0.46)	59 (1.06)	59 (1.03)
100~150만원 미만	89 (3.16)	20 (5.29)	23 (0.96)	132 (2.36)	166 (2.91)
150~200만원 미만	195 (6.93)	15 (3.97)	66 (2.76)	276 (4.94)	421 (7.38)
200~300만원 미만	715 (25.40)	45 (11.90)	539 (22.55)	1,299 (23.27)	1,181 (20.70)
300~400만원 미만	508 (18.05)	30 (7.94)	226 (9.46)	764 (13.68)	851 (14.90)
400~500만원 미만	499 (17.73)	75 (19.84)	395 (16.53)	969 (17.36)	1,072 (18.78)
500만원 이상	749 (26.61)	161 (42.59)	1,125 (47.07)	2,035 (36.45)	1,912 (33.50)
전체	2,815 (100)	378 (100)	2,390 (100)	5,583 (100)	5,708 (100)

주: 1) 월 총소득은 2023년 10월 기준, 총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7d> 참조)

- '정규직'에서 해당 '가구 월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규직'에서 해당 '가구 월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경우는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었음
- '비정규직'에서 해당 '가구 월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규직'에서 해당 '가구 월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경우는 '300~40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80만원 미만'이었음

<표 4-7d> 가구 월 총소득(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가구 월 총소득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2022)
80만원 미만	6 (0.16)	43 (2.47)	49 (0.88)	46 (0.81)
80~100만원 미만	10 (0.26)	49 (2.82)	59 (1.06)	59 (1.03)
100~150만원 미만	28 (0.73)	104 (5.98)	132 (2.36)	166 (2.91)
150~200만원 미만	121 (3.15)	155 (8.91)	276 (4.94)	421 (7.37)
200~300만원 미만	978 (25.44)	321 (18.46)	1,299 (23.27)	1183 (20.71)
300~400만원 미만	473 (12.30)	291 (16.73)	764 (13.68)	851 (14.90)
400~500만원 미만	672 (17.48)	297 (17.08)	969 (17.36)	1,072 (18.77)
500만원 이상	1,556 (40.48)	479 (27.54)	2,035 (36.45)	1,913 (33.50)
전체	3,844 (100)	1,739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소득은 2023년 10월 기준, 총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7e> 참조)
 - '1인'(61.36%), '2인'(26.64%)가구의 경우 '200~300만 원 미만'의 소득인 가구가 가장 비중이 높음
 - '3인'(48.72%), '4인'(62.42%), '5인 이상'(63.87%)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가장 비중이 높음
-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표 4-7f> 참조)
 - '1인'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가구가 61.96%로 가장 많음
 - '2인'(42.47%)과 '3인 이상'(84.22%)의 경우,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

<표 4-7e> 가구 월 총소득(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가구원 수 가구 월 총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전체 (2022)
80만원 미만	40 (3.79)	6 (0.44)	2 (0.13)	1 (0.07)	0 (0.00)	49 (0.88)	46 (0.81)
80~100만원 미만	49 (4.64)	4 (0.29)	6 (0.40)	0 (0.00)	0 (0.00)	59 (1.06)	59 (1.03)
100~150만원 미만	80 (7.58)	41 (2.99)	7 (0.47)	3 (0.21)	1 (0.42)	132 (2.36)	166 (2.91)
150~200만원 미만	161 (15.25)	78 (5.69)	23 (1.55)	11 (0.77)	3 (1.26)	276 (4.94)	421 (7.37)
200~300만원 미만	648 (61.36)	365 (26.64)	181 (12.21)	89 (6.19)	16 (6.72)	1,299 (23.27)	1,183 (0.02)
300~400만원 미만	69 (6.53)	308 (22.48)	204 (13.77)	161 (11.20)	22 (9.24)	764 (13.68)	851 (14.90)
400~500만원 미만	5 (0.47)	308 (22.48)	337 (22.74)	275 (19.14)	44 (18.49)	969 (17.36)	1,072 (18.77)
500만원 이상	4 (0.38)	260 (18.98)	722 (48.72)	897 (62.42)	152 (63.87)	2,035 (36.45)	1,913 (33.50)
전체	1,056 (100)	1,370 (100)	1,482 (100)	1,437 (100)	238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소득은 2023년 10월 기준, 총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7f> 가구 월 총소득(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 가구 월 총소득	1인	2인	3인 이상	전체	전체(2022)
80만원 미만	47 (2.71)	1 (0.03)	1 (0.11)	49 (0.88)	46 (0.81)
80~100만원 미만	56 (3.23)	2 (0.07)	1 (0.11)	59 (1.06)	59 (1.03)
100~150만원 미만	112 (6.46)	18 (0.62)	2 (0.21)	132 (2.36)	164 (2.87)
150~200만원 미만	248 (14.29)	22 (0.76)	6 (0.64)	276 (4.94)	421 (7.38)
200~300만원 미만	1,075 (61.96)	192 (6.60)	32 (3.41)	1,299 (23.27)	1,183 (20.73)
300~400만원 미만	165 (9.51)	563 (19.35)	36 (3.84)	764 (13.68)	851 (14.91)
400~500만원 미만	23 (1.33)	876 (30.10)	70 (7.46)	969 (17.36)	1,071 (18.77)
500만원 이상	9 (0.52)	1,236 (42.47)	790 (84.22)	2,035 (36.45)	1,912 (33.50)
전체	1,735 (100)	2,910 (100)	938 (100)	5,583 (100)	5,707 (100)

주: 1) 월 총소득은 2023년 10월 기준, 총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의 '가구 월 총지출'을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26.06%), '300~400만원 미만'(20.67%), '150~200만원 미만'(15.26%) 순으로 많았음 (<표 4-8a>~<표 4-8f> 참조)

- '150~2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전체 응답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함
- 나머지 '월 총 가계지출액' 구간에 해당하는 응답근로자들은 그 비중이 전년 대비 같거나 감소함

- '가구 월 지출'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8a> 참조)

- '남성' 응답자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09%로 가장 높고, '15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0.29%로 그 뒤를 이었음
- '여성' 응답자의 경우, '200~3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4.95%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2.82%로 그 뒤를 이었음

<표 4-8a> 가구 월 총지출(성별)

(단위 : 명, %)

월 총 가계지출액	성별		전체	전체(2022)
	남	여		
80만원 미만	55 (2.78)	62 (1.72)	117 (2.10)	146 (2.56)
80~100만원 미만	95 (4.81)	117 (3.24)	212 (3.80)	217 (3.80)
100~150만원 미만	210 (10.63)	271 (7.51)	481 (8.62)	576 (10.09)
150~200만원 미만	401 (20.29)	451 (12.50)	852 (15.26)	846 (14.81)
200~300만원 미만	555 (28.09)	900 (24.95)	1,455 (26.06)	1,571 (27.51)
300~400만원 미만	331 (16.75)	823 (22.82)	1,154 (20.67)	1,265 (22.15)
400~500만원 미만	208 (10.53)	583 (16.16)	791 (14.17)	626 (10.96)
500만원 이상	121 (6.12)	400 (11.09)	521 (9.33)	464 (8.12)
전체	1,976 (100)	3,607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 가계지출액은 2023년 10월 기준, 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현금지출 외에 현물 지출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4-8b> 참조)

- '20세 미만'의 경우 '80만원 미만'이 25.71%로 가장 많았음
- '20~30세 미만'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이 18.57%로 가장 많았음
-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음

<표 4-8b> 가구 월 총지출(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월 총 가계지출액	연령						전체	전체(2022)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80만원 미만	9 (25.71)	42 (4.22)	11 (1.01)	9 (0.75)	16 (1.24)	30 (3.07)	117 (2.10)	146 (2.56)
80~100만원 미만	2 (5.71)	63 (6.33)	41 (3.76)	21 (1.76)	24 (1.86)	61 (6.24)	212 (3.80)	217 (3.80)
100~150만원 미만	2 (5.71)	116 (11.65)	86 (7.90)	59 (4.94)	72 (5.57)	146 (14.94)	481 (8.62)	576 (10.09)
150~200만원 미만	1 (2.86)	153 (15.36)	176 (16.16)	106 (8.88)	161 (12.46)	255 (26.10)	852 (15.26)	846 (14.81)
200~300만원 미만	6 (17.14)	159 (15.96)	313 (28.74)	315 (26.38)	358 (27.71)	304 (31.12)	1,455 (26.06)	1,571 (27.51)
300~400만원 미만	6 (17.14)	185 (18.57)	231 (21.21)	311 (26.05)	312 (24.15)	109 (11.16)	1,154 (20.67)	1,265 (22.15)
400~500만원 미만	5 (14.29)	160 (16.06)	123 (11.29)	241 (20.18)	218 (16.87)	44 (4.50)	791 (14.17)	626 (10.96)
500만원 이상	4 (11.43)	118 (11.85)	108 (9.92)	132 (11.06)	131 (10.14)	28 (2.87)	521 (9.33)	464 (8.12)
전체	35 (100)	996 (100)	1,089 (100)	1,194 (100)	1,292 (100)	977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 가계지출액은 2023년 10월 기준, 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현금지출 외에 현물 지출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4-8c> 참조)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22.49%)과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이후'(23.10%)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고졸 이하'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이 29.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8c> 가구 월 총지출(학력별)

(단위 : 명, %)

월 총 가계지출액	학력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전체(2022)
80만원 미만		76 (2.70)	25 (6.61)	16 (0.67)	117 (2.10)	146 (2.56)
80~100만원 미만		127 (4.51)	23 (6.08)	62 (2.59)	212 (3.80)	216 (3.78)
100~150만원 미만		299 (10.62)	26 (6.88)	156 (6.53)	481 (8.62)	576 (10.09)
150~200만원 미만		494 (17.55)	32 (8.47)	326 (13.64)	852 (15.26)	846 (14.82)
200~300만원 미만		831 (29.52)	82 (21.69)	542 (22.68)	1,455 (26.06)	1,570 (27.51)
300~400만원 미만		517 (18.37)	85 (22.49)	552 (23.10)	1,154 (20.67)	1,265 (22.16)
400~500만원 미만		286 (10.16)	71 (18.78)	434 (18.16)	791 (14.17)	625 (10.95)
500만원 이상		185 (6.57)	34 (8.99)	302 (12.64)	521 (9.33)	464 (8.13)
전체		2,815 (100)	378 (100)	2,390 (100)	5,583 (100)	5,708 (100)

주: 1) 월 총 가계지출액은 2023년 10월 기준, 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현금지출 외에 현물 지출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가구 월 총지출'을 '고용형태별'로 볼 때, 전체 '정규직'에서 각 '월 총 가계 지출액'구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비정규직'에서 각 '월 총 가계지출액'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표 4-8d> 참조)
 - '15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의 비율보다 높음
 - '15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정규직'의 비율이 '비정규직'의 비율보다 높음

<표 4-8d> 가구 월 총지출(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월 총 가계지출액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2022)
80만원 미만	42 (1.09)	75 (4.31)	117 (2.10)	146 (2.56)
80~100만원 미만	98 (2.55)	114 (6.56)	212 (3.80)	217 (3.80)
100~150만원 미만	287 (7.47)	194 (11.16)	481 (8.62)	576 (10.09)
150~200만원 미만	588 (15.30)	264 (15.18)	852 (15.26)	846 (14.81)
200~300만원 미만	1,032 (26.85)	423 (24.32)	1,455 (26.06)	1,571 (27.51)
300~400만원 미만	806 (20.97)	348 (20.01)	1,154 (20.67)	1,265 (22.25)
400~500만원 미만	587 (15.27)	204 (11.73)	791 (14.17)	626 (10.96)
500만원 이상	404 (10.51)	117 (6.73)	521 (9.33)	464 (8.12)
전체	3,844 (100)	1,739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 가계지출액은 2023년 10월 기준, 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현금지출 외에 현물 지출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가구원 수별'로 '가구 월 총지출'이 높은 순을 살펴보면, (<표 4-8e> 참조)
 - '1인' 가구의 경우 '150~200만원 미만'이 33.71%로 가장 높은 비중임
 - '2인' 가구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이 39.34%로 가장 높은 비중임
 - '3인'(29.69%)인 경우와 '4인 이상'(29.30%)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음
 - '5인'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의 비율이 31.51%로 가장 높은 비중임

<표 4-8e> 가구 월 총지출(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가구원 수 월 총 가계지출액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전체(2022)
80만원 미만	88 (8.33)	16 (1.17)	3 (0.20)	7 (0.49)	3 (1.26)	117 (2.10)	146 (2.56)
80~100만원 미만	144 (13.64)	42 (3.07)	19 (1.28)	6 (0.42)	1 (0.42)	212 (3.80)	217 (3.80)
100~150만원 미만	277 (26.23)	127 (9.27)	45 (3.04)	26 (1.81)	6 (2.52)	481 (8.62)	576 (10.09)
150~200만원 미만	356 (33.71)	301 (21.97)	131 (8.84)	56 (3.90)	8 (3.36)	852 (15.26)	846 (14.81)
200~300만원 미만	179 (16.95)	539 (39.34)	413 (27.87)	290 (20.18)	34 (14.29)	1,455 (26.06)	1,571 (27.51)
300~400만원 미만	7 (0.66)	235 (17.15)	440 (29.69)	421 (29.30)	51 (21.43)	1,154 (20.67)	1,265 (22.15)
400~500만원 미만	2 (0.19)	80 (5.84)	275 (18.56)	374 (26.03)	60 (25.21)	791 (14.17)	626 (10.96)
500만원 이상	3 (0.28)	30 (2.19)	156 (10.53)	257 (17.88)	75 (31.51)	521 (9.33)	464 (8.12)
전체	1,056 (100)	1,370 (100)	1,482 (100)	1,437 (100)	238 (100)	5,583 (100)	5,711 (100)

주: 1) 월 총 가계지출액은 2023년 10월 기준, 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현금지출 외에 현물 지출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월 총 가계지출액'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표 4-8f> 참조)

- '1인'인 경우 '150~200만원 미만'(33.89%), '200~300만원 미만'(24.38%)순으로 많았음
- '2인'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31.24%), '300~400만원 미만'(30.58%)순으로 많았음
- '3인 이상'인 경우 '400~500만원 미만'(29.53%), '500만원 이상'(28.78%)순으로 많았음

<표 4-8f> 가구 월 총지출(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이상	전체	전체(2022)
월 총 가계지출액					
80만원 미만	103 (5.94)	6 (0.21)	8 (0.85)	117 (2.10)	146 (2.56)
80~100만원 미만	182 (10.49)	26 (0.89)	4 (0.43)	212 (3.80)	216 (3.78)
100~150만원 미만	371 (21.38)	89 (3.06)	21 (2.24)	481 (8.62)	575 (10.08)
150~200만원 미만	588 (33.89)	240 (8.25)	24 (2.56)	852 (15.26)	846 (14.82)
200~300만원 미만	423 (24.38)	909 (31.24)	123 (13.11)	1,455 (26.06)	1,570 (27.51)
300~400만원 미만	53 (3.05)	890 (30.58)	211 (22.49)	1,154 (20.67)	1,265 (22.17)
400~500만원 미만	9 (0.52)	505 (17.35)	277 (29.53)	791 (14.17)	626 (10.97)
500만원 이상	6 (0.35)	245 (8.42)	270 (28.78)	521 (9.33)	463 (8.11)
전체	1,735 (100)	2,910 (100)	938 (100)	5,583 (100)	5,707 (100)

주: 1) 월 총 가계지출액은 2023년 10월 기준, 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현금지출 외에 현물 지출도 포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주 소득원'(46.62%), '보조 소득원'(41.34%), '주로 개인 소비용'(12.00%) 순으로 응답함 (<표 4-9a>~<표 4-9f> 참조)
 - '성별'로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을 살펴보면, (<표 4-9a> 참조)
 - 남성은 '가계의 주 소득원'(77.73%), '가계의 보조 소득원'(12.25%), '주로 개인 소비용'(10.02%) 순으로 응답함
 - 여성은 '가계의 보조 소득원'(57.28%), '가계의 주 소득원'(29.58%), '주로 개인 소비용'(13.09%) 순으로 응답함
 - '주 소득원'과 '보조소득원', '기타'의 경우는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개인소비용'의 경우는 그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함 (<표 4-9a> 참조)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을 '연령별'로 보면, (<표 4-9b> 참조)
 - '20세 미만'(54.29%), '20~29세'(42.77%)의 연령층에서는 '주로 개인 소비용'으로 근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40~49세'(53.94%), '50~59세'(54.88%)의 연령층에선 '가계의 보조 소득원'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음
 - '30~39세'(46.56%), '60세 이상'(69.29%)의 연령층에선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9a>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성별)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성별		전체	전체(2022)
	남	여		
가계의 주 소득원	1,536 (77.73)	1,067 (29.58)	2,603 (46.62)	2,526 (44.23)
가계의 보조 소득원	242 (12.25)	2,066 (57.28)	2,308 (41.34)	2,340 (40.97)
주로 개인 소비용	198 (10.02)	472 (13.09)	670 (12.00)	844 (14.78)
기타	0 (0.00)	2 (0.06)	2¹⁾ (0.04)	1 (0.02)
전체	1,976 (100)	3,607 (100)	5,583 (100)	5,711 (100)

주: 1) 근로자의 소득이 부모님 용돈 및 부채의 이자 지불의 역할을 한다고 응답함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9b>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연령별)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연령						전체	전체(2022)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가계의 주 소득원	9 (25.71)	349 (35.04)	507 (46.56)	514 (43.05)	547 (42.34)	677 (69.29)	2,603 (46.62)	2,526 (44.23)
가계의 보조 소득원	7 (20.00)	221 (22.19)	439 (40.31)	644 (53.94)	709 (54.88)	288 (29.48)	2,308 (41.34)	2,340 (40.97)
주로 개인 소비용	19 (54.29)	426 (42.77)	142 (13.04)	36 (3.02)	36 (2.79)	11 (1.13)	670 (12.00)	844 (14.78)
기타	0 (0.00)	0 (0.00)	1 (0.09)	0 (0.00)	0 (0.00)	1 (0.10)	2 (0.04)	1 (0.02)
전체	35 (100)	996 (100)	1,089 (100)	1,194 (100)	1,292 (100)	977 (100)	5,583 (100)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을 '학력별'로 보면, (<표 4-9c> 참조)
 -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는 응답이 52.72%로 가장 높았음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의 학력에서는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음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는 '가계의 보조 소득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43.14%로 가장 많음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9d> 참조)
 - '정규직' 근로자의 49.77%가 '가계의 주 소득원', 40.82%가 '가계의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42.50%가 '가계의 보조 소득원', 39.68%가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함

<표 4-9c>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학력별)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학력			전체	전체(2022)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가계의 주 소득원	1,484 (52.72)	125 (33.07)	994 (41.59)	2,603 (46.62)	2,525 (44.24)
가계의 보조 소득원	1,151 (40.89)	126 (33.33)	1,031 (43.14)	2,308 (41.34)	2,338 (40.96)
주로 개인 소비용	180 (6.39)	127 (33.60)	363 (15.19)	670 (12.00)	844 (14.79)
기타	0 (0.00)	0 (0.00)	2 (0.08)	2 (0.04)	1 (0.02)
전체	2,815 (100)	378 (100)	2,390 (100)	5,583 (100)	5,708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9d>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2022)
가계의 주 소득원	1,913 (49.77)	690 (39.68)	2,603 (46.62)	2,526 (44.23)
가계의 보조 소득원	1,569 (40.82)	739 (42.50)	2,308 (41.34)	2,340 (40.97)
주로 개인 소비용	360 (9.37)	310 (17.83)	670 (12.00)	844 (14.78)
기타	2 (0.05)	0 (0.00)	2 (0.04)	1 (0.02)
전체	3,844 (100)	1,739 (100)	5,583 (100)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을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표 4-9e> 참조)
 - '1인' 가구는 '주 소득원'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92.71%로 가장 많음
 - '2인' 가구의 경우 '주 소득원'이라는 대답이 52.77%로 가장 많고, '보조 소득원'이라는 응답이 42.77%임
 - '3인', '4인',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보조 소득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52.29%, 56.37%, 52.10%로 가장 많고, '주 소득원'이라는 대답이 각각 31.51%, 26.10%, 24.79%로 그 뒤를 이음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을 '가구 월 총 소득별'로 살펴보면, (<표 4-9f> 참조)
 - '주 소득원'의 경우는 '가구 월 총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 43.49%로 가장 비율이 높았음
 - '보조 소득원'(53.16%)과 '개인 소비용'(63.88%)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라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9e>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소득용도 가구원 수	주 소득원	보조소득원	개인소비용	기타	전체
1인	979 (92.71)	13 (1.23)	62 (5.87)	2 (0.19)	1,056 (100)
2인	723 (52.77)	586 (42.77)	61 (4.45)	0 (0.00)	1,370 (100)
3인	467 (31.51)	775 (52.29)	240 (16.19)	0 (0.00)	1,482 (100)
4인	375 (26.10)	810 (56.37)	252 (17.54)	0 (0.00)	1,437 (100)
5인 이상	59 (24.79)	124 (52.10)	55 (23.11)	0 (0.00)	238 (100)
전체	2,603 (46.62)	2,308 (41.34)	670 (12.00)	2 (0.04)	5,583 (100)
전체(2022)	2,526 (44.23)	2,340 (40.97)	844 (14.78)	1 (0.02)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9f>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가구 월 총소득별)

(단위 : 명, %)

소득용도 가구 월 총소득	주 소득원	보조소득원	개인소비용	기타	전체
80만원 미만	31 (1.19)	4 (0.17)	14 (2.09)	0 (0.00)	49 (0.88)
80~100만원 미만	50 (1.92)	6 (0.26)	2 (0.30)	1 (50.00)	59 (1.06)
100~150만원 미만	113 (4.34)	11 (0.48)	8 (1.19)	0 (0.00)	132 (2.36)
150~200만원 미만	230 (8.84)	22 (0.95)	24 (3.58)	0 (0.00)	276 (4.94)
200~300만원 미만	1,132 (43.49)	112 (4.85)	54 (8.06)	1 (50.00)	1,299 (23.27)
300~400만원 미만	362 (13.91)	346 (14.99)	56 (8.36)	0 (0.00)	764 (13.68)
400~500만원 미만	305 (11.72)	580 (25.13)	84 (12.54)	0 (0.00)	969 (17.36)
500만원 이상	380 (14.60)	1,227 (53.16)	428 (63.88)	0 (0.00)	2,035 (36.45)
전체	2,603 (100)	2,308 (100)	670 (100)	2 (100)	5,583 (100)
전체(2022)	2,526 (100)	2,340 (100)	844 (100)	1 (100)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2. 소속된 직장의 특성

가. 현재 직장의 특성

- 현 직장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 근로자 (5,583명) 중 '정규직' 근로자가 68.85%, '비정규직' 근로자가 31.15%인 것으로 나타남. 2022년에 대비하여 '정규직'의 비중이 3.38%p 높아졌음 (<표 4-10a>~<표 4-10c> 참조)
- '비정규직'의 구성을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17.27%로 가장 많고 '기간(계약) 근로자'의 비중은 11.70%, '일용근로자'는 1.83%임 (<표 4-10a> 참조)
-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73.43%로, '여성'의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인 66.34%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0a> 참조)

<표 4-10a>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성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시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간(계약) 근로자	기타		
남	1,451 (73.43)	240 (12.15)	39 (1.97)	238 (12.04)	8 (0.40)	525 (26.57)	1,976 (100)
여	2,393 (66.34)	724 (20.07)	63 (1.75)	415 (11.51)	12 (0.33)	1,214 (33.66)	3,607 (100)
전체	3,844 (68.85)	964 (17.27)	102 (1.83)	653 (11.70)	20 (0.36)	1,739 (31.15)	5,583 (100)
전체(2022)	3,739 (65.47)	1,059 (18.54)	140 (2.45)	752 (13.17)	19 (0.33)	1,972 (34.53)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4-10b> 참조)
 -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며, 특히 '30~39세'에서 80.53%로 가장 높았음
 - '20세 미만'에서 '정규직'의 비율은 28.57%로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낮았음
 - '비정규직'의 경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60세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계약)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4-10b>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시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간(계약) 근로자	기타		
20세 미만	10 (28.57)	21 (60.00)	0 (0.00)	4 (11.43)	0 (0.00)	25 (71.43)	35 (100)
20~29세	582 (58.43)	310 (31.12)	4 (0.40)	96 (9.64)	4 (0.40)	414 (41.57)	996 (100)
30~39세	877 (80.53)	109 (10.01)	10 (0.92)	90 (8.26)	3 (0.28)	212 (19.47)	1,089 (100)
40~49세	888 (74.37)	158 (13.23)	15 (1.26)	128 (10.72)	5 (0.42)	306 (25.63)	1,194 (100)
50~59세	941 (72.83)	193 (14.94)	40 (3.10)	115 (8.90)	3 (0.23)	351 (27.17)	1,292 (100)
60세 이상	546 (55.89)	173 (17.71)	33 (3.38)	220 (22.52)	5 (0.51)	431 (44.11)	977 (100)
전체	3,844 (68.85)	964 (17.27)	102 (1.83)	653 (11.70)	20 (0.36)	1,739 (31.15)	5,583 (100)
전체(2022)	3,739 (65.47)	1,059 (18.54)	140 (2.45)	752 (13.17)	19 (0.33)	1,970 (34.49)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4-10c> 참조)
 - '고졸 이하'에서는 '정규직'이 62.49%, '비정규직'이 37.51%이었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20.14%로 가장 많았음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에서는 '정규직'이 44.18%, '비정규직'이 55.82%이었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45.77%로 가장 많았음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에서는 '정규직'이 80.25%, '비정규직'이 19.75%이었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계약) 근로자'의 비중이 9.58%로 가장 많았음

<표 4-10c>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형태(학력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학력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 근로자	기타		
고졸 이하	1,759 (62.49)	567 (20.14)	85 (3.02)	394 (14)	10 (0.36)	1,056 (37.51)	2,815 (1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167 (44.18)	173 (45.77)	5 (1.32)	30 (7.94)	3 (0.79)	211 (55.82)	378 (1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918 (80.25)	224 (9.37)	12 (0.50)	229 (9.58)	7 (0.29)	472 (19.75)	2,390 (100)
전체	3,844 (68.85)	964 (17.27)	102 (1.83)	653 (11.70)	20 (0.36)	1,739 (31.15)	5,583 (100)
전체(2022)	3,739 (65.47)	1,059 (18.54)	140 (2.45)	752 (13.17)	19 (0.33)	1,970 (34.49)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현재 직장의 직종'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25.58%)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뒤를 이어 '서비스종사자'(22.89%), '단순노무종사자'(18.52%)의 순임 (<표 4-11a>~<표 4-11c> 참조)
 -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현재 직장의 직종'을 전년대비 비교할 때,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전년대비 전체 응답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표 4-11a>참조)
 - '성별'로 나누어 보면, (<표 4-11a> 참조)
 - '남성' 응답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25.2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20.14%로 그 뒤를 이음
 - '여성' 응답자의 경우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30.4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24.40%로 그 뒤를 이음

<표 4-11a> 현재 직장의 직종(성별)

(단위 : 명, %)

직종 \ 성별	남	여	전체	전체(2022)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5 (0.76)	13 (0.36)	28 (0.50)	59 (1.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0 (5.06)	522 (14.47)	622 (11.14)	727 (12.74)
사무종사자	331 (16.75)	1,097 (30.41)	1,428 (25.58)	1,190 (20.86)
서비스종사자	398 (20.14)	880 (24.40)	1,278 (22.89)	1,547 (27.11)
판매종사자	183 (9.26)	441 (12.23)	624 (11.18)	685 (12.0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0 (0.00)	4 (0.11)	4 (0.07)	4 (0.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01 (15.23)	79 (2.19)	380 (6.81)	386 (6.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0 (7.59)	35 (0.97)	185 (3.31)	209 (3.66)
단순노무종사자	498 (25.20)	536 (14.86)	1,034 (18.52)	899 (15.76)
전체	1,976 (100)	3,607 (100)	5,583 (100)	5,706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현재 직장의 직종을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11b> 참조)
 -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 중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31.72%)가 가장 많으며, '서비스종사자'(26.43%)가 그 뒤를 이음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근로자 중에서는 '서비스종사자'(32.8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판매종사자'(27.25%)가 그 뒤를 이음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인 근로자 중에서는 '사무종사자'(40.79%)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1.55%)가 그 뒤를 이음

<표 4-11b> 현재 직장의 직종(학력별)

(단위 : 명, %)

직종 \ 학력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전체(2022)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7 (0.25)	1 (0.26)	20 (0.84)	28 (0.50)	59 (1.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2 (2.91)	25 (6.61)	515 (21.55)	622 (11.14)	727 (12.75)
사무종사자	387 (13.75)	66 (17.46)	975 (40.79)	1,428 (25.58)	1,190 (20.87)
서비스종사자	744 (26.43)	124 (32.80)	410 (17.15)	1,278 (22.89)	1,546 (27.11)
판매종사자	307 (10.91)	103 (27.25)	214 (8.95)	624 (11.18)	685 (12.0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4 (0.14)	0 (0.00)	0 (0.00)	4 (0.07)	4 (0.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61 (9.27)	14 (3.70)	105 (4.39)	380 (6.81)	385 (6.7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0 (4.62)	12 (3.17)	43 (1.80)	185 (3.31)	208 (3.65)
단순노무종사자	893 (31.72)	33 (8.73)	108 (4.52)	1,034 (18.52)	899 (15.76)
전체	2,815 (100)	378 (100)	2,390 (100)	5,583 (100)	5,70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들의 '현재 직장의 직종'을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표 4-11c> 참조)
 -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32.08%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종사자'(19.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42%), '단순노무종사자'(13.29%)가 그 뒤를 이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31.34%로 가장 높으며 '단순노무종사자'(30.07%), '판매종사자'(16.22%)가 그 뒤를 이음

<표 4-11c> 현재 직장의 직종(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직종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2022)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6 (0.68)	2 (0.12)	28 (0.50)	59 (1.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16 (13.42)	106 (6.10)	622 (11.14)	727 (12.74)
사무종사자	1233 (32.08)	195 (11.21)	1,428 (25.58)	1,190 (20.86)
서비스종사자	733 (19.07)	545 (31.34)	1,278 (22.89)	1,547 (27.11)
판매종사자	342 (8.90)	282 (16.22)	624 (11.18)	685 (12.0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 (0.03)	3 (0.17)	4 (0.07)	4 (0.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21 (8.35)	59 (3.39)	380 (6.81)	386 (6.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1 (4.19)	24 (1.38)	185 (3.31)	209 (3.66)
단순노무종사자	511 (13.29)	523 (30.07)	1,034 (18.52)	899 (15.76)
전체	3,844 (100)	1,739 (100)	5,583 (100)	5,706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이 전체 응답근로자의 46.7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26.96%),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24.23%),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2.02%)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표 4-12a>~<표 4-12e> 참조)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은 그 비중이 감소함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성별'로 보면, (<표 4-12a> 참조)
 - 남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42.21%),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28.14%),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27.48%)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49.29%),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26.67%),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22.10%)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12b> 참조)
 -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50~59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40~49세', '60세 이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표 4-12a>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성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 미친 영향 성별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전체
남	543 (27.48)	834 (42.21)	43 (2.18)	556 (28.14)	1,976 (100)
여	962 (26.67)	1,778 (49.29)	70 (1.94)	797 (22.10)	3,607 (100)
전체	1,505 (26.96)	2,612 (46.78)	113 (2.02)	1,353 (24.23)	5,583 (100)
전체(2022)	1,217 (21.31)	2,926 (51.23)	100 (1.75)	1,468 (25.70)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12b>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연령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 미친 영향 연령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전체
20세 미만	12 (34.29)	16 (45.71)	0 (0.00)	7 (20.00)	35 (100)
20~29세	286 (28.71)	479 (48.09)	18 (1.81)	213 (21.39)	996 (100)
30~39세	320 (29.38)	460 (42.24)	22 (2.02)	287 (26.35)	1,089 (100)
40~49세	307 (25.71)	545 (45.64)	28 (2.35)	314 (26.3)	1,194 (100)
50~59세	343 (26.55)	632 (48.92)	27 (2.09)	290 (22.45)	1,292 (100)
60세 이상	237 (24.26)	480 (49.13)	18 (1.84)	242 (24.77)	977 (100)
전체	1,505 (26.96)	2,612 (46.78)	113 (2.02)	1,353 (24.23)	5,583 (100)
전체(2022)	1,217 (21.31)	2,926 (51.23)	100 (1.75)	1,468 (25.7)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4-12c> 참조)
 -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이 그 뒤를 이음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표 4-12c>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학력별)

(단위 : 명, %)

학력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전체
고졸 이하		771 (27.39)	1,372 (48.74)	44 (1.56)	628 (22.31)	2,815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재학		93 (24.6)	199 (52.65)	6 (1.59)	80 (21.16)	378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641 (26.82)	1,041 (43.56)	63 (2.64)	645 (26.99)	2,390 (100)
전체		1,505 (26.96)	2,612 (46.78)	113 (2.02)	1,353 (24.23)	5,583 (100)
전체(2022)		1,216 (21.30)	2,926 (51.26)	100 (1.75)	1,466 (25.68)	5,708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12d> 참조)
 -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이라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음
 -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그 뒤를 이음

<표 4-12d>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고용형태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전체
정규직	1,112 (28.93)	1,702 (44.28)	98 (2.55)	932 (24.25)	3,844 (100)
비정규직	393 (22.60)	910 (52.33)	15 (0.86)	421 (24.21)	1,739 (100)
전체	1,505 (26.96)	2,612 (46.78)	113 (2.02)	1,353 (24.23)	5,583 (100)
전체(2022)	1,217 (21.31)	2,926 (51.23)	100 (1.75)	1,468 (25.7)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표 4-12e> 참조)
 - '시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이라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음
 -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음

<표 4-12e>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전체
시간제근로자	238 (24.69)	501 (51.97)	7 (0.73)	218 (22.61)	964 (100)
일용근로자	23 (22.55)	45 (44.12)	0 (0.00)	34 (33.33)	102 (100)
기간제근로자	130 (19.91)	360 (55.13)	8 (1.23)	155 (23.74)	653 (100)
기타	2 (10.00)	4 (20.00)	0 (0.00)	14 (70.00)	20 (100)
전체	393 (22.60)	910 (52.33)	15 (0.86)	421 (24.21)	1,739 (100)
전체(2022)	398 (20.20)	1,072 (54.42)	27 (1.37)	473 (24.01)	1,9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4.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가. 최저임금 결정요인

-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체 응답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62.3%)', '근로자의 생계비(43.87%)',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25.29%)'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표 4-13a>~<표 4-13f> 참조)
 -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이 57.39%로 가장 높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이 64.98%로 가장 높음 (<표 4-13a> 참조)
-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전년 대비 증가한 요인들은 '근로자의 생계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사정'이었음 (<표 4-13a> 참조)
 - 전년 대비 감소한 요인들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기업의 지불 능력'이었음 (<표 4-13a> 참조)

<표 4-13a>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성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결정요인 성별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전체
남	901 (45.60)	510 (25.81)	376 (19.03)	140 (7.09)	386 (19.53)	1,134 (57.39)	89 (4.50)	193 (9.77)	1,976
여	1,548 (42.92)	902 (25.01)	674 (18.69)	233 (6.46)	630 (17.47)	2,344 (64.98)	138 (3.83)	319 (8.84)	3,607
전체	2,449 (43.87)	1,412 (25.29)	1,050 (18.81)	373 (6.68)	1,016 (18.20)	3,478 (62.3)	227 (4.07)	512 (9.17)	5,583
전체(2022)	2,476 (43.35)	1,761 (30.84)	1,088 (19.05)	443 (7.76)	820 (14.36)	3,328 (58.27)	182 (3.19)	662 (11.59)	5,711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순으로 응답함 (<표 4-13b> 참조)

<표 4-13b>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최저임금 결정요인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전체
정규직	1,705 (44.35)	1,010 (26.27)	730 (18.99)	261 (6.79)	712 (18.52)	2,384 (62.02)	141 (3.67)	352 (9.16)	3,844
비정규직	744 (42.78)	402 (23.12)	320 (18.40)	112 (6.44)	304 (17.48)	1,094 (62.91)	86 (4.95)	160 (9.20)	1,739
전체	2,449 (43.87)	1,412 (25.29)	1,050 (18.81)	373 (6.68)	1,016 (18.20)	3,478 (62.30)	227 (4.07)	512 (9.17)	5,583
전체(2022)	2,476 (43.35)	1,761 (30.84)	1,088 (19.05)	443 (7.76)	820 (14.36)	3,328 (58.27)	182 (3.19)	662 (11.59)	5,711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모두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순으로 응답함 (<표 4-13c> 참조)

<표 4-13c>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비정규직 \ 최저임금 결정요인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전체
시간제 근로자	415 (43.05)	230 (23.86)	179 (18.57)	54 (5.60)	172 (17.84)	602 (62.45)	41 (4.25)	100 (10.37)	964
일용 근로자	51 (50.00)	29 (28.43)	26 (25.49)	7 (6.86)	12 (11.76)	55 (53.92)	3 (2.94)	12 (11.76)	102
기간제 근로자	271 (41.50)	140 (21.44)	109 (16.69)	48 (7.35)	119 (18.22)	430 (65.85)	42 (6.43)	47 (7.20)	653
기타	7 (35.00)	3 (15.00)	6 (30.00)	3 (15.00)	1 (5.00)	7 (35.00)	0 (0.00)	1 (5.00)	20
전체	744 (42.78)	402 (23.12)	320 (18.4)	112 (6.44)	304 (17.48)	1,094 (62.91)	86 (4.95)	160 (9.2)	1,739
전체(2022)	832 (42.23)	599 (30.41)	391 (19.85)	176 (8.93)	247 (12.54)	1,123 (57.01)	62 (3.15)	225 (11.42)	1,970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요인 중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함 (<표 4-13d> 참조)
- '20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을 응답함
- '20세 미만'의 경우는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생산성'을 응답함

<표 4-13d>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연령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결정요인 연령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전체
20세 미만	13 (37.14)	8 (22.86)	9 (25.71)	2 (5.71)	4 (11.43)	20 (57.14)	0 (0.00)	2 (5.71)	35
20~30세 미만	404 (40.56)	260 (26.10)	177 (17.77)	67 (6.73)	227 (22.79)	643 (64.56)	56 (5.62)	90 (9.04)	996
30~40세 미만	479 (43.99)	287 (26.35)	213 (19.56)	58 (5.33)	211 (19.38)	695 (63.82)	54 (4.96)	110 (10.10)	1,089
40~50세 미만	547 (45.81)	321 (26.88)	224 (18.76)	99 (8.29)	198 (16.58)	749 (62.73)	42 (3.52)	118 (9.88)	1,194
50~60세 미만	544 (42.11)	336 (26.01)	245 (18.96)	84 (6.50)	227 (17.57)	808 (62.54)	45 (3.48)	105 (8.13)	1,292
60세 이상	462 (47.29)	200 (20.47)	182 (18.63)	63 (6.45)	149 (15.25)	563 (57.63)	30 (3.07)	87 (8.90)	977
전체	2,449 (43.87)	1,412 (25.29)	1,050 (18.81)	373 (6.68)	1,016 (18.20)	3,478 (62.30)	227 (4.07)	512 (9.17)	5,583
전체(2022)	2,476 (43.35)	1,761 (30.84)	1,088 (19.05)	443 (7.76)	820 (14.36)	3,328 (58.27)	182 (3.19)	662 (11.59)	5,711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응답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순으로 응답함 (<표 4-13e> 참조)

<표 4-13e>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학력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결정요인 학력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전체
고졸 이하	1,262 (44.83)	673 (23.91)	519 (18.44)	165 (5.86)	506 (17.98)	1,739 (61.78)	95 (3.37)	240 (8.53)	2,815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161 (42.59)	106 (28.04)	100 (26.46)	31 (8.20)	86 (22.75)	229 (60.58)	23 (6.08)	24 (6.35)	378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026 (42.93)	633 (26.49)	431 (18.03)	177 (7.41)	424 (17.74)	1,510 (63.18)	109 (4.56)	248 (10.38)	2,390
전체	2,449 (43.87)	1,412 (25.29)	1,050 (18.81)	373 (6.68)	1,016 (18.20)	3,478 (62.30)	227 (4.07)	512 (9.17)	5,583
전체(2022)	2,475 (43.36)	1,759 (30.82)	1,087 (19.04)	443 (7.76)	820 (14.37)	3,325 (58.25)	182 (3.19)	662 (11.59)	5,708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응답을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모든 가계 내 역할에서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순으로 응답함 (<표 4-13f> 참조)

<표 4-13f>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결정요인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전체
주 소득원	1,207 (46.37)	653 (25.09)	427 (16.40)	163 (6.26)	481 (18.48)	1,567 (60.20)	101 (3.88)	230 (8.84)	2,603
보조소득원	971 (42.07)	589 (25.52)	480 (20.8)	173 (7.50)	423 (18.33)	1,481 (64.17)	83 (3.60)	203 (8.80)	2,308
개인소비용	270 (40.30)	170 (25.37)	143 (21.34)	37 (5.52)	111 (16.57)	430 (64.18)	43 (6.42)	79 (11.79)	670
기타	1 (50.00)	0 (0.00)	0 (0.00)	0 (0.00)	1 (50.00)	0 (0.00)	0 (0.00)	0 (0.00)	2
전체	2,449 (43.87)	1,412 (25.29)	1,050 (18.81)	373 (6.68)	1,016 (18.20)	3,478 (62.30)	227 (4.07)	512 (9.17)	5,583
전체(2022)	2,476 (43.35)	1,761 (30.84)	1,088 (19.05)	443 (7.76)	820 (14.36)	3,328 (58.27)	182 (3.19)	662 (11.59)	5,711

주: 1) 복수 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나. 2023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2023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56.58%의 근로자가 '보통이다'이라 응답함.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이라는 의견을 가진 근로자 비율은 5.48%이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7.94%이었음 (<표 4-14a>~<표 4-14f> 참조)

-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4a> 참조)

<표 4-14a>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단위 : 명, %)

적정성 성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남	13 (0.66)	114 (5.77)	1,104 (55.87)	638 (32.29)	107 (5.41)	1,976 (100)
여	26 (0.72)	153 (4.24)	2,055 (56.97)	1,135 (31.47)	238 (6.60)	3,607 (100)
전체	39 (0.70)	267 (4.78)	3,159 (56.58)	1,773 (31.76)	345 (6.18)	5,583 (100)
전체(2022)	85 (1.49)	369 (6.46)	3,664 (64.29)	1,292 (22.62)	301 (5.27)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4b> 참조)

-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가 각각 세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함
- '60세 이상'의 경우 '약간 높은 수준이다'가 세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함

<표 4-14b>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20세 미만	0 (0.00)	1 (2.86)	22 (62.86)	11 (31.43)	1 (2.86)	35 (100)
20~29세	7 (0.70)	51 (5.12)	530 (53.21)	351 (35.24)	57 (5.72)	996 (100)
30~39세	7 (0.64)	54 (4.96)	588 (53.99)	360 (33.06)	80 (7.35)	1,089 (100)
40~49세	9 (0.75)	60 (5.03)	654 (54.77)	385 (32.24)	86 (7.20)	1,194 (100)
50~59세	12 (0.93)	56 (4.33)	738 (57.12)	408 (31.58)	78 (6.04)	1,292 (100)
60세 이상	4 (0.41)	45 (4.61)	627 (64.18)	258 (26.41)	43 (4.40)	977 (100)
전체	39 (0.70)	267 (4.78)	3,159 (56.58)	1,773 (31.76)	345 (6.18)	5,583 (100)
전체(2022)	85 (1.49)	369 (6.46)	3,664 (64.16)	1,292 (22.62)	301 (5.27)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4c> 참조)
 - '고졸 이하'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가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함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가 각각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함

<표 4-14c>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학력별)

(단위 : 명, %)

학력 \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졸 이하	17 (0.60)	126 (4.48)	1,617 (57.44)	932 (33.11)	123 (4.37)	2,815 (1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4 (1.06)	16 (4.23)	226 (59.79)	115 (30.42)	17 (4.50)	378 (1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8 (0.75)	125 (5.23)	1,316 (55.06)	726 (30.38)	205 (8.58)	2,390 (100)
전체	39 (0.70)	267 (4.78)	3,159 (56.58)	1,773 (31.76)	345 (6.18)	5,583 (100)
전체(2022)	85 (1.49)	369 (6.46)	3,663 (64.17)	1,290 (22.60)	301 (5.27)	5,708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모두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4d> 참조)

<표 4-14d>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정규직	32 (0.83)	199 (5.18)	2,207 (57.41)	1,159 (30.15)	247 (6.43)	3,844 (100)
비정규직	7 (0.40)	68 (3.91)	952 (54.74)	614 (35.31)	98 (5.64)	1,739 (100)
전체	39 (0.70)	267 (4.78)	3,159 (56.58)	1,773 (31.76)	345 (6.18)	5,583 (100)
전체(2022)	85 (1.49)	369 (6.46)	3,664 (64.16)	1,292 (22.62)	301 (5.27)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응답한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의 경우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4e> 참조)

<표 4-14e>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비정규직 \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시간제근로자	6 (0.62)	39 (4.05)	540 (56.02)	339 (35.17)	40 (4.15)	964 (100)
일용근로자	0 (0.00)	5 (4.90)	54 (52.94)	36 (35.29)	7 (6.86)	102 (100)
기간제근로자	1 (0.15)	22 (3.37)	344 (52.68)	236 (36.14)	50 (7.66)	653 (100)
기타	0 (0.00)	2 (10.00)	14 (70.00)	3 (15.00)	1 (5.00)	20 (100)
전체	7 (0.40)	68 (3.91)	952 (54.74)	614 (35.31)	98 (5.64)	1,739 (100)
전체(2022)	16 (0.81)	112 (5.69)	1,279 (64.92)	479 (24.31)	84 (4.26)	1,9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를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으로 살펴보면, 모든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에서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4f> 참조)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을 했다는 응답 중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세 번째로 높았음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을 했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음

<표 4-14f> 2023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적정성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13 (0.86)	79 (5.25)	786 (52.23)	565 (37.54)	62 (4.12)	1,505 (100)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9 (0.34)	105 (4.02)	1,499 (57.39)	814 (31.16)	185 (7.08)	2,612 (100)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1 (0.88)	7 (6.19)	69 (61.06)	26 (23.01)	10 (8.85)	113 (100)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16 (1.18)	76 (5.62)	805 (59.50)	368 (27.20)	88 (6.50)	1,353 (100)
전체	39 (0.70)	267 (4.78)	3,159 (56.58)	1,773 (31.76)	345 (6.18)	5,583 (100)
전체(2022)	85 (1.49)	369 (6.46)	3,664 (64.16)	1,292 (22.62)	301 (5.27)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7%로 가장 많았음 (<표 4-15a>~<표 4-15f> 참조)
- '전혀 도움이 안 됨' 또는 '별로 도움이 안 됨'이라는 응답은 20.76%였으며, '도움이 됨' 또는 '매우 도움이 됨'이라는 응답은 15.78%였음 (<표 4-15a>~<표 4-15f> 참조)
 - '성별'로 보면,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 향상 기여도'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순으로 응답함 (<표 4-15a> 참조)

<표 4-15a>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성별)

(단위 : 명, %)

생활향상 기여도 성별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남	61 (3.09)	334 (16.90)	1,132 (57.29)	286 (14.47)	44 (2.23)	119 (6.02)	1,976 (100)
여	150 (4.16)	614 (17.02)	2,121 (58.80)	492 (13.64)	59 (1.64)	171 (4.74)	3,607 (100)
전체	211 (3.78)	948 (16.98)	3,253 (58.27)	778 (13.94)	103 (1.84)	290 (5.19)	5,583 (100)
전체(2022)	220 (3.85)	1,113 (19.49)	3,013 (52.76)	904 (15.83)	142 (2.49)	319 (5.59)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볼 때, 모든 연령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그 다음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순으로 응답함 (<표 4-15b> 참조)

<표 4-15b>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연령별)

(단위 : 명, %)

생활향상 기여도 연령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20세 미만	0 (0.00)	4 (11.43)	26 (74.29)	5 (14.29)	0 (0.00)	0 (0.00)	35 (100)
20~30세 미만	40 (4.02)	169 (16.97)	555 (55.72)	168 (16.87)	25 (2.51)	39 (3.92)	996 (100)
30~40세 미만	45 (4.13)	176 (16.16)	647 (59.41)	125 (11.48)	18 (1.65)	78 (7.16)	1,089 (100)
40~50세 미만	47 (3.94)	211 (17.67)	701 (58.71)	147 (12.31)	13 (1.09)	75 (6.28)	1,194 (100)
50~60세 미만	52 (4.02)	235 (18.19)	730 (56.5)	188 (14.55)	22 (1.70)	65 (5.03)	1,292 (100)
60세 이상	27 (2.76)	153 (15.66)	594 (60.8)	145 (14.84)	25 (2.56)	33 (3.38)	977 (100)
전체	211 (3.78)	948 (16.98)	3,253 (58.27)	778 (13.94)	103 (1.84)	290 (5.19)	5,583 (100)
전체(2022)	220 (3.85)	1,113 (19.49)	3,013 (52.76)	904 (15.83)	142 (2.49)	319 (5.59)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에 대해 '학력별'로 보면, 모든 학력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15c> 참조)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에서는 '도움이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 '고졸 이하'와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4-15c>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학력별)

(단위 : 명, %)

생활향상 기여도 학력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고졸 이하	72 (2.56)	449 (15.95)	1,712 (60.82)	413 (14.67)	63 (2.24)	106 (3.77)	2,815 (1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10 (2.65)	60 (15.87)	205 (54.23)	80 (21.16)	8 (2.12)	15 (3.97)	378 (1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29 (5.40)	439 (18.37)	1,336 (55.90)	285 (11.92)	32 (1.34)	169 (7.07)	2,390 (100)
전체	211 (3.78)	948 (16.98)	3,253 (58.27)	778 (13.94)	103 (1.84)	290 (5.19)	5,583 (100)
전체(2022)	220 (3.85)	1,112 (19.48)	3,012 (52.77)	904 (15.84)	142 (2.49)	318 (5.57)	5,708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에 대해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모두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순으로 응답함 (<표 4-15d> 참조)

<표 4-15d>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생활향상 기여도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정규직	163 (4.24)	650 (16.91)	2,215 (57.62)	511 (13.29)	73 (1.90)	232 (6.04)	3,844 (100)
비정규직	48 (2.76)	298 (17.14)	1,038 (59.69)	267 (15.35)	30 (1.73)	58 (3.34)	1,739 (100)
전체	211 (3.78)	948 (16.98)	3,253 (58.27)	778 (13.94)	103 (1.84)	290 (5.19)	5,583 (100)
전체(2022)	220 (3.85)	1,113 (19.49)	3,013 (52.76)	904 (15.83)	142 (2.49)	319 (5.59)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15e> 참조)
 - '시간제근로자'의 경우는 '도움이 됨', '별로 도움이 안 됨'이라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도움이 됨', '별로 도움이 안 됨'이라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었음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이라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었음
-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에 대해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로 보면, '기타'를 제외한 모든 가계 내 역할에서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전혀 도움이 안 됨', '매우 도움이 됨'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4-15f> 참조)

<표 4-15e>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생활향상 기여도 비정규직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시간제근로자	24 (2.49)	154 (15.98)	592 (61.41)	154 (15.98)	16 (1.66)	24 (2.49)	964 (100)
일용근로자	2 (1.96)	20 (19.61)	54 (52.94)	21 (20.59)	1 (0.98)	4 (3.92)	102 (100)
기간제근로자	20 (3.06)	123 (18.84)	382 (58.50)	89 (13.63)	13 (1.99)	26 (3.98)	653 (100)
기타	2 (10.00)	1 (5.00)	10 (50.00)	3 (15.00)	0 (0.00)	4 (20.00)	20 (100)
전체	48 (2.76)	298 (17.14)	1,038 (59.69)	267 (15.35)	30 (1.73)	58 (3.34)	1,739 (100)
전체(2022)	68 (3.45)	365 (18.53)	1,057 (53.65)	351 (17.82)	42 (2.13)	87 (4.42)	1,9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15f> 2023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단위 : 명, %)

생활향상 기여도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주 소득원	106 (4.07)	481 (18.48)	1463 (56.20)	353 (13.56)	61 (2.34)	139 (5.34)	2,603 (100)
보조소득원	63 (2.73)	345 (14.95)	1419 (61.48)	343 (14.86)	31 (1.34)	107 (4.64)	2,308 (100)
개인소비용	42 (6.27)	122 (18.21)	370 (55.22)	81 (12.09)	11 (1.64)	44 (6.57)	670 (100)
기타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0 (0.00)	2 (100)
전체	211 (3.78)	948 (16.98)	3,253 (58.27)	778 (13.94)	103 (1.84)	290 (5.19)	5,583 (100)
전체(2022)	220 (3.85)	1,113 (19.49)	3,013 (52.76)	904 (15.83)	142 (2.49)	319 (5.59)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다. 2024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52.87%로 가장 많았고, '약간 낮은 수준이다'(33.67%), '매우 낮은 수준이다'(6.68%), '약간 높은 수준이다'(5.82%), '매우 높은 수준이다'(0.95%)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4-16a>~<표 4-16g> 참조)
 -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수준이다'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함 (<표 4-16a> 참조)
 -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표 4-1a> 참조)
 -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52.83%), '약간 낮은 수준이다'(33.6%), '약간 높은 수준이다'(6.68%), '매우 낮은 수준이다'(6.02%), '매우 높은 수준이다'(0.86%) 순으로 많았음
 - '여성'의 경우 '보통이다'(52.9%), '약간 낮은 수준이다'(33.71%), '매우 낮은 수준이다'(7.04%), '약간 높은 수준이다'(5.35%), '매우 높은 수준이다'(1.00%) 순으로 많았음

<표 4-16a>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성별)

(단위 : 명, %)

적정성 성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남	17 (0.86)	132 (6.68)	1,044 (52.83)	664 (33.6)	119 (6.02)	1,976 (100)
여	36 (1.00)	193 (5.35)	1,908 (52.9)	1,216 (33.71)	254 (7.04)	3,607 (100)
전체	53 (0.95)	325 (5.82)	2,952 (52.87)	1,880 (33.67)	373 (6.68)	5,583 (100)
전체(2022) ¹⁾	133 (2.33)	640 (11.21)	3,473 (60.81)	1,170 (20.49)	295 (5.17)	5,711 (100)

주: 1)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4-16b> 참조)
-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음
- '40~49세', '50~59세' 연령층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음

<표 4-16b>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20세 미만	1 (2.86)	2 (5.71)	25 (71.43)	6 (17.14)	1 (2.86)	35 (100)
20~29세	11 (1.10)	70 (7.03)	482 (48.39)	372 (37.35)	61 (6.12)	996 (100)
30~39세	9 (0.83)	80 (7.35)	567 (52.07)	354 (32.51)	79 (7.25)	1,089 (100)
40~49세	10 (0.84)	58 (4.86)	620 (51.93)	419 (35.09)	87 (7.29)	1,194 (100)
50~59세	19 (1.47)	59 (4.57)	691 (53.48)	432 (33.44)	91 (7.04)	1,292 (100)
60세 이상	3 (0.31)	56 (5.73)	567 (58.03)	297 (30.40)	54 (5.53)	977 (100)
전체	53 (0.95)	325 (5.82)	2,952 (52.87)	1,880 (33.67)	373 (6.68)	5,583 (100)
전체(2022) ¹⁾	133 (2.33)	640 (11.21)	3,473 (60.81)	1,170 (20.49)	295 (5.17)	5,711 (100)

주: 1)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학력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4-16c> 참조)
- '고졸 이하'의 경우,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4-16c>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학력별)

(단위 : 명, %)

학력 \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졸 이하	20 (0.71)	156 (5.54)	1,516 (53.85)	990 (35.17)	133 (4.72)	2,815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재학	5 (1.32)	20 (5.29)	189 (50.00)	132 (34.92)	32 (8.47)	378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28 (1.17)	149 (6.23)	1,247 (52.18)	758 (31.72)	208 (8.7)	2,390 (100)
전체	53 (0.95)	325 (5.82)	2,952 (52.87)	1,880 (33.67)	373 (6.68)	5,583 (100)
전체(2022) ¹⁾	133 (2.33)	640 (11.21)	3,471 (60.81)	1,169 (20.48)	295 (5.17)	5,708 (100)

주: 1)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응답자들에서 모두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4-16d> 참조)

<표 4-16d>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정규직	46 (1.20)	231 (6.01)	2,045 (53.20)	1,251 (32.54)	271 (7.05)	3,844 (100)
비정규직	7 (0.40)	94 (5.41)	907 (52.16)	629 (36.17)	102 (5.87)	1,739 (100)
전체	53 (0.95)	325 (5.82)	2,952 (52.87)	1,880 (33.67)	373 (6.68)	5,583 (100)
전체(2022) ¹⁾	133 (2.33)	640 (11.21)	3,473 (60.81)	1,170 (20.49)	295 (5.17)	5,711 (100)

주: 1)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6e> 참조)
 -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4-16e>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비정규직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시간제근로자	6 (0.62)	58 (6.02)	503 (52.18)	358 (37.14)	39 (4.05)	964 (100)
일용근로자	0 (0.00)	6 (5.88)	56 (54.90)	32 (31.37)	8 (7.84)	102 (100)
기간제근로자	1 (0.15)	27 (4.13)	335 (51.3)	237 (36.29)	53 (8.12)	653 (100)
기타	0 (0.00)	3 (15.00)	13 (65.00)	2 (10.00)	2 (10.00)	20 (100)
전체	7 (0.40)	94 (5.41)	907 (52.16)	629 (36.17)	102 (5.87)	1,739 (100)
전체(2022) ¹⁾	28 (1.42)	237 (12.03)	1,214 (61.62)	414 (21.02)	77 (3.91)	1,970 (100)

주: 1) '2023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를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모든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에서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순으로 응답함 (<표 4-16f> 참조)
 -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들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들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16f>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적정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21	(1.40)	98	(6.51)	686	(45.58)	624	(41.46)	76	(5.05)	1,505	(100)		
		(39.62)		(30.15)		(23.24)		(33.19)		(20.38)				(26.96)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12	(0.46)	137	(5.25)	1,412	(54.06)	852	(32.62)	199	(7.62)	2,612	(100)		
		(22.64)		(42.15)		(47.83)		(45.32)		(53.35)				(46.78)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2	(1.77)	11	(9.73)	67	(59.29)	24	(21.24)	9	(7.96)	113	(100)		
		(3.77)		(3.38)		(2.27)		(1.28)		(2.41)				(2.02)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18	(1.33)	79	(5.84)	787	(58.17)	380	(28.09)	89	(6.58)	1,353	(100)		
		(33.96)		(24.31)		(26.66)		(20.21)		(23.86)				(24.23)
전체	53	(0.95)	325	(5.82)	2,952	(52.87)	1,880	(33.67)	373	(6.68)	5,5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과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 여부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16g> 참조)
 -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0.95%, 5.82%로,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인 0.7%, 4.78%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33.67%, 6.68%로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에서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인 31.76%, 6.18%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6g> 2024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 여부별)

(단위 : 명, %)

2024년 2023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5 (47.17)	(64.10)	8 (2.46)	(20.51)	6 (0.2)	(15.38)	0 (0.00)	(0.00)	0 (0.00)	(0.00)	39 (0.70)
약간 높은 수준이다	23 (43.40)	(8.61)	163 (50.15)	(61.05)	75 (2.54)	(28.09)	4 (0.21)	(1.50)	2 (0.54)	(0.75)	267 (4.78)	(100)
보통이다	4 (7.55)	(0.13)	132 (40.62)	(4.18)	2,482 (84.08)	(78.57)	507 (26.97)	(16.05)	34 (9.12)	(1.08)	3,159 (56.58)	(100)
약간 낮은 수준이다	1 (1.89)	(0.06)	20 (6.15)	(1.13)	372 (12.6)	(20.98)	1,281 (68.14)	(72.25)	99 (26.54)	(5.58)	1,773 (31.76)	(100)
매우 낮은 수준이다	0 (0.00)	(0.00)	2 (0.62)	(0.58)	17 (0.58)	(4.93)	88 (4.68)	(25.51)	238 (63.81)	(68.99)	345 (6.18)	(100)
전체	53 (100)	(0.95)	325 (100)	(5.82)	2,952 (100)	(52.87)	1,880 (100)	(33.67)	373 (100)	(6.68)	5,583 (10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5.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 전체 응답근로자들(5,583명)의 31.40%는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 미만(9,909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82%, '6~9% 미만(10,197원~10,486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4.79% 순으로 나타남 (<표 4-17a>~<표 4-17e> 참조)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해 '3% 미만(9,909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응답과 달리, 전년대비 전체 응답근로자의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8p% 증가함
-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 '3% 미만(9,909원 미만)', '6~9% 미만(10,197원~10,486원 미만)', '동결(9,620원)'순으로 응답함(<표 4-17a> 참조)

<표 4-17a>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성별)

(단위 : 명, %)

적정 인상률 성별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남	192 (9.72)	564 (28.54)	642 (32.49)	286 (14.47)	150 (7.59)	51 (2.58)	91 (4.61)	1,976 (100)
여	342 (9.48)	1,045 (28.97)	1,111 (30.8)	540 (14.97)	300 (8.32)	72 (2.00)	197 (5.46)	3,607 (100)
전체	534 (9.56)	1,609 (28.82)	1,753 (31.40)	826 (14.79)	450 (8.06)	123 (2.20)	288 (5.16)	5,583 (100)
전체 (2022) ¹⁾	760 (13.31)	1,219 (21.34)	1,796 (31.45)	988 (17.3)	465 (8.14)	179 (3.13)	304 (5.32)	5,711 (100)

주: 1)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4-17b> 참조)
 - '20~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이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0~29세'의 경우 '3% 미만(9,909원 미만)'을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4-17b>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연령별)

(단위 : 명, %)

적정 인상률 연령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20세 미만	5 (14.29)	12 (34.29)	16 (45.71)	1 (2.86)	0 (0.00)	0 (0.00)	1 (2.86)	35 (100)
20~29세	76 (7.63)	317 (31.83)	305 (30.62)	158 (15.86)	75 (7.53)	14 (1.41)	51 (5.12)	996 (100)
30~39세	92 (8.45)	297 (27.27)	348 (31.96)	171 (15.70)	79 (7.25)	33 (3.03)	69 (6.34)	1,089 (100)
40~49세	118 (9.88)	329 (27.55)	348 (29.15)	194 (16.25)	113 (9.46)	29 (2.43)	63 (5.28)	1,194 (100)
50~59세	116 (8.98)	361 (27.94)	433 (33.51)	169 (13.08)	121 (9.37)	27 (2.09)	65 (5.03)	1,292 (100)
60세 이상	127 (13.00)	293 (29.99)	303 (31.01)	133 (13.61)	62 (6.35)	20 (2.05)	39 (3.99)	977 (100)
전체	534 (9.56)	1,609 (28.82)	1,753 (31.40)	826 (14.79)	450 (8.06)	123 (2.20)	288 (5.16)	5,583 (100)
전체 (2022) ¹⁾	760 (13.31)	1,219 (21.34)	1,796 (31.45)	988 (17.30)	465 (8.14)	179 (3.13)	304 (5.32)	5,711 (100)

주: 1)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 미만(9,909원 미만)'이라는 응답이었음 (<표 4-17c> 참조)
 -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에서는 '6~9% 미만(10,197원~10,486원 미만)', '동결(9,62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로 높았음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에서는 '동결(9,620원)', '6~9% 미만(10,197원~10,486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로 높았음

<표 4-17c>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학력별)

(단위 : 명, %)

학력 \ 적정 인상률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고졸 이하	257 (9.13)	840 (29.84)	922 (32.75)	416 (14.78)	208 (7.39)	59 (2.1)	113 (4.01)	2,815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재학	50 (13.23)	106 (28.04)	131 (34.66)	47 (12.43)	24 (6.35)	7 (1.85)	13 (3.44)	378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227 (9.50)	663 (27.74)	700 (29.29)	363 (15.19)	218 (9.12)	57 (2.38)	162 (6.78)	2,390 (100)
전체	534 (9.56)	1,609 (28.82)	1,753 (31.4)	826 (14.79)	450 (8.06)	123 (2.20)	288 (5.16)	5,583 (100)
전체 (2022) ¹⁾	758 (13.28)	1,218 (21.34)	1,796 (31.46)	988 (17.31)	465 (8.15)	179 (3.14)	304 (5.33)	5,708 (100)

주: 1)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17d> 참조)
 - '정규직'에서는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31%로 가장 많았음
 - '비정규직'에서는 '3% 미만(9,909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1.45%로 가장 많았음

<표 4-17d>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적정 인상률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정규직	352 (9.16)	1,062 (27.63)	1,242 (32.31)	595 (15.48)	315 (8.19)	77 (2.00)	201 (5.23)	3,844 (100)
비정규직	182 (10.47)	547 (31.45)	511 (29.38)	231 (13.28)	135 (7.76)	46 (2.65)	87 (5.00)	1,739 (100)
전체	534 (9.56)	1,609 (28.82)	1,753 (31.40)	826 (14.79)	450 (8.06)	123 (2.2)	288 (5.16)	5,583 (100)
전체 (2022) ¹⁾	760 (13.31)	1,219 (21.34)	1,796 (31.45)	988 (17.30)	465 (8.14)	179 (3.13)	304 (5.32)	5,711 (100)

주: 1)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표 4-17e> 참조)
 -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3% 미만(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10,197원 미만)' 순으로 응답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 '3% 미만(9,909원 미만)'순으로 응답함

<표 4-17e>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적정 인상률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92 (9.54)	314 (32.57)	291 (30.19)	145 (15.04)	63 (6.54)	21 (2.18)	38 (3.94)	964 (100)
일용 근로자	10 (9.80)	32 (31.37)	36 (35.29)	10 (9.80)	8 (7.84)	4 (3.92)	2 (1.96)	102 (100)
기간제 근로자	74 (11.33)	196 (30.02)	178 (27.26)	76 (11.64)	63 (9.65)	21 (3.22)	45 (6.89)	653 (100)
기타	6 (30.00)	5 (25.00)	6 (30.00)	0 (0.00)	1 (5.00)	0 (0.00)	2 (10.00)	20 (100)
전체	182 (10.47)	547 (31.45)	511 (29.38)	231 (13.28)	135 (7.76)	46 (2.65)	87 (5.00)	1,739 (100)
전체 (2022)¹⁾	275 (13.96)	433 (21.98)	634 (32.18)	327 (16.6)	141 (7.16)	56 (2.84)	104 (5.28)	1,970 (100)

주: 1)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최저임금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표 4-17f>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3~6% 미만(9,909원~10,197원 미만)', '3% 미만(9,909원 미만)', '6~9% 미만 (10,197원~10,486원 미만)'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3% 미만(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10,197원 미만)'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4-17f>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단위 : 명, %)

적정 인상률	동결 (9,620원)	3% 미만 (9,909원 미만)	3~6% 미만 (9,909원 ~10,197원 미만)	6~9% 미만 (10,197원 ~10,486원 미만)	9~12% 미만 (10,486원 ~10,774원 미만)	12~15% 미만 (10,774원 ~11,063원 미만)	15% 이상 (11,063원 이상)	전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최저임금 인상액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	134 (8.90)	378 (25.12)	568 (37.74)	225 (14.95)	96 (6.38)	36 (2.39)	68 (4.52)	1,505 (100)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 인상	208 (7.96)	761 (29.13)	805 (30.82)	413 (15.81)	241 (9.23)	52 (1.99)	132 (5.05)	2,612 (100)
최저임금 인상액 미만으로 임금 인상	12 (10.62)	34 (30.09)	28 (24.78)	21 (18.58)	9 (7.96)	0 (0.00)	9 (7.96)	113 (100)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180 (13.30)	436 (32.22)	352 (26.02)	167 (12.34)	104 (7.69)	35 (2.59)	79 (5.84)	1,353 (100)
전체	534 (9.56)	1,609 (28.82)	1,753 (31.40)	826 (14.79)	450 (8.06)	123 (2.20)	288 (5.16)	5,583 (100)
전체 (2022) ¹⁾	760 (13.31)	1,219 (21.34)	1,796 (31.45)	988 (17.30)	465 (8.14)	179 (3.13)	304 (5.32)	5711 (100)

주: 1) '2024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응답임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6.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잘 지켜짐'(53.11%), '대체로 잘 지켜짐'(29.86%), '보통'(10.48%), '잘 모르겠음'(5.37%), '별로 지켜지지 않음'(0.77%), '전혀 지켜지지 않음'(0.41%) 순으로 응답함 (<표 4-18a>~<표 4-18e> 참조)

-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잘 지켜짐' 또는 '보통'이라고는 응답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응답은 그 비중이 감소함 (<표 4-18a> 참조)

- 성별로 살펴볼 때, (<표 4-18a> 참조)

- 남성의 경우, '매우 잘 지켜짐'(50.61%), '대체로 잘 지켜짐'(29.91%), '보통'(11.08%), '잘 모르겠음'(6.98%), '전혀 지켜지지 않음'(0.76%), '별로 지켜지지 않음'(0.66%) 순으로 응답함
- 여성의 경우, '매우 잘 지켜짐'(54.48%), '대체로 잘 지켜짐'(29.83%), '보통'(10.15%), '잘 모르겠음'(4.49%), '별로 지켜지지 않음'(0.83%), '전혀 지켜지지 않음'(0.22%) 순으로 응답함

<표 4-18a>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성별)

(단위 : 명, %)

성별	최저임금 준수여부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남		15 (0.76)	13 (0.66)	219 (11.08)	591 (29.91)	1,000 (50.61)	138 (6.98)	1,976 (100)
여		8 (0.22)	30 (0.83)	366 (10.15)	1,076 (29.83)	1,965 (54.48)	162 (4.49)	3,607 (100)
전체		23 (0.41)	43 (0.77)	585 (10.48)	1,667 (29.86)	2,965 (53.11)	300 (5.37)	5,583 (100)
전체(2022)		36 (0.63)	59 (1.03)	581 (10.17)	1,600 (28.02)	3,205 (56.12)	230 (4.03)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볼 때,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잘 지켜짐', '대체로 잘 지켜짐' 순으로 응답함 (<표 4-18b> 참조)

<표 4-18b>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최저임금 준수여부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20세 미만		0 (0.00)	1 (2.86)	1 (2.86)	10 (28.57)	19 (54.29)	4 (11.43)	35 (100)
20~30세 미만		1 (0.10)	0 (0.00)	72 (7.23)	261 (26.20)	621 (62.35)	41 (4.12)	996 (100)
30~40세 미만		4 (0.37)	4 (0.37)	103 (9.46)	275 (25.25)	648 (59.50)	55 (5.05)	1,089 (100)
40~50세 미만		7 (0.59)	9 (0.75)	116 (9.72)	365 (30.57)	639 (53.52)	58 (4.86)	1,194 (100)
50~60세 미만		2 (0.15)	17 (1.32)	159 (12.31)	425 (32.89)	611 (47.29)	78 (6.04)	1,292 (100)
60세 이상		9 (0.92)	12 (1.23)	134 (13.72)	331 (33.88)	427 (43.71)	64 (6.55)	977 (100)
전체		23 (0.41)	43 (0.77)	585 (10.48)	1,667 (29.86)	2,965 (53.11)	300 (5.37)	5,583 (100)
전체(2022)		36 (0.63)	59 (1.03)	581 (10.17)	1,600 (28.02)	3,205 (56.12)	230 (4.03)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학력별'로 볼 때, 모든 학력에서 '매우 잘 지켜짐', '대체로 잘 지켜짐', '보통' 순으로 응답함 (<표 4-18c> 참조)

<표 4-18c>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학력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준수여부 \n학력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고졸 이하	9 (0.32)	26 (0.92)	302 (10.73)	909 (32.29)	1,392 (49.45)	177 (6.29)	2,815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재학	3 (0.79)	3 (0.79)	53 (14.02)	112 (29.63)	188 (49.74)	19 (5.03)	378 (100)
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1 (0.46)	14 (0.59)	230 (9.62)	646 (27.03)	1,385 (57.95)	104 (4.35)	2,390 (100)
전체	23 (0.41)	43 (0.77)	585 (10.48)	1,667 (29.86)	2,965 (53.11)	300 (5.37)	5,583 (100)
전체(2022)	36 (0.63)	59 (1.03)	581 (10.18)	1,598 (28.00)	3,204 (56.13)	230 (4.03)	5,708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용형태별'로 살펴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매우 잘 지켜짐', '대체로 잘 지켜짐', '보통' 순으로 응답함 (<표 4-18d> 참조)

<표 4-18d>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준수여부 \n고용형태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정규직	16 (0.42)	31 (0.81)	369 (9.60)	1,091 (28.38)	2,157 (56.11)	180 (4.68)	3,844 (100)
비정규직	7 (0.40)	12 (0.69)	216 (12.42)	576 (33.12)	808 (46.46)	120 (6.90)	1,739 (100)
전체	23 (0.41)	43 (0.77)	585 (10.48)	1,667 (29.86)	2,965 (53.11)	300 (5.37)	5,583 (100)
전체(2022)	36 (0.63)	59 (1.03)	581 (10.17)	1,600 (28.02)	3,205 (56.12)	230 (4.03)	5,711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하여 (<표 4-18e> 참조)
 -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각각 '매우 잘 지켜짐', '대체로 잘 지켜짐', '보통' 순으로 응답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순으로 응답함

<표 4-18e>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비정규직	최저임금 준수여부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시간제근로자		2 (0.21)	2 (0.21)	121 (12.55)	338 (35.06)	441 (45.75)	60 (6.22)	964 (100)
일용근로자		0 (0.00)	3 (2.94)	11 (10.78)	43 (42.16)	30 (29.41)	15 (14.71)	102 (100)
기간제근로자		4 (0.61)	7 (1.07)	82 (12.56)	191 (29.25)	331 (50.69)	38 (5.82)	653 (100)
기타		1 (5.00)	0 (0.00)	2 (10.00)	4 (20.00)	6 (30.00)	7 (35.00)	20 (100)
전체		7 (0.40)	12 (0.69)	216 (12.42)	576 (33.12)	808 (46.46)	120 (6.90)	1,739 (100)
전체(2022)		8 (0.41)	26 (1.32)	231 (11.73)	568 (28.83)	1,038 (52.69)	99 (5.03)	1,970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고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근로자(5,583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76.93%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지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했고, '고지하지 않고 있음'은 4.87%, '잘 모르겠음'은 18.20%로 응답함 (<표 4-19a> ~ <표 4-19d> 참조)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지하고 있음'이라는 응답이 남성은 74.90%, 여성은 78.04%였음 (<표 4-19a> 참조)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이라는 응답은 '남성'은 5.62%, '여성'은 4.46%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9a> 참조)

<표 4-19a> 최저임금 고지 여부(성별)

(단위 : 명, %)

성별 \ 최저임금 고지 여부	고지하고 있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전체
남	1,480 (74.90)	111 (5.62)	385 (19.48)	1,976 (100)
여	2,815 (78.04)	161 (4.46)	631 (17.49)	3,607 (100)
전체	4,295 (76.93)	272 (4.87)	1,016 (18.2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고지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70% 이상이 '고지하고 있음'으로 응답함 (<표 4-19b> 참조)
- '고지하지 않고 있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40~50세 미만'(5.70%)에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음'이라는 응답비율은 '60세 이상'(24.56%)에서 가장 높음 (<표 4-19b> 참조)

<표 4-19b> 최저임금 고지 여부(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 최저임금 고지 여부	고지하고 있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전체
20세 미만	26 (74.29)	0 (0.00)	9 (25.71)	35 (100)
20~30세 미만	794 (79.72)	27 (2.71)	175 (17.57)	996 (100)
30~40세 미만	862 (79.16)	63 (5.79)	164 (15.06)	1,089 (100)
40~50세 미만	941 (78.81)	68 (5.70)	185 (15.49)	1,194 (100)
50~60세 미만	986 (76.32)	63 (4.88)	243 (18.81)	1,292 (100)
60세 이상	686 (70.21)	51 (5.22)	240 (24.56)	977 (100)
전체	4,295 (76.93)	272 (4.87)	1,016 (18.2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고지 여부'에 대해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고지하고 있음', '잘 모르겠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순으로 응답함 (<표 4-19c> 참조)

<표 4-19c> 최저임금 고지 여부(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최저임금 고지 여부	고지하고 있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전체
정규직	3,033 (78.90)	184 (4.79)	627 (16.31)	3,844 (100)
비정규직	1,262 (72.57)	88 (5.06)	389 (22.37)	1,739 (100)
전체	4,295 (76.93)	272 (4.87)	1,016 (18.20)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고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19d> 참조)
 - 모든 '고용형태'에서 '고지하고 있음', '잘 모르겠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순으로 응답함
 -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시간제근로자'는 23.03%, '일용근로자'는 39.22%, '기간제근로자'는 17.92%로 응답함

<표 4-19d> 최저임금 고지 여부(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 최저임금 고지 여부	고지하고 있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전체
시간제근로자	692 (71.78)	50 (5.19)	222 (23.03)	964 (100)
일용근로자	58 (56.86)	4 (3.92)	40 (39.22)	102 (100)
기간제근로자	503 (77.03)	33 (5.05)	117 (17.92)	653 (100)
기타	9 (45.00)	1 (5.00)	10 (50.00)	20 (100)
전체	1,262 (72.57)	88 (5.06)	389 (22.37)	1,739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근로자들이 응답한 '최저임금 고지 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20 참조>)

- 최저임금을 '고지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해 '매우 잘 지켜짐'(63.75%), '대체로 잘 지켜짐'(29.62%), '보통'(5.24%) 순으로 응답함
-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 '대체로 잘 지켜짐'(36.03%), '매우 잘 지켜짐'(27.21%), '보통'(17.28%) 순으로 응답함
- 최저임금 고지 여부를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 '보통'(30.81%), '대체로 잘 지켜짐'(29.23%), '잘 모르겠음'(23.43%) 순으로 응답함

<표 4-20> 최저임금 고지 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관한 인식의 관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고지 여부 \ 최저임금 준수여부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고지하고 있음	5 (0.12)	16 (0.37)	225 (5.24)	1,272 (29.62)	2,738 (63.75)	39 (0.91)	4,295 (100)
고지하지 않고 있음	14 (5.15)	16 (5.88)	47 (17.28)	98 (36.03)	74 (27.21)	23 (8.46)	272 (100)
잘 모르겠음	4 (0.39)	11 (1.08)	313 (30.81)	297 (29.23)	153 (15.06)	238 (23.43)	1,016 (100)
전체	23 (0.41)	43 (0.77)	585 (10.48)	1,667 (29.86)	2,965 (53.11)	300 (5.37)	5,583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 근로자(5,583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정부'(49.96%), '사용자'(36.41%), '근로자'(5.39%), '최저임금 위원회'(4.55%), '사용자 단체'(2.51%), '노동자 단체'(1.13%) 순으로 응답함 (<표 4-21a>~<표 4-21f> 참조)
-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기타' 응답 비중은 감소한 반면,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응답 비중은 증가함 (<표 4-21a> 참조)
- '고용형태별'로 살펴볼 때, (<표 4-21a> 참조)
 - '정규직'에서는 '정부'(50.16%), '사용자'(36.73%), '근로자'(5.44%), '최저임금 위원회'(4.14%), '사용자단체'(2.58%), '노동자 단체'(0.91%) 순으로 응답함
 - '비정규직'에서는 '정부'(49.51%), '사용자'(35.71%), '최저임금위원회'(5.46%), '근로자'(5.29%), '사용자단체'(2.36%), '노동자 단체'(1.61%) 순으로 응답함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 '사용자', '근로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순으로 응답함 (<표 4-21b> 참조)

<표 4-21a>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정규직	1,928 (50.16)	1,412 (36.73)	209 (5.44)	99 (2.58)	159 (4.14)	35 (0.91)	2 (0.05)	3,844 (100)
비정규직	861 (49.51)	621 (35.71)	92 (5.29)	41 (2.36)	95 (5.46)	28 (1.61)	1 (0.06)	1,739 (100)
전체	2,789 (49.96)	2,033 (36.41)	301 (5.39)	140 (2.51)	254 (4.55)	63 (1.13)	3 (0.05)	5,583 (100)
전체(2022)	3,466 (60.73)	1,524 (26.7)	219 (3.84)	111 (1.94)	325 (5.69)	51 (0.89)	11 (0.19)	5,707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21b>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성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성별								
남	936 (47.37)	755 (38.21)	123 (6.22)	41 (2.07)	99 (5.01)	20 (1.01)	2 (0.10)	1,976 (100)
여	1,853 (51.37)	1,278 (35.43)	178 (4.93)	99 (2.74)	155 (4.30)	43 (1.19)	1 (0.03)	3,607 (100)
전체	2,789 (49.96)	2,033 (36.41)	301 (5.39)	140 (2.51)	254 (4.55)	63 (1.13)	3 (0.05)	5,583 (100)
전체(2022)	3,466 (60.73)	1,524 (26.7)	219 (3.84)	111 (1.94)	325 (5.69)	51 (0.89)	11 (0.19)	5,707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과 '20~30세 미만'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각각 '정부', '사용자', '근로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순으로 응답함 (<표 4-21c> 참조)
 - '20세 미만'과 '20~3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해당 물음에 대해 '정부', '사용자', '최저임금위원회' 순으로 응답함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정부', '사용자', '근로자', '최저임금위원회' 순으로 응답함 (<표 4-21d> 참조)

<표 4-21c>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연령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연령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20세 미만	22 (62.86)	12 (34.29)	0 (0.00)	0 (0.00)	1 (2.86)	0 (0.00)	0 (0.00)	35 (100)
20~30세 미만	528 (53.01)	335 (33.63)	41 (4.12)	20 (2.01)	61 (6.12)	11 (1.10)	0 (0.00)	996 (100)
30~40세 미만	545 (50.05)	405 (37.19)	51 (4.68)	32 (2.94)	47 (4.32)	8 (0.73)	1 (0.09)	1,089 (100)
40~50세 미만	595 (49.83)	445 (37.27)	63 (5.28)	34 (2.85)	46 (3.85)	9 (0.75)	2 (0.17)	1,194 (100)
50~60세 미만	634 (49.07)	456 (35.29)	86 (6.66)	32 (2.48)	60 (4.64)	24 (1.86)	0 (0.00)	1,292 (100)
60세 이상	465 (47.59)	380 (38.89)	60 (6.14)	22 (2.25)	39 (3.99)	11 (1.13)	0 (0.00)	977 (100)
전체	2,789 (49.96)	2,033 (36.41)	301 (5.39)	140 (2.51)	254 (4.55)	63 (1.13)	3 (0.05)	5,583 (100)
전체(2022)	3,466 (60.73)	1,524 (26.70)	219 (3.84)	111 (1.94)	325 (5.69)	51 (0.89)	11 (0.19)	5,707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21d>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학력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학력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고졸 이하	1,360 (48.31)	1,051 (37.34)	167 (5.93)	58 (2.06)	141 (5.01)	37 (1.31)	1 (0.04)	2,815 (1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199 (52.65)	128 (33.86)	23 (6.08)	7 (1.85)	20 (5.29)	1 (0.26)	0 (0.00)	378 (1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230 (51.46)	854 (35.73)	111 (4.64)	75 (3.14)	93 (3.89)	25 (1.05)	2 (0.08)	2,390 (100)
전체	2,789 (49.96)	2,033 (36.41)	301 (5.39)	140 (2.51)	254 (4.55)	63 (1.13)	3 (0.05)	5,583 (100)
전체(2022)	3,464 (60.73)	1,523 (26.70)	219 (3.84)	111 (1.95)	325 (5.7)	51 (0.89)	11 (0.19)	5,704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표 4-21e> 참조)
 -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물음에 대해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로 많았음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물음에 대해 '근로자'라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로 많았음
- 응답 근로자들이 응답한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 인식마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용자'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표 4-21f> 참조)
 - '전혀 지켜지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근로자(13.04%)', '사용자단체(8.70%)'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았음
 - '보통', '매우 잘 지켜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근로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았음
 - '대체로 잘 지켜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5.70%), '근로자'(4.32%), '사용자단체'(3.06%)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표 4-21e>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비정규직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시간제근로자	454 (47.10)	375 (38.9)	43 (4.46)	22 (2.28)	55 (5.71)	15 (1.56)	0 (0.00)	964 (100)
일용근로자	46 (45.10)	33 (32.35)	8 (7.84)	1 (0.98)	10 (9.80)	4 (3.92)	0 (0.00)	102 (100)
기간제근로자	347 (53.14)	210 (32.16)	40 (6.13)	18 (2.76)	29 (4.44)	8 (1.23)	1 (0.15)	653 (100)
기타	14 (70.00)	3 (15.00)	1 (5.00)	0 (0.00)	1 (5.00)	1 (5.00)	0 (0.00)	20 (100)
전체	861 (49.51)	621 (35.71)	92 (5.29)	41 (2.36)	95 (5.46)	28 (1.61)	1 (0.06)	1,739 (100)
전체(2022)	1,209 (61.43)	490 (24.9)	86 (4.37)	37 (1.88)	133 (6.76)	10 (0.51)	3 (0.15)	1,968 (1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표 4-21f>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정착 위한 역할 최저임금 준수여부 인식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전혀 지켜지지 않음	11 (47.83)	6 (26.09)	3 (13.04)	2 (8.70)	1 (4.35)	0 (0.00)	0 (0.00)	23 (100)
별로 지켜지지 않음	19 (44.19)	13 (30.23)	8 (18.60)	1 (2.33)	1 (2.33)	1 (2.33)	0 (0.00)	43 (100)
보통	257 (43.93)	220 (37.61)	65 (11.11)	17 (2.91)	22 (3.76)	3 (0.51)	1 (0.17)	585 (100)
대체로 잘 지켜짐	733 (43.97)	685 (41.09)	72 (4.32)	51 (3.06)	95 (5.70)	30 (1.80)	1 (0.06)	1,667 (100)
매우 잘 지켜짐	1,648 (55.58)	979 (33.02)	130 (4.38)	63 (2.12)	122 (4.11)	22 (0.74)	1 (0.03)	2,965 (100)
전체	2,789 (49.96)	2,033 (36.41)	301 (5.39)	140 (2.51)	254 (4.55)	63 (1.13)	3 (0.05)	5,583 (100)
전체(2022)	3,311 (60.45)	1,466 (26.77)	212 (3.87)	106 (1.94)	323 (5.90)	49 (0.89)	10 (0.18)	5,477 (100)

주: 1)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잘 모르겠음”이라고 표기한 근로자는 제외하였음

2)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의 응답 비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승복·박철성(2015),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8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pp. 1-22.
- 강창희(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6권, 제1호, pp.87-144.
- 강창희(2021),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44권, 제1호, pp.73-101.
- 김대일·이정민(20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경제학연구』, 제67집, 제4호, pp. 5-35.
- 김유선(2018), 『최저임금 고용효과』(KLSI Issue Paper), 제9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배진한(2019), “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 지역간 임금분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 42권, 제1호, pp. 1-42.
- 송헌재·임현준·신우리(2018),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BOK경제연구), 제2018-41호, 한국은행.
- 신우리·송헌재·임현준(2019), “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 42권, 제1호, pp. 73-105.
- 양준석·장윤섭 (2019),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67집, 제4호, pp. 37-67.
- 이경호·김지환·최지훈(2019),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42권, 제2호, pp. 63-99.
- 최강식 외(2008),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 (2009),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 (201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 (201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 (2012),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 (201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 (2014),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 (2015),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16),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17),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18),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19),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2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22),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 (202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홍민기(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2018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 43-56.

Brown, C.(1999)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shenfelter, O. & D. C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Elsevier pp. 2101-2163.

Card, D. and A. B. Krueger(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4, pp. 772-793.

_____ (1995),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Giuliano, Laura(2013), “Minimum Wage Effects on Employment, Substitution, and the Teenage Labor Supply: Evidence from Person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1, No. 1, pp. 155-194.

Neumark, David and William L. Wascher(2008), Minimum Wages, MIT Press.

_____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5, pp. 1362-1396.

Neumark, David, J.M. Ian Salas, and William Wascher(2013),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Vol 67(3 suppl), pp. 608-648.

부록1 : 사업주 대상 설문지



※ 조사원 기입

지방관서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번호	사업체 규모	조사표 회수 연 번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 사업주 대상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활용할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제23조, 통계법 제15조·제18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귀사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업종별·규모별로 대표성·신뢰성을 고려한 표본추출 결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최저임금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활동으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가능한 **사업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조사 참여 등 조사 관련 문의는 하단의 연락처를 참조
- 조사표 파일 다운로드(최임위): www.minimumwage.go.kr
- 조사결과 조회(국가통계포털): kosis.kr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보기항목에 ○ 표시하거나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면,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재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재하되, 화살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적어 주십시오.
- 문항 중, 2개 이상 선택해야 하는 복수 응답 문항은 1순위로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 응답자께서 실제 응답하신 분을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응답자 구분 ① 사업주 ② 대리응답자

※ 의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 관 기 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조 사 기 관		(주)글로벌리서치
담 당 감독관	소 속	청 과	담 조 사 원	이 름	
	이 름			연 락 처	
	연 락 처			이 메 일	
				팩 스	



A 사업체 현황

기본 현황	* 주요 생산품목(재화 또는 서비스)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품목을 기입		
업체명			
소재지(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주요 생산품목 (재화 또는 서비스)*	노조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1 경영 여건

	2022년(실적액)	2023년(1~12월 추정액)
1) 매출액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2) 인건비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_____ 억 _____ 천 _____ 백만원

■ 인건비: 결산서 상 인건비 총액(임금,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액, 복리시설 부담액, 복리후생비, 채용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등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일체 비용)

2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올해 경영사정은 어떻습니까?

① 좋아졌다 →

2-1.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정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② 원자재 가격 하락

③ 인건비 감소 ④ 임차료 감소

⑤ 기타(_____)

② 나빠졌다 →

2-2.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② 원자재 가격 상승

③ 인건비 상승 ④ 임차료 상승

⑤ 기타(_____)

③ 전년과 비슷하다

B 최저임금 관련

[참고]

<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인상액)	(인상률)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 29,38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 99,440
'23년	9,620	↑ 460	5.0%	76,960	↑ 3,680	2,010,580	↑ 96,140	2,174,120	↑ 103,960
'24년	9,860	↑ 240	2.5%	78,880	↑ 1,920	2,060,740	↑ 50,160	2,228,360	↑ 54,240

< 최저임금 감액 적용: 최저임금액의 90%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3개월 이하 수습 중 10% 감액)	월 환산액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21년	7,848	62,784	1,640,232	1,773,648
'22년	8,244	65,952	1,722,996	1,863,144
'23년	8,658	69,264	1,809,522	1,956,708
'24년	8,874	70,992	1,854,666	2,005,524

[참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항목(2023년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2023년 기준)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
②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법정 유급 주휴수당은 포함)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하였으면 지급	②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③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③ 현물로 제공되는 임금(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은 제외
④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 금액, ⑤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초과 금액은 포함 * '24년부터는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어 모두 산입함	④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예: 2,010,580원×5%=100,529원) 해당 부분 ⑤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예: 2,010,580원×1%=20,106원) 해당 부분

3

귀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성별·고용형태별로 몇 명입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받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몇 명입니까?**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구분	'22.12월말					'23.11.15. 현재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근로자 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비정규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일용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 (기간(계약)제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4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 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 없음
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3)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 ※ **check** 1)은 문3에서 '23.11.15일 현재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④ 중 응답
2)은 문3에서 '23.11.15일 현재 '전체 근로자 수'가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경우 ①~④ 중 응답
3)은 문3에서 '23.11.15일 현재 '전체 근로자 수'가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경우 ①~④ 중 응답

5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 ②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
- ③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했다
- ④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했다

6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음 항목별로 변동이 있었습니까?

항목	보기		
1) 순이익(이윤)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2) 제품(서비스) 가격	<input type="checkbox"/> ① 인상되었다	<input type="checkbox"/> ② 인하되었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3) 인건비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4) 신규채용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5) 근로시간	<input type="checkbox"/> ① 증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② 감소하였다	<input type="checkbox"/> ③ 영향이 없었다

7

올해('23년: 9,6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산정 방식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① 변화가 없었다
- ② 수당이나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포함)하였다
- ③ 호봉급, 직무급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 ④ 기타()

8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 ②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 ③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 ④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 ⑤ 기타()
- ⑥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 check 문에서 '23.11.15일 현재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근로자가 있으므로 ①~⑤ 중 응답

9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그들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①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 ② 적절한 수준이다
- ③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 ④ 받는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워 모르겠다
- 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10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③ 노동생산성
- ④ 소득분배 상황
- ⑤ 경제성장률
- ⑥ 물가상승률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⑧ 기업의 지불능력
- ⑨ 기타()

11

올해('23년: 9,6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2

'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23년: 9,620원)보다 2.5%가 인상된 시급 9,860원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3

'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4년(9,8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결(9,860원)
- ② 3% 미만(10,156원 미만)
- ③ 3~6% 미만(10,156원~10,452원 미만)
- ④ 6~9% 미만(10,452원~10,747원 미만)
- ⑤ 9~12% 미만(10,747원~11,043원 미만)
- ⑥ 12~15% 미만(11,043원~11,339원 미만)
- ⑦ 15% 이상(11,339원 이상)

14

귀하의 회사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숙소 제공
- ②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
- ③ 통근차량 운행
- ④ 상품권 지급
- ⑤ 기타()
- ⑥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

14-1.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됩니까?

- ① 제공된다
- ② 제공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근로자 없음

→ 응답 후 문15번으로

문15번으로

15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 ② 사용자
- ③ 근로자
- ④ 사용자단체
- ⑤ 최저임금위원회
- ⑥ 노동자단체
- ⑦ 기타()



다음 장의 부가조사표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조사 대상 기준]

○ 최저임금액('23년 시급 9,620원)의 1.5배(14,43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응답 대상입니다.

- ☞ 최저임금액의 1.5배: 시급 14,430원, 일환산액 115,440원(일 8시간),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3,015,870원(주 40시간), 3,261,180원(주 44시간)

구분	시급	일 환산액 (8시간)	월 환산액(주소정+주휴)		구분	시급	일 환산액 (8시간)	월 환산액(주소정+주휴)	
			주 40시간 기준	주 44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주 44시간 기준
'23년	9,620	76,960	2,010,580	2,174,120	(x 90%) 수습 감액	8,658	69,264	1,809,522	1,956,708
(x 1.5배)	14,430	115,440	3,015,870	3,261,180					

* 수습 중인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빼고 지급 가능(단, 단순노무업무는 제외)

[사업체당 조사 대상 근로자 수]

-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최대 조사 대상 근로자 수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비정규 여부 상관없이 시급 14,43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 이때 근로자의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선정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체 규모(상용근로자 수 기준)	4명 이하	5~9명	10~99명	100~299명
조사대상 근로자 수	최대 4명	최대 5명	최대 7명	최대 10명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까지 포함

【참고2】 부가조사표 작성 요령

○ 사업주께서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9,620원 × 1.5배 = 14,43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적어주세요.

☞ ③ 임금액 ÷ ④ 근로시간 ≤ 14,430원

○ ① 근로자 번호는 응답 완료 후, 근로자용 조사표 표지 오른쪽 위 '근로자 번호' 에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 ② 지급주기: 근로계약 시 정해진 임금 지급주기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
 ◻ 예) 지급주기를 '시급제' 로 선택하셨으면 임금액과 근로시간도 '시급제' 기준으로 한 줄씩만 적어주세요.

- ③ 임금 액: 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기준에 따른 임금액을 기재

- ☞ 연봉제인 경우는 기본 연봉총액(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을 월할 계산하여 '월급제' 로 표시하고 임금액 기재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8시간×5일+8시간)×4.345주)이 아닌 경우,
 월 환산액은 '시급 × ④ 근로시간' 으로 계산하여 적용

☞ 임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으로 기재

- ◻ 예) 상여금 399,471원(500,000원 - 100,529원), 복리후생비 179,894원(200,000원 - 20,106원)까지 합하여
 ③ 임금액으로 기입

구분	상여금 (매월 지급)	현금성 복리후생비 (매월 지급)	구분	상여금 (매월 지급)	현금성 복리후생비 (매월 지급)
월 환산액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2,010,580원	2,010,580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예시)	500,000원	200,000원
X 미산입 비율	5%	1%	- 미산입 금액	100,529원	20,106원
= 미산입 금액	100,529원	20,106원	= 산입 금액	399,471원	179,894원

* 월 환산액 = 시간급 최저임금(9,620원) × 1개월 적용 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

- ④ 근로시간: ③ 임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의 기초인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하여 기입

부가조사표(10월분 임금 기준으로 근로자 최대 10명 기입)

① 근로자 번호	② 임금 지급주기 (하나만 선택)	< 임금 산정기준 >	
		③ 임금액	④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1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2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3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4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5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① 근로자 번호	② 임금 지급주기 (하나만 선택)	< 임금 산정기준 >	
		③ 임금액	④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6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7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8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09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10	① 시급제	(1) 시급 <input type="text"/> 원 →	(1) <input type="text" value="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input type="text"/> 원 →	(2) 1일 <input type="text"/>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input type="text"/> 원 →	(3) 1주 <input type="text"/>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input type="text"/> 원 →	(4) 1개월 <input type="text"/> 시간

※ 응답 확인 및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

-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번호는 고마움을 담아 답례품을 드리기를 위한 것이며 본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드릴 수 있음)

응답자 성명		무선전화	()	-
응답자 직책		유선전화	()	-

(2) 심층 면접조사 동의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의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선택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문조사 이후에 필요시 추가 면접조사(전화, 대면)를 하고자 합니다.
면접조사 진행 시 귀하의 개인정보가 연구진에게 제공·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심층 조사 대상 선정 및 진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아래 기입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_____ (서명)

연락처: _____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분류번호 (표지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중분류	
① 제조업(C)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② 도매 및 소매업(G)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도매 및 상품 중개업
③ 운수 및 창고업(H)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항공 운송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④ 숙박 및 음식점업(I)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⑤ 부동산업(L)	부동산업	
⑥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⑦ 교육 서비스업(P)	교육 서비스업	
⑧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⑨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⑩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협회 및 단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록2 : 근로자 대상 설문지



				※ 조사원 기입		※ 사업주 부가조사표의 근로자 번호를 기입	
지방관서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번호	사업체 규모	근로자 번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 근로자 대상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활용할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제23조, 통계법 제15조-제18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가능한 **근로자께서 직접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문항별 보기항목에 표시하거나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 주십시오.

- 인터넷 조사 참여 등 조사 관련 문의는 하단의 연락처를 참조
- 조사표 파일 다운로드(최임위): www.minimumwage.go.kr • 조사결과 조회(국가통계포털): kosis.kr

응답자 선정원칙

- 귀하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업종별·규모별로 대표성·신뢰성을 고려한 표본추출 결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5배 수준을 초과**한다면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조사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응답 대상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액('23년 시급 9,620원) 1.5배(14,43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구분	시급	일 환산액 (8시간)	월 환산액(주소정+주휴)	
			주 40시간 기준	주 44시간 기준
'23년	9,620	76,960	2,010,580	2,174,120
(x 1.5배)	14,430	115,440	3,015,870	3,261,180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보기항목에 표시하거나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면,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재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재하되, 화살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적어 주십시오.
- 문항 중, 2개 이상 선택해야 하는 복수 응답 문항은 1순위로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 의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 관 기 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담 당 감 독 관	소 속		조 사 기 관	(주)글로벌리서치	
	이 름	청 과		이 름	
	연 락 처			연 락 처	
					이 메 일
			팩 스		



A

기초 항목

1 귀하의 성별은? <input type="checkbox"/> ① 남 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 자	2 귀하의 연령대는? <input type="checkbox"/> ① 2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20~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30~4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40~5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50~6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60세 이상
---	--

3 귀하의 학력은?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input type="checkbox"/> ③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4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input type="checkbox"/> ①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6~12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2~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5년 이상
--	---

5 현 직장에서 다음 각각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모든 항목에 기입)

	가입 여부	
	① 가입	② 미가입
5-1)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2)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3)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가구원 현황

6-1) 귀하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small>※ 본인 포함</smal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명	6-2) 귀하의 가구원 중에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small>※ 본인 포함</smal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명
--	---

■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 혈연관계의 가족이라도 취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비혈연 관계라도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7 귀하 가구의 올해(23년) 10월 총 소득(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은 모두 얼마입니까? ※ 세금 납부 전

<input type="checkbox"/> ① 8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80~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00~1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150~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200~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300~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400~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⑧ 500만원 이상	

■ 이전소득: 생산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닌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불한 소득(사회보장급여, 보조금, 증여 등)
 ■ 비경상소득: 퇴직금, 사고보상금, 경조소득 등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C 최저임금 관련

【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인상액)	(인상률)	8시간 기준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률)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 29,38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 99,440
'23년	9,620	↑ 460	5.0%	76,960	↑ 3,680	2,010,580	↑ 96,140	2,174,120	↑ 103,960
'24년	9,860	↑ 240	2.5%	78,880	↑ 1,920	2,060,740	↑ 50,160	2,228,360	↑ 54,240

12 지난해('22년) 시급 9,160원에서 올해('23년) 9,620원으로 시간당 460원(5.0%)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460원)을 초과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
- ②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460원)만큼 임금이 인상되었다
- ③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460원) 미만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 ④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3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③ 노동생산성
- ④ 소득분배 상황
- ⑤ 경제성장률
- ⑥ 물가상승률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⑧ 기업의 지불능력

14 올해('23년: 9,6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5 올해('23년: 9,6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귀하의 생활 향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조금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안된다
-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 ⑥ 무관하다

16 '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23년: 9,620원)보다 2.5%가 인상된 시급 9,860원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7 '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4년(9,8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결(9,860원)
- ② 3% 미만(10,156원 미만)
- ③ 3~6% 미만(10,156원~10,452원 미만)
- ④ 6~9% 미만(10,452원~10,747원 미만)
- ⑤ 9~12% 미만(10,747원~11,043원 미만)
- ⑥ 12~15% 미만(11,043원~11,339원 미만)
- ⑦ 15% 이상(11,339원 이상)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대분류	예시
① 관리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기업체의 영업소 및 지점의 소장(총괄적인 관리 수행), 정부행정부서의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연구원(과학, 정보통신, 공학),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건축캐드원, 성직자, 대학교수, 대학시간강사, 장학관, 대학조교,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산운용가, 감정평가사, 경매사, 중개사, 큐레이터, 사서, 쇼핑호스트, 촬영기사, 아나운서, 화가, 배우, 가수, 경기감독 및 코치, 직업운동선수, 마술사 등
③ 사무종사자	공공행정사무(조세, 행정, 병무, 특허, 감사, 통계, 총무, 기획, 자재, 교육), 회계(경리)사무원, 비서, 출납사무원, 전화상담원(전화안내원), 속기사, 운송관련 사무원 등
④ 서비스종사자	경찰관, 경호원, 무인경비원, 청원경찰, 교도관, 주차단속원, 간병인, 이(미)용사, 분장사, 장례지도사, 객실승무원(항공, 선박, 열차), 여행가이드, 딜러, 캐디, 통역원, 주방장(조리사), 바텐더, 웨이터, 결혼상담원, 오락(PC방, 노래방) 서비스원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종사자(자동차, 보험), 매장판매종사자, 매장계산원, 요금정산원, 상품대여종사자,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행사홍보 도우미, 매표원, 노점(이동)판매원, 판촉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작물(곡식, 채소, 특용, 과수, 원예)재배종사자, 조경원,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벌목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양봉종사원, 감별사, 수렵종사원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정육원, 도축원, 재봉사, 재단사, 의복(한복·양장)제조원, 가구제조원, 금형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항공기정비원, 설치원(승강기, 기계, 공조기, 보일러, PC, 사무기기, 인터넷), 각종 수리원, 전기공, 건축목공, 미장공, 도배공, 광원, 공예원, 배관공, 방역원 등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각종 기계(식품가공, 섬유 및 신발, 화학, 금속, 전기, 전자, 상하수도, 목재, 인쇄, 재활용처리, 사진)조작원,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산업용로봇조작원, 자동차·자동차부품조립원, 기관사, 운송관련(택시, 버스, 화물, 배, 특수, 기중기 등)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단순노무자, 이삿짐운반원, 집배원, 택배원, 배달원(음식·신문), 수동포장원, 단순선별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주방보조원, 주유원, 산불감시원, 가스검침원, 수금원, 주차관리(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검표원 등